

■ 집합투자재산

구분	의결권 대상법인	주주총회 일시	의안 유형	의안명	관계	보유 의결권 주식수 등		의결권행사주식수(%) 및 내용				행사 및 불행사 사유
						보유주식수 (주)	지분비율 (%)	찬성 주식수	반대 주식수	불행사 주식수	중립행사 주식수	
유가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2025-10-17	조직변경	1.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 (분할준속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 분할신설회사: 삼성에피소플딩스 주식회사 분할비율: 존속회사: 0.6503913 / 신설회사: 0.3496087)	기타	19,752	0.03	19,752	-	-	-	분할준속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분할신설회사: 삼성에피소플딩스 주식회사 분할비율: 존속회사: 0.6503913 / 신설회사: 0.3496087 분할대상사업부문 분리를 통해 업무 중인 사업 간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근원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역량을 집중하여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증대 해당 기업의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은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의 훼손우려가 있는 사정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건에 대해 찬성 의견
유가증권	삼성SDI	2026-03-18	결산 및 배당	1. 제56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23,221	0.03	23,221	-	-	-	당사 의결권 행사 관련 전문업체인 한국ESG연구소는, 1) 2025년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장률은 각각 6.7%, 5.2%를 기록한 점, 3) 2025년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점, 4)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영업현금흐름을 크게 상회하는 설비투자율 단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배당 수준이 과도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본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 권고. 배당정책으로 인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훼손 우려는 발견되지 않음

유가증권	삼성SDI	2026-03-18	정관변경	2-1.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기타	23,221	0.03	23,221	-	-	-	<p>분석기업의 정관 제22조, 제23조의 2 변경안은 개정 상법(제542조의7 제3항)이 2026년 9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임. 주요 골자는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던 기존 정관 조항(제22조 제6항, 제23조의 2 제2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 금번 개정 시행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됨으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상실될 조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회사의 내부 규범과 상위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됨. 개정법이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설계된 만큼,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 선제적으로 정관을 정비하는 것은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결의 효력 다툼 등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조치로 판단됨</p>
유가증권	삼성SDI	2026-03-18	정관변경	2-2-1.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16조, 제19조)	기타	23,221	0.03	23,221	-	-	-	<p>분석기업의 정관 제16조 변경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도입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따른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비하여,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 법적 근거를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는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주 권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한편 분석기업의 정관 제19조 변경안은 개정 상법 제368조 제2항의 취지를 반영해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제출하는 증명 문서의 범위에 기존의 서면본 아니라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정관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의결권 행사 제출 증명 문서의 범위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은 의결권 행사 과정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p>
유가증권	삼성SDI	2026-03-18	정관변경	2-2-2. 독립이사 명칭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6조의5)	기타	23,221	0.03	23,221	-	-	-	<p>분석기업의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 2, 제26조의 5 변경안은 개정 상법(2025년 7월 22일 공포)에 따라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하는 건임. 이는 사외이사를 단순한 외부 인사가 아닌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 재정의함으로써 그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정관 제3조 변경안은 가결 시 상기 개정 조문들이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도록 단서를 두어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임. 이는 정관 효력 개시일을 둘러싼 해석상 다툼을 예방하고, 변경된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혼신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됨</p>

유가증권	삼성SDI	2026-03-18	정관변경	2-2-3.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인원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26조의 4)	기타	23,221	0.03	23,221	-	-	-	분리선출 감사위원회 위원을 2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유가증권	삼성SDI	2026-03-18	정관변경	2-2-4. 주식의 소각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10조의 5)	기타	23,221	0.03	23,221	-	-	-	현행 법제와 실무 변화에 부합하는 정관 변경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유가증권	삼성SDI	2026-03-1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사외이사 윤종원 선임의 건	기타	23,221	0.03	23,221	-	-	-	당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검증,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유가증권	삼성SDI	2026-03-1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 사내이사 오재균 선임의 건	기타	23,221	0.03	23,221	-	-	-	당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유가증권	삼성SDI	2026-03-18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4-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미경 선임의 건	기타	23,221	0.03	23,221	-	-	-	당 후보자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유가증권	삼성SDI	2026-03-18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4-2.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유승원 선임의 건	기타	23,221	0.03	23,221	-	-	-	당 후보자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유가증권	삼성SDI	2026-03-18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감사위원회 위원 총종원 선임의 건	기타	23,221	0.03	23,221	-	-	-	당 후보자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법령 위반(징계) 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유가증권	삼성SDI	2026-03-18	임원 보수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23,221	0.03	23,221	-	-	-	분석기업은 이사회 규모를 5인(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으로 축소하고 이사 보수한도를 전기 100억 원에서 당기 70억 원으로 감액함.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FY24 16.9억 원에서 FY25 15.5억 원으로 감소(-8.3%)하였으며, FY25 실지급액 대비 보수한도 배율은 2.2배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성과는 FY24 영업이익 2,734억 원에서 FY25 -1조 7,224억 원로 하락함. 즉, 분석기업의 경영성과가 대폭 악화된 것에 비해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 감소 폭이 제한적임. 다만, FY23 호실적이 당기 장기성과급에 반영된 점과 사업보고서상 동기임원 보수 지급 기준이 상세히 공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조정폭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됨. 보수 한도 역시 실지급액 대비 적정 수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

유가증권	삼성전자	2026-03-18	정관변경	1-1.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제24조, 제26조)	기타	2,632,677	0.04	2,632,677	-	-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상실될 조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안건으로 찬성
유가증권	삼성전자	2026-03-18	정관변경	1-2. 개정상법반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관련 조문 정비 (제27조의3)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 변경 관련 조문 정비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5)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상향 관련 조문 정비 (제28조의4) 전자 주주총회 도입 관련 조문 정비 (제18조)	기타	2,632,677	0.04	2,632,677	-	-	-	개정 상법의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안건으로 찬성
유가증권	삼성전자	2026-03-18	정관변경	1-3. 이사의 임기 조문 정비 (제25조)	기타	2,632,677	0.04	-	2,632,677	-	-	상법에서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를 3년으로 제한할 뿐이나, 회사의 정관에서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와 같이 범위로 규정할 경우, 임기 불확정 이사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사실상 자의적 해임이 가능해질 위험이 있음. 이에 따라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이사회 의사결정 기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반대

유가증권	삼성전자	2026-03-18	정관변경	1.4. 주식 소각 조문 정비 (제8조의3)	기타	2,632,677	0.04	2,632,677	-	-	-	이익소각을 위해 두었던 정관상 근거 조항(제8조의 3)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불필요해진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판단. 현행 법제와 실무 변화에 부합하는 정관 변경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주가지 훼손 우려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
유가증권	삼성전자	2026-03-18	결산 및 배당	2. 제57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2,632,677	0.04	2,632,677	-	-	-	2025년 배당성향은 22.1%로 업종 평균(24년 기준 14.6%)을 상회하며,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향은 각각 29.2%, 23.7%를 기록 중. 이를 감안할 때, 현행 배당 규모가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소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 아울러 영업이익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주이, 최근 설비투자 규모, 현재 부채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배당 수준이 과도하지 않음. 이에 따라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는 발견되지 않아 찬성
유가증권	삼성전자	2026-03-1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사내이사 김용관 선임의 건	기타	2,632,677	0.04	2,632,677	-	-	-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점상 결격사유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

유가증권	삼성전자	2026-03-18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허은영 선임의 건	기타	2,632,677	0.04	2,632,677	-	-	-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상 결격사유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
유가증권	삼성전자	2026-03-18	임원 보수	5.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기타	2,632,677	0.04	2,632,677	-	-	-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전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찬성
유가증권	삼성전자	2026-03-18	자본구조	6.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기타	2,632,677	0.04	2,632,677	-	-	-	2026년 2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상법 제341조의4 제2항(공표·시행 전)에서 규정한 자기주식 소각의 예외 사유인 임직원 보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계획에 대한 승인을 구하는 것으로, 당사는 보유 또는 처분 대상 자기주식의 종류, 규모, 보유기간 및 처분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기주식 활용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의지를 보임. 특히 보유 개시시점과 예정된 처분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 주주가지 훼손 및 자의적 처분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찬성

유가증권	LG에너지솔루션	2026-03-20	결산 및 배당	1. 제6기 재무제표승인의 건	기타	53,174	0.02	53,174	-	-	-	본 안전과 관련 기업가치 및 주주권의 훼손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여 잔성 배당기업은 최근 5년간 배당 미실시, 2024년부터는 지배주주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으로 인해, 현행 배당 규모가 기업가치를 훼손 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음
유가증권	LG에너지솔루션	2026-03-20	정관변경	2-1.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	기타	53,174	0.02	53,174	-	-	-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던 기존 정관 조항(제27조 제4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상실된 조항을 선제 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회사 내부 규범과 상위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건. 이에 따라 본 정관 변경안에 대해 잔성
유가증권	LG에너지솔루션	2026-03-20	정관변경	2-2.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	기타	53,174	0.02	53,174	-	-	-	정관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안은 2025.07.22 공포된 개정 상법에 따라 2027.01.01 부터 도입 및 시행되는 현행법령 전자주주 회 도입에 대비하여,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 법적 근거를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 이에 따라 본 정관 변경안에 대해 잔성.

유가증권	LG에너지솔루션	2026-03-20	정관변경	2-3. 사외이사 명칭 변경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	기타	53,174	0.02	53,174	-	-	-	<p>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건. 사외이사를 단순한 외부 인사가 아닌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 재정의함으로써 그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본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p>
유가증권	LG에너지솔루션	2026-03-20	정관변경	2-4. 분리 선출 감사위원 수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	기타	53,174	0.02	53,174	-	-	-	<p>분리선출 감사위원 위원을 2인 이상으로 변경하는 건. 상법은 분리선출 감사위원 위원을 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예정하고 있음.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감사위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크고,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 가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이에 따라 본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p>
유가증권	LG에너지솔루션	2026-03-20	정관변경	2-5. 감사위원 선·해임 시 최대주주 의견 제한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	기타	53,174	0.02	53,174	-	-	-	<p>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의결권 제한(합산 3% 풀) 강화를 정관에 반영함으로써,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 개정 상법은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특히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등 보유분을 합산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본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p>

유가증권	LG에너지솔루션	2026-03-20	정관변경	2-6. 배당절차 개선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	기타	53,174	0.02	53,174	-	-	-	<p>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이 안내됨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고, 기준일을 정한 경우 기준일의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변경하는 것.</p> <p>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배당받을 주주가 주주총회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주주가 아닌 자가 배당 관련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p> <p>이에 따라 본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p>
유가증권	LG에너지솔루션	2026-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사외이사 이명규 선임의 건	기타	53,174	0.02	53,174	-	-	-	<p>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p>
유가증권	LG에너지솔루션	2026-03-20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진규 선임의 건	기타	53,174	0.02	53,174	-	-	-	<p>후보자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p>

유가증권	LG에너지솔루션	2026-03-20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감사위원회 위원 이명규 선임의 건	기타	53,174	0.02	53,174	-	-	-	주보자의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정 상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잔성.
유가증권	LG에너지솔루션	2026-03-20	임원 보수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53,174	0.02	53,174	-	-	-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은 전기 15.7억원에서 당기 7.3억원으로 감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전기 5,754억원에서 당기 1조 3,461억원으로 증가. 해당 기업은 경영성과가 크게 개선된 가운데 사내이사 실지금액은 감소하였으나, 당기 실지금액 대비 보수한도는 3.3배 이하 수준으로 나타나 보수한도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설정된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해당 안건에 찬성.
유가증권	에코프로머티	2026-03-23	결산 및 배당	1. 제9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 1주당 1,139.61원)	기타	17,256	0.02	17,256	-	-	-	배당정책으로 인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발견되지 않음

유가증권	에코프로머티	2026-03-23	정관변경	2-1. 이사 선임 및 보수관련 변경의 건	기타	17,256	0.02	-	17,256	-	-	-	투쟁하고 객관적인 산정방식이 제시되지 않아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침해 우려가 발견됨
유가증권	에코프로머티	2026-03-23	정관변경	2-2. 기타 변경의 건 개정 상법 반영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에의 건 독립이사의 선임의 건 독립이사의 선임 및 감사위원회 구성의 건 개정 상법 시행일 적용의 건	기타	17,256	0.02	17,256	-	-	-	-	개정 상법 공포에 따른 해당 변경 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결격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유가증권	에코프로머티	2026-03-23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사내이사 이규봉 선임의 건	기타	17,256	0.02	17,256	-	-	-	-	당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유가증권	에코프로머티	2026-03-23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 사내이사 이성준 선임의 건	기타	17,256	0.02	17,256	-	-	-	당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유가증권	에코프로머티	2026-03-23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3. 사내이사 김관후 선임의 건	기타	17,256	0.02	17,256	-	-	-	당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유가증권	에코프로머티	2026-03-23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4. 사외이사 엄종규 선임의 건	기타	17,256	0.02	17,256	-	-	-	당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유가증권	에코프로머티	2026-03-23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5. 사외이사 김영석 선임의 건	기타	17,256	0.02	17,256	-	-	-	당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자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유가증권	에코프로머티	2026-03-23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선영 선임의 건	기타	17,256	0.02	17,256	-	-	-	당 후보자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자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유가증권	에코프로머티	2026-03-23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2.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성수 선임의 건	기타	17,256	0.02	17,256	-	-	-	당 후보자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자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유가증권	에코프로머티	2026-03-23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감사위원회 위원 김영석 선임의 건 (1인)	기타	17,256	0.02	17,256	-	-	-	-	당 후보자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부정 (징계) 등 지칭상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유가증권	에코프로머티	2026-03-23	정관변경	6. 등기이사보수규정 제정의 건	기타	17,256	0.02	-	17,256	-	-	-	이사보수규정 및 임원퇴직금 액수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산정방식이 제시되지 않아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침해 우려가 발견됨
유가증권	에코프로머티	2026-03-23	정관변경	7.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의 건	기타	17,256	0.02	-	17,256	-	-	-	특별공로금 규정 신규 설정에 있어 과도한 퇴직금 지급 우려가 발견됨

유가증권	카카오페이	2026-03-23	결산 및 배당	1. 제9기(2025.01.01~2025.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79,121	0.06	79,121	-	-	-	배당정책으로 인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의 훼손 우려가 발견되지 않음
유가증권	카카오페이	2026-03-23	정관변경	2-1. 신규 사업목적 추가의 건 (제2조)	기타	79,121	0.06	79,121	-	-	-	신규사업 추가에 따른 직접적인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음
유가증권	카카오페이	2026-03-23	정관변경	2-2.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변경의 건 (제15조)	기타	79,121	0.06	79,121	-	-	-	해당 변경 건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유가증권	카카오페이	2026-03-23	정관변경	2-3. 주주총회 소집지와 개최방식 조문 신설 (제21조의2, 부칙 제2조)	기타	79,121	0.06	79,121	-	-	-	개정 상법 공포에 따른 해당 변경 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결격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유가증권	카카오페이	2026-03-23	정관변경	2-4. 의결권 대리행사 증명 수단 변경의 건 (제26조, 부칙 제3조)	기타	79,121	0.06	79,121	-	-	-	개정 상법 공포에 따른 해당 변경 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결격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유가증권	카카오페이	2026-03-23	정관변경	2-5. 이사의 수 범위 변경의 건 (제28조)	기타	79,121	0.06	79,121	-	-	-	과도한 이사 선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유가증권	카카오페이	2026-03-23	정관변경	2-6.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제29조, 부칙 제4조)	기타	79,121	0.06	79,121	-	-	-	개정 상법 공포에 따른 해당 변경 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결격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유가증권	카카오페이	2026-03-23	정관변경	2-7.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수 변경 및 선.해임시 의결권 제한 강화의 건 (제38조, 부칙 제5조)	기타	79,121	0.06	79,121	-	-	-	개정 상법 공포에 따른 해당 변경 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결격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유가증권	카카오페이	2026-03-23	정관변경	2-8. 사외이사 명칭 변경의 건 (제28조, 제30조, 제35조, 제38조, 부칙 제6조)	기타	79,121	0.06	79,121	-	-	-	개정 상법 공포에 따른 해당 변경 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결격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유가증권	카카오페이	2026-03-23	정관변경	2-9. 기타 일부 조문 변경의 건 (부칙 제1조)	기타	79,121	0.06	79,121	-	-	-	정관 효력 개시일에 대한 다름을 예방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조치로 판단되어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유가증권	카카오페이	2026-03-23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신원근 사내이사 선임의 건 (2년)	기타	79,121	0.06	-	79,121	-	-	당 후보자의 대표이사 재직 당시 개인신용정보 및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소홀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선임에 반대
유가증권	카카오페이	2026-03-23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 이동식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1년)	기타	79,121	0.06	79,121	-	-	-	당 후보자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침 상 기타비상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유가증권	카카오페이	2026-03-23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3. 김재환 사외이사 선임의 건 (1년)	기타	79,121	0.06	-	79,121	-	-	당 후보자의 사외이사 재직 당시 개인신용정보 및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소홀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선임에 반대
유가증권	카카오페이	2026-03-23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4. 강혜미 사외이사 선임의 건 (3년)	기타	79,121	0.06	-	79,121	-	-	후보자가 사외이사 과다 겸직 제한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해 선임에 반대
유가증권	카카오페이	2026-03-23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권태우 사외이사 선임의 건 (1년)	기타	79,121	0.06	-	79,121	-	-	당 후보자의 사외이사 재직 당시 개인신용정보 및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소홀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선임에 반대

유가증권	카카오페이	2026-03-23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2.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박남규 사외이사 선임의 건 (3년)	기타	79,121	0.06	79,121	-	-	-	-	당 후보자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칭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유가증권	카카오페이	2026-03-23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강해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년)	기타	79,121	0.06	-	79,121	-	-	-	당 후보자가 사외이사 과다 결직 제한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해 선임에 반대
유가증권	카카오페이	2026-03-23	임원 보수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0억원)	기타	79,121	0.06	-	79,121	-	-	-	이사 보수한도가 실지금액 대비 과도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가 발견됨

유가증권	카카오페이	2026-03-23	정관변경	7.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기타	79,121	0.06	79,121	-	-	-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안 내 과도한 퇴직금 지급 우려가 발견되지 않음
유가증권	카카오페이	2026-03-23	정관변경	8. 임원보수규정 개정의 건	기타	79,121	0.06	79,121	-	-	-	규정 개정에 따른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발견되지 않음
유가증권	코스모신소재	2026-03-24	결산 및 배당	1. 제5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기타	17,567	0.05	17,567	-	-	-	배당정책으로 인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발견되지 않음

유가증권	코스모신소재	2026-03-24	정관변경	2. 정관 일부 변경	기타	17,567	0.05	17,567	-	-	-	개정 상법 공포에 따른 해당 변경 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결격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유가증권	코스모신소재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사내이사 홍동환 선임의 건	기타	17,567	0.05	17,567	-	-	-	당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유가증권	코스모신소재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 사내이사 김광수 선임의 건	기타	17,567	0.05	17,567	-	-	-	당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유가증권	코스모신소재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3. 사내이사 박득규 선임의 건	기타	17,567	0.05	17,567	-	-	-	당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유가증권	코스모신소재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4. 사내이사 김두영 선임의 건	기타	17,567	0.05	17,567	-	-	-	당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유가증권	코스모신소재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5. 사내이사 강선구 선임의 건	기타	17,567	0.05	17,567	-	-	-	당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유가증권	코스모신소재	2026-03-24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4-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최종발 선임의 건	기타	17,567	0.05	17,567	-	-	-	당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칭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유가증권	코스모신소재	2026-03-24	임원 보수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17,567	0.05	-	17,567	-	-	경영성과 악화에도 실지금액 대비 보수 한도가 과도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발견됨
유가증권	POSCO홀딩스	2026-03-24	결산 및 배당	1. 제58기(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41,606	0.05	41,606	-	-	-	<p>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POSCO홀딩스의 2025년 배당성향은 114.6%로 지배주주순이익 금액(6,600억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100%를 초과하였으나,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향은 각각 65.8%, 33.8%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연간 총배당금은 7,562억원(주당 10,000원)으로 3년 연속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및 자기주식 소각매입 등 주주환원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한 바 있음. 부채비율(76.8%)이 안정적이며, 기업가치 및 주주권의 훼손의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배당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연간 총 배당금: 7,562억원 (주당 10,000원) - 중간/분기배당: 5,672억원 (주당 7,500원) - 결산배당: 1,891억원 (주당 2,500원) <p>2025년 배당성향: 114.6% / 업종 평균 21.7% (지배주주순이익 금액에 따른 일시적 초과)</p> <p>5년 평균 배당성향: 33.8%</p> <p>영업이익: 2025년 1조 8,300억원 (전기 2조 1,736억원, -15.8%)</p> <p>영업이익률: 2025년 2.6% (5년 평균 5.7%)</p> <p>부채비율: 2025년 76.8% (5년 평균 75.6%)</p> <p>설비투자/영업현금흐름: 136.1% (5년 평균 102.3%)</p> <p>자기주식 소각 및 매입 등 배당 외 주주환원 정책 병행 추진 확인</p>

유가증권	POSCO홀딩스	2026-03-24	정관변경	2-1.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	기타	41,606	0.05	41,606	-	-	-	정관 변경 제2-1호 의안에 대하여 찬성함. 개정 상법(2025.07.22. 공포)에 따라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건임. 정관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48조에 걸쳐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알괄 변경하는 내용임. 이는 사외이사를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간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 재정의함으로써 이사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됨.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어 찬성함.
유가증권	POSCO홀딩스	2026-03-24	정관변경	2-2.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증원의 건	기타	41,606	0.05	41,606	-	-	-	정관 변경 제2-2호 의안에 대하여 찬성함. 개정 상법(2025.09.09. 공포 / 2026.09.10. 시행)에 따라 분리선임 방식으로 선임해야 할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정관 제48조에 반영하는 건임. 분리선임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로,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영향력이 감사위원 구성에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을 완화하고 감사 기능의 필요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유가증권	POSCO홀딩스	2026-03-24	정관변경	2-3.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 제한범위 확대의 건	기타	41,606	0.05	41,606	-	-	-	정관 변경 제2-3호 의안에 대하여 찬성함. 개정 상법(2025.07.22. 공포 / 2026.07.23. 시행)에 따라 감사위원 선출 시 3% 의결권 제한(합산 3% 룰) 강화를 정관 제48조에 반영하는 건임.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등 보유분을 합산한 3%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서 지배주주 측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소수주주의 감시권을 보장하는 취지임. 감사 독립성 및 시장 신뢰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됨.

유가증권	POSCO홀딩스	2026-03-24	정관변경	2-4.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건	기타	41,606	0.05	41,606	-	-	-	정관 변경 제2-4호 의안에 대하여 찬성함. ① 전자주주총회 도입 (제19조 제5항 신설): 개정 상법(2025.07.22. 공포)에 따라 2027.01.01.부터 도입 시행되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의 법적 근거를 정의에 명확히 규정하는 건임.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활성화 및 주주권 행사 용이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됨 ② 대리권 증명방법 확대 (제23조 제2항): 의결권 대리 행사 시 제출 서류 범위에 전자문서 포함, 2027.01.01. 시행. 의결권 행사 부담 완화 및 주주 참여 활성화 목적으로 타당성 인정됨
유가증권	POSCO홀딩스	2026-03-24	정관변경	2-5. 분리형 집중투표제 조항 삭제의 건	기타	41,606	0.05	41,606	-	-	-	정관 변경 제2-5호 의안에 대하여 찬성함. 개정 상법(제542조의7 제3항, 2026.09.10. 시행)에 따라, 집중투표 적용 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별개의 조로 구분하여 각 조별 집중투표를 적용하던 기존 정관 제28조 제3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건임. 상법은 집중투표 적용 대상인 '신입할 이사'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사 종류별로 분리 적용하는 현행 정관 조항은 집중투표의 본래 취지를 제한할 소지가 있음. 법무부 유권해석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집중투표의 실효성을 회복하는 방향의 정비로 평가됨. 【부칙】 - 부칙 제1조: 본 개정 정관은 제58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일부터 시행 - 부칙 제2조: 제19조 및 제23조 제2항 개정규정은 2027.01.01.부터 시행 - 부칙 제3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40조 및 제48조 개정규정은 2026.07.23.부터 시행. 단 제48조 제1항 제2문은 제58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일부터 시행
유가증권	POSCO홀딩스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이주태)	기타	41,606	0.05	41,606	-	-	-	후보자(이주태)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 【후보자 개요】 - 임기: 1년 (재선임) / 겸임: 2개사 (POSCO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 주요 경력: 포스코홀딩스 미래전략본부장 대표이사 사장(2025.03~현재), 포스코홀딩스 경영전략팀장 부사장(2024.04), 포스코 경영기획본부장 사내이사 부사장(2023.03), 포스코 구매투자본부장 부사장(2021.01), POSCO-Asia(중국)법인 법인장-전무(2018.02), 前 POSCO-America(미국)법인 법인장 상무(2014.07) - 이사회 출석률: 2025년 100.0%(7/7회), 직전임기(1년) 평균 100.0%

유가증권	POSCO홀딩스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김기수)	기타	41,606	0.05	41,606	-	-	-	<p>후보자(김기수)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후보자 개요】 임기: 1년 (재선임) / 겸임: 1개사 주요 경력: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그룹CTO 겸임-사내이사 부사장(2024.03-현재), 포스코 기술연구원장-부사장(2024.01), 포스코 저탄소공정연구소장-전무(2020.01), 포스코 엔지니어링솔루션실장-상무(2017.02), 포스코 포항연구인프라그룹장-상무부(2014.06) 이사회 출석률: 2025년 100.0%(9/9회), 직전임기(1년) 평균 100.0%</p>
유가증권	POSCO홀딩스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3.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정석모)	기타	41,606	0.05	41,606	-	-	-	<p>후보자(정석모)의 사내이사 신규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후보자 개요】 임기: 1년 (신규선임) / 겸임: 3개사 (POSCO홀딩스 사내이사, 포스코퓨처엠 기타비상무이사, 포스코중타이어에어솔루션 대표이사) 주요 경력: 포스코홀딩스 사업시너지본부장-부사장(2025.12-현재), 포스코 산업가스사업부장-전무(2025.01), 포스코중타이어에어솔루션 사장(2025.01), 포스코 산업가스사업추진반장-전무(2022.02), 포스코 이차전지소재사업실장-상무(2020.01), 연두비 대표이사-사장(2018.01)</p> <p>【검직 관련 참고 사항】 후보자는 본 주주총회에서 POSCO홀딩스 신규 사내이사 및 포스코퓨처엠 신규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각각 선정되어 있으며, 포스코중타이어에어솔루션 대표이사를 현직으로 겸직하고 있어 총 겸임 수는 3개임. 지정상 과다 겸임 기준(5개 이하)을 초과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p>
유가증권	POSCO홀딩스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후보: 이희근)	기타	41,606	0.05	41,606	-	-	-	<p>후보자(이희근)의 기타비상무이사 신규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후보자 개요】 임기: 1년 (신규선임) / 겸임: 2개사 주요 경력: 포스코 대표이사-사장(2025.03-현재), 포스코 설비강건화TF팀장-부사장(2024.11), 포스코 안전환경본부장-사내이사-부사장(2023.03), 포스코엠텍 대표이사-사장(2021.03), 포스코 포항제철소 선강담당 부소장-상무(2018.01)</p>

유가증권	POSCO홀딩스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김주연)	기타	41,606	0.05	41,606	-	-	-	<p>후보자(김주연)의 사외이사 신규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 【후보자 개요】 · 임기: 3년 (신규선임) / 결임: 2개사 · 주요 경력: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2023~현재), P&G 일본/한국지역 부회장(2019~2022), P&G Grooming 글로벌 최고마케팅책임자(2019~2022), P&G 질레트 아시아 총괄대표 부회장(2018~2019), P&G 한국 대표이사 사장(2016~2018), P&G 아시아태평양영도지역 마케팅 전무(2012~2015), P&G 한국 마케팅총괄 상무(2005~2010)</p>
유가증권	POSCO홀딩스	2026-03-24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6.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김준기)	기타	41,606	0.05	41,606	-	-	-	<p>후보자(김준기)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 【후보자 개요】 · 임기: 3년 (재선임) / 결임: 1개사 · 주요 경력: 세계번호사협의회(ISA) 아태중태그룹 공동의장(2024~현재),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CC) 위원(2021~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위원(2018~현재), 세계은행 산하 (CSID) 중재재판관(2013~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8~현재), Foley & Lardner 로펌 변호사(1992~1995) · 이사회 출석률: 2025년 100.0%(9/9회), 2024년 100.0%(10/10회), 직전임기(3년) 평균 100.0% 【이해관계 관련 검토 사항】 2023년 8월 캐나다 현지 이사회 개최 비용을 저회사에서 나눠 부담하게 한 혐의로 당시 사외이사 전원이 정탁금지법 등의 혐의로 검찰 입건되었으나, 2025년 4월 15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됨 (출처: 연합뉴스, 2025.04.15). 해당 사항은 법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 시점에서 후보자의 독립성 또는 자격을 실질적으로 훼손할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p>
유가증권	POSCO홀딩스	2026-03-24	임원 보수	7.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41,606	0.05	-	41,606	-	-	<p>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함. POSCO홀딩스는 이사회 규모를 12명(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7명)으로 확대하면서도 보수한도를 당기 100억원에서 차기 100억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였음.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이 전기 13.6억원에서 당기 13.1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5년 영업이익은 전기 2조 1,736억원에서 당기 1조 8,300억원으로 15.8% 하락하였음. 경영성과가 크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금액이 소폭 감소에 그친 것은 이사 보수 실지금액이 경영성과에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함. 【보수 현황】 · 차기 보수한도: 100억원 (전기 대비 동일 유지) · 이사회 규모: 12명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7명으로 확대) · 비사외이사 1인당 실지금액: 전기 13.6억원 → 당기 13.1억원 (-3.5%) · 비사외이사 1인당 보수한도: 19.3억원 / 실지금액 대비 1.5배 · 영업이익: 전기 2조 1,736억원 → 당기 1조 8,300억원 (-15.8%) · TSR: 24.7% (전기 -48.0%) · 이사회 내 보수 관련 위원회 설치 확인 ※ 실지금액 대비 보수한도 배율(1.5배)은 검토 기준(3.3배 이하)을 충족하나, 영업이익 15.8% 급감에도 실지금액이 소폭 감소(-3.5%)에 그쳐 경영성과 미연계로 반대함</p>

유가증권	SK이노베이션	2026-03-24	결산 및 배당	1. 제19기 재무제표(연결 및 별도) 승인	기타	17,985	0.01	17,985	-	-	-	재무제표 승인 제1호 의안에 찬성함. SK이노베이션은 2025년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최근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배당 여력이 부족한 상황임. 영업이익 및 영업활동현금흐름 추이, 최근 설비투자 규모, 현재 부채비율 등 제반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형 배당 수준은 본 석기업의 실질적인 재무여건에 대체로 부합함. 또한 2024년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며 향후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기업가치 및 주주권의 훼손의 우려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
유가증권	SK이노베이션	2026-03-24	정관변경	2-1. 집중투표가 배제된 정관의 변경의 건	기타	17,985	0.01	17,985	-	-	-	정관 변경 제2-1호 의안에 찬성함. 개정 상법(2026.09.10. 시행예정)에 따라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던 기존 정관 조항(제26조 제2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건임. 기존 배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개정법 시행 이후 제도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주주와 회사 모두에게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 선제적으로 정관을 정비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함.
유가증권	SK이노베이션	2026-03-24	정관변경	2-2. 그 외 정관 변경의 건 자기주식 처분 및 소각규정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대리권 증명방법 확대 전자주주총회 개최기록 분점 비지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 변경 이사 직무수행 기준 명시 이사회 의안 관련 정보 사전 제공 의무 분리 선임 감사위원 수 확대	기타	17,985	0.01	17,985	-	-	-	정관 변경 제2-2호 의안에 찬성함. ① 자기주식 처분 및 소각 규정 (제9조의2 신설): 자기주식 처분 및 소각 결의 권한이 이사회에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임. 상법 제342조 및 제343조에 따라 자기주식의 처분 소각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는 관련 법령 규정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됨. ②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제19조 변경): 27년 1월 1일부터 도입 시행되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비해 병행 개최의 법적 근거를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며, 주주 참여 활성화 목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③ 대리권 증명방법 확대 (제23조 변경): 의결권 대리 행사 시 제출 서류 범위에 전자문서 포함, 2027.01.01. 시행. 의결권 행사 부담 완화 및 주주 참여 활성화 목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④ 전자주주총회 개최기록 분점 비지 의무화(제25조 변경):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비해 전자주주총회 개최 기록을 분점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임. 주주총회 운영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됨. ⑤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 변경 (제26조, 제36조 변경): 개정 상법(25.07.22 공포)에 따라 사외 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건임. 사외 이사 명칭 재정의의를 통해 지위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 감독 기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됨. ⑥ 이사 직무수행 기준 명시(제30조 변경): 개정 상법(25.07.22 공포)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의 문언과 취지를 정관에 반영하는 건임.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주권 보호 및 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판단됨. ⑦ 이사회 의안 관련 정보 사전 제공 의무 (제31조 변경): 이사회 구성원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정관에 규정하는 건. 변경안을 통해 이사회 심의 가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 주주 간 비대칭 이익 보호가 기대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됨. ⑧ 분리선임 감사위원 수 확대 (제36조의 2 변경): 개정 상법(25.09.09 공포, 26.09.10 시행)에 따라 분리선임 방식으로 선임하는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건임. 분리선임 대상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내 통제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점에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됨.

유가증권	SK이노베이션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사내이사 선임 (장용호 후보)	기타	17,985	0.01	17,985	-	-	-	사내이사 장용호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에 찬성함. - 당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점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
유가증권	SK이노베이션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 사외이사 선임 (김주연 후보)	기타	17,985	0.01	17,985	-	-	-	사외이사 김주연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에 찬성함. - 당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점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
유가증권	SK이노베이션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복희 후보)	기타	17,985	0.01	17,985	-	-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복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에 찬성함. - 당 후보자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점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

유가증권	SK이노베이션	2026-03-24	임원 보수	5.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기타	17,985	0.01	17,985	-	-	-	<p>이사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에 찬성함.</p> <p>K이노베이션은 이사회 규모를 9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으로 확대하고 보수한도를 당기 100억원에서 차기 100억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였음.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이 전기 8.9억원에서 당기 34.9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 대비 2026년 보수한도는 0.9배를 보임.</p> <p>또한 경영성과(전기대비 영업이익)는 2024년 231억원에서 2025년 4,481억원으로 상승하였음. 영업이익이 개선되면서 실지급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사 보수 실지급액이 경영성과와 연계되어 설정되고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p>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결산 및 배당	1.제78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286,176	0.04	286,176	-	-	-	<p>2025년 동사의 배당성향은 4.9%로 업종 평균을 대폭 하회하며,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향 역시 각각 8.3%, 9.7%에 그쳐 지속적으로 저조한 수준. 동사는 최근 2년간 안정적인 순이익을 실현해 왔으며, 설비투자 수요에 비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현저히 부족하지 않음. 이에 현재 배당수준은 주주환원 여력 대비 과소하다는 판단이나, 26년도 2월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결의한 바 있고, 향후 배당성향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찬성</p>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정관변경	2-1.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기타	286,176	0.04	286,176	-	-	-	<p>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상실될 조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안전으로 찬성</p>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정관변경	2-2. 그 외 개정 상법 변경	기타	286,176	0.04	286,176	-	-	-	개정 상법의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안건으로 찬성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차선용)	기타	286,176	0.04	286,176	-	-	-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참상 결격사유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1.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정덕균)	기타	286,176	0.04	286,176	-	-	-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참상 결격사유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2.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김정원)	기타	286,176	0.04	286,176	-	-	-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상 결격사유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전성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3.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최강국)	기타	286,176	0.04	286,176	-	-	-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상 결격사유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전성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후보: 김정규)	기타	286,176	0.04	286,176	-	-	-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상 결격사유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전성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고승범)	기타	286,176	0.04	286,176	-	-	-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상 결격사유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전성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7-1.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김정원)	기타	286,176	0.04	286,176	-	-	-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상 결격사유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전성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7-2.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최강국)	기타	286,176	0.04	286,176	-	-	-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상 결격사유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전성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임원 보수	8. 이사 보수현도 승인의 건	기타	286,176	0.04	286,176	-	-	-	이사 보수현도 승인 안전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찬성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자본구조	9.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기타	286,176	0.04	286,176	-	-	-	배당재원 확보를 위해 감액가능 자본준비금 내에서 감액하는 것은 결격사유 없음으로 찬성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정관변경	10.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기타	286,176	0.04	286,176	-	-	-	동사의 고유 임원제도인 '연구위원' 및 '자세임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가치 훼손 우려는 없으므로 찬성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자본구조	11. 2026년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	기타	286,176	0.04	286,176	-	-	-	<p>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은 최대 300,000주를 내년도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또한 전체 발행주식수의 약 0.19%에 해당하는 잔여 자기주식은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주주 사용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계획은 20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할 예정.</p> <p>1) 처분 주 잔여 보유 자기주식의 비중이 높지 않고, 2) 분석기업이 2026년 2월 이미 1,530만주의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기주식과 관련한 시장의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이며, 3) 미소각 보유 자기주식의 목적을 임직원 보상으로 명시하였기에 본 안전과 관련한 기업가치 훼손 우려 낮으며, 이에 찬성</p>
코스닥	에스엠	2026-03-25	결산 및 배당	1. 제31기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배당금: 1주당 1,620원)	기타	36,044	0.16	36,044	-	-	-	<p>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찬성함.</p> <p>에스엠의 2025년 배당성향은 10.7%로 업종 평균을 소폭 하회하며,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향은 각각 16.4%, 16.1%를 기록함. 이를 감안할 때 원형 배당규모가 소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움.</p> <p>한편, 에스엠은 2024년 전체 발행주식수의 약 2%인 477,247주의 자기주식을 소각하였으며, 2025년에도 458,937주의 자기주식을 추가 소각한 방 있어 배당 수준과 관련해 기업가치 훼손 우려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코스닥	에스엠	2026-03-25	정관변경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기타	36,044	0.16	-	36,044	-	-	<p>정관 일부 변경 제2호 의안에 찬성함.</p> <p>제29조 변경안은 에스엠이 이사의 수를 '3명 이상'에서 '3명 이상 7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임.</p> <p>이사회 규모의 탄력적 운영이 법령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이사의 수가 과소한 경우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존재함. 또한 이사의 수가 과다한 경우 개별이사의 영향력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음. 에스엠의 경우 2026년 3분기 기준 재직 중이었던 12명의 이사 중 10명의 임기가 금년 3월로 만료되나, 금번 주총을 통해 5인의 이사가 선임되면 다시 이사의 수가 7명이 될 예정임. 이 경우 기존 이사의 사임이나 만료가 도래하기 전에는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불가하며, 소수주주 권익 보호 및 이사회 구성의 유연성을 증장기적으로 제약하여 지배구조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함.</p> <p>따라서 이사회 규모의 과도한 축소를 판단하여 해당 정관의 변경안에 대해 반대함</p>

코스닥	에스엠	2026-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사내이사 장철혁 선임의 건	기타	36,044	0.16	36,044	-	-	-	사내이사 장철혁 선임의 건 제3호 의안에 찬성함. - 당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
코스닥	에스엠	2026-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1. 사외이사 문정빈 선임의 건	기타	36,044	0.16	36,044	-	-	-	사외이사 문정빈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에 찬성함. - 당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
코스닥	에스엠	2026-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2. 사외이사 임정하 선임의 건	기타	36,044	0.16	36,044	-	-	-	사외이사 임정하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에 찬성함. - 당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

코스닥	에스엠	2026-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3. 사외이사 이종섭 선임의 건	기타	36,044	0.16	36,044	-	-	-	<p>사외이사 이종섭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에 찬성함. 당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칭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p>
코스닥	에스엠	2026-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기타비상무이사 Tsai Chun Pan(潘才俊) 선임의 건	기타	36,044	0.16	36,044	-	-	-	<p>기타비상무이사 Tsai Chun Pan(潘才俊) 선임의 건 제5호 의안에 찬성함. 당 후보자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칭 상 기타비상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p>
코스닥	에스엠	2026-03-25	임원 보수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0억)	기타	36,044	0.16	-	36,044	-	-	<p>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에 반대함. 에스엠는 이사회 규모를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축소하고 보수한도를 당기 60억원에서 차기 60억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며,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은 전기 4.2억원에서 당기 4.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 대비 보수한도는 4.4배를 보였음. 영업이익은 전기 873억원에서 당기 1,830억원으로 상승하였음. 경영성과 개선과 함께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 또한 소폭 증가하였으나, 보수한도는 당기 실지금액 대비 4.4배로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반대함. 【보수 현황】 - 자기 보수한도: 60억원 (전기 대비 동일 유지) - 이사회 규모: 7명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확대) - 비사외이사 1인당 실지금액: 전기 21.0억원 → 당기 22.2억원 (+5.7%) - 비사외이사 1인당 보수한도: 19.3억원 / 실지금액 대비 4.4배 - 영업이익: 전기 873억원 → 당기 1,830억원 (109.6%) - TSR: 79.1% (전기 -17.5%) - 이사회 내 보수 관련 위원회 설치 확인 ※ 실지금액 대비 보수한도 배율(4.4배)은 검토 기준(3.3배)을 초과해 반대함</p>

코스닥	에스엠	2026-03-25	임원 보수	7. 감사 보수현도 승인 의 건 (2억)	기타	36,044	0.16	36,044	-	-	-	감사 보수현도 승인 의 건 제7호 의안에 찬성함. 에스엠에서 제안한 감사 1인에 대한 보수현도 2억 원은 감사에게 업무 책임감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우주가치 훼손 우려가 발견되지 않음
유가증권	BNK금융지주	2026-03-26	결산 및 배당	1. 제1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의 건	계열회사	42,151	0.01	-	-	-	42,151	당사는 BNK금융지주의 계열회사로서 중립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함
유가증권	BNK금융지주	2026-03-26	정관변경	2-1.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에 관한 사항 (제26조)	계열회사	42,151	0.01	-	-	-	42,151	당사는 BNK금융지주의 계열회사로서 중립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함

유가증권	BNK금융지주	2026-03-26	정관변경	2-2. 주주의결권의 대리행사 증명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제31조)	계열회사	42,151	0.01	-	-	-	42,151	당사는 BNK금융지주의 계열회사로서 중립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함
유가증권	BNK금융지주	2026-03-26	정관변경	2-3.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규정 개정 (제42조)	계열회사	42,151	0.01	-	-	-	42,151	당사는 BNK금융지주의 계열회사로서 중립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함
유가증권	BNK금융지주	2026-03-26	정관변경	2-4. 이사회운영위원회 폐지에 관한 사항 (제49조)	계열회사	42,151	0.01	-	-	-	42,151	당사는 BNK금융지주의 계열회사로서 중립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함

유가증권	BNK금융지주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사내이사 후보 반대인 선임의 건	계열회사	42,151	0.01	-	-	-	42,151	당사는 BNK금융지주의 계열회사로서 중립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함
유가증권	BNK금융지주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 사외이사 후보 오명숙 선임의 건	계열회사	42,151	0.01	-	-	-	42,151	당사는 BNK금융지주의 계열회사로서 중립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함
유가증권	BNK금융지주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3. 사외이사 후보 김남걸 선임의 건	계열회사	42,151	0.01	-	-	-	42,151	당사는 BNK금융지주의 계열회사로서 중립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함

유가증권	BNK금융지주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4. 사외이사 후보 자빙직 선임의 건	계열회사	42,151	0.01	-	-	-	42,151	당사는 BNK금융지주의 계열회사로서 중립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함
유가증권	BNK금융지주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5. 사외이사 후보 이남우 선임의 건	계열회사	42,151	0.01	-	-	-	42,151	당사는 BNK금융지주의 계열회사로서 중립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함
유가증권	BNK금융지주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6. 사외이사 후보 박혜진 선임의 건	계열회사	42,151	0.01	-	-	-	42,151	당사는 BNK금융지주의 계열회사로서 중립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함

유가증권	BNK금융지주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박근서 선임의 건	계열회사	42,151	0.01	-	-	-	42,151	당사는 BNK금융지주의 계열회사로서 중립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함
유가증권	BNK금융지주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2.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강승수 선임의 건	계열회사	42,151	0.01	-	-	-	42,151	당사는 BNK금융지주의 계열회사로서 중립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함
유가증권	BNK금융지주	2026-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5-1.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김남걸 선임의 건	계열회사	42,151	0.01	-	-	-	42,151	당사는 BNK금융지주의 계열회사로서 중립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함

유가증권	BNK금융지주	2026-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5-2.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자빙직 선임의 건	계열회사	42,151	0.01	-	-	-	42,151	당사는 BNK금융지주의 계열회사로서 중립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함
유가증권	BNK금융지주	2026-03-26	정관변경	6. 임원퇴직금규정 개정 승인의 건	계열회사	42,151	0.01	-	-	-	42,151	당사는 BNK금융지주의 계열회사로서 중립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함
유가증권	BNK금융지주	2026-03-26	임원 보수	7-1.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주주제안)	계열회사	42,151	0.01	-	-	-	42,151	당사는 BNK금융지주의 계열회사로서 중립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함

유가증권	BNK금융지주	2026-03-26	기타	7-2. 영도제한조건부 주식 부여의 건 (주주제안)	계열회사	42,151	0.01	-	-	-	42,151	당사는 BNK금융지주의 계열회사로서 중립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함
유가증권	BNK금융지주	2026-03-26	임원 보수	8.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이사회안)	계열회사	42,151	0.01	-	-	-	42,151	당사는 BNK금융지주의 계열회사로서 중립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함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결산 및 배당	1. 제31기(2025.1.1~2025.12.31)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현금배당: 주당 75원)	기타	194,853	0.04	-	194,853	-	-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반대함. 카카오의 2025년 배당성향은 6.6%로 업종 평균을 하회하며, 최근 5년 평균 배당성향은 6.1%에 그침. 카카오가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 상태에 있지 않으며,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원치해 부족해 주주환원이 제약되는 상황 또한 해당되지 않음. 영업이익 및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주이, 최근 설비투자 규모, 부채비율 등 재무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현행 배당 수준은 실질 주주환원 여력 대비 과소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해당 안건에 반대함.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정관변경	2-1. 사업의 목적 변경의 건 (제2조)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추가	기타	194,853	0.04	194,853	-	-	-	<p>사업의 목적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에 찬성함.</p> <p>정관 제2조 변경안은 카카오가 사업 목적으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건임. 정관에 추가되는 사업 목적은 분석기업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고, 분석기업의 사업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분석기업의 수익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변경임. 변경에 따른 주주가지 훼손 가능성 또한 발견할 수 없어 찬성함.</p>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정관변경	2-2. 주주총회 기준일 변경의 건 (제13조)	기타	194,853	0.04	194,853	-	-	-	<p>주주총회 기준일 변경의 건 제2-2호 의안에 찬성함.</p> <p>제13조 제2항 신설안은 의결권 기준일 규정을 정비하여 주주총회를 결산기 직후 3월에 집중 개최하지 않고 다른 시기에 분산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해당 정관계정은 금융위원회가 2025년 11월 17일 발표한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의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주주총회 분산 개최 유도 방향에 부합함.</p> <p>본 변경안은 주주의 의결권을 축소하거나 주주총회 소집절차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 기준일을 결산기 말일과 분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주총회 집중 완화, 주주의 안전 검토 및 참여 여건 개선, 주주권 행사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찬성함.</p>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정관변경	2-3. 집중투표 배제 조항 변경의 건 (제24조, 부칙 제4조)	기타	194,853	0.04	194,853	-	-	-	<p>집중투표 배제 조항 변경의 건 제2-3호 의안에 찬성함.</p> <p>제24조 변경안은 개정 상법(26.09.10 시행 예정)에 따라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던 기존 정관 조항(제24조 제2항)을 삭제하는 건임. 기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개정법 시행 이후 제도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주주와 회사 모두에게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개정법이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설계된 만큼,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 선제적으로 정관을 정비하는 것은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 가능한 결의 효력 다름 등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함.</p>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정관변경	2-4. 의결권 대리행사의 증명 수단 변경의 건 (제20조, 부칙 제2조)	기타	194,853	0.04	194,853	-	-	-	<p>의결권 대리행사의 증명 수단 변경의 건 제2-4호 의안에 찬성함.</p> <p>제20조 변경안은 개정 상법(25.07.22. 공표 / 27.01.01. 시행) 제368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제출하는 증명 문서의 범위에 기존의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정관상 근거를 마련하는 건임. 의결권 행사 과정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p>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정관변경	2-5.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 (제23조, 제27조 제3항, 제27조 제4항, 부칙 제3조)	기타	194,853	0.04	194,853	-	-	-	<p>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 제2-5호 의안에 찬성함.</p> <p>제23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3항, 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도록 단서를 두어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건임. 정관 효력 개시일을 둘러싼 해석상 다름을 예방하고, 변경된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혼선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 찬성함.</p>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정관변경	2-6.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및 선·해임시 의결권 제한 강화의 건 (제27조 제7항, 제27조 제10항, 부칙 제5조)	기타	194,853	0.04	194,853	-	-	-	<p>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및 선·해임시 의결권 제한 강화의 건 제2-6호 의안에 찬성함.</p> <p>제27조 제7항 변경안은 개정 상법(25.09.09. 공표 / 26.09.10. 시행)에 따라 분리선임 방식으로 선임해야 할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건임. 감사위원회의 핵심 구성원(독립이사)을 선임하는 단계에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상법의 취지를 구현하여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영향력이 감사위원 구성에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을 완화하고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특히 분리선임 대상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이사회 내 통제·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예상됨으로 찬성함.</p>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정관변경	2-7.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의 건 (제23조 제1항)	기타	194,853	0.04	194,853	-	-	-	<p>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의 건 제2-7호 의안에 찬성함.</p> <p>카카오는 최근 10개년 평균 이사회 구성이 7인 내외였던 점을 감안할 때, 본 변경안은 실제 운영 실태를 정관에 반영하는 정비적 성격이 강한 건임. 또한 회사가 사가카오투 중심의 핵심 사업 구조에 부합하는 기민한 의사결정 체계의 마련과 이사회 운영의 효율화를 개성 취지로 설정하는 점은 현행 운영 규모와 정관상 상반 간의 괴리를 해소하여 이사회 구조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수용할 수 있음. 현재 이사회 운영 실태와 법적 통제장치, 독립성 강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주권익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찬성함.</p>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정관변경	2-8. 기타 일부조항 변경의 건 (부칙 제1조) 정관 개정 사항 전반의 시행일 26년 3월 26일로 명시	기타	194,853	0.04	194,853	-	-	-	<p>기타 일부조항 변경의 건 제2-8호 의안에 찬성함.</p> <p>부칙 제1조 변경안은 정관 개정 사항 전반의 시행일을 26년 3월 26일로 명시해 정관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건임. 정관 효력 개시일을 둘러싼 해석상 다툼을 예방하고, 변경된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혼선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 찬성함</p>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정신아 사내이사 선임의 건 (2년)	기타	194,853	0.04	194,853	-	-	-	<p>정신아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에 찬성함.</p> <p>당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적 (징계) 등 지칭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p>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 김영준 사외이사 선임의 건 (3년)	기타	194,853	0.04	194,853	-	-	-	김영준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에 찬성함. 당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3. 차경진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년)	기타	194,853	0.04	194,853	-	-	-	차경진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에 찬성함. 당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합준승, 3년)	기타	194,853	0.04	194,853	-	-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합준승 선임의 건 제4호 의안에 찬성함. 당 후보자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김영준, 3년)	기타	194,853	0.04	194,853	-	-	-	<p>감사위원회 위원 김영준 선임의 건 제5호 의안에 찬성함.</p> <p>당 후보자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지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p>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임원 보수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0억)	기타	194,853	0.04	194,853	-	-	-	<p>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전에 찬성함.</p> <p>카카오는 이사회 규모를 6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으로 축소하고 보수한도를 당기 60억원에서 자기 60억원으로 동일하게 유지 하였음.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이 전기 11.5억원에서 당기 11.6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전기 4,602억원에서 당기 7,320억원으로 상승하였음.</p> <p>당기 실지금액 대비 자기 보수한도가 3.3배 이하로 책정되었으며 경영성과 개선과 함께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이 증가해 경영성과와 연계하며 설정되고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p> <p>【보수 현황】 자기 보수한도: 60억원 (전기 대비 동일 유지) 이사회 규모: 6명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으로 확대) 비사외이사 1인당 실지금액: 전기 34.6억원 → 당기 34.7억원 (+0.3%) 비사외이사 1인당 보수한도: 29.0억원 / 실지금액 대비 2.5배 영업이익: 전기 4,602억원 → 당기 7,320억원 (59.1%) TSR: 57.6% (전기 -29.6%) 이사회 내 보수 관련 위원회 설치 확인</p>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자본 구조	7. 자기주식 소각의 건	기타	194,853	0.04	194,853	-	-	-	<p>자기주식 소각의 건 제7호 의안에 찬성함.</p> <p>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합병 시 카카오엔터의 합병신주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 1,420,723주를 소각하는 건임.</p> <p>카카오가 보유한 자기주식 중 1,420,723주에 대해서만 임의/무상 소각할 예정임에 따라, 일반 주주의 소유주식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관련 지침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 는 점을 발견할 수 없어 찬성함.</p>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자본 구조	8.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감액 승인의 건	기타	194,853	0.04	194,853	-	-	-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감액 승인의 건 제8호 의안에 찬성함. 자본잉여금을 전입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상법 제461조2에 의거, 해당제원 확보를 위해 감액 가능 자본준비금 내에서 감액하는 것에 지장상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찬성함.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자본 구조	9.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 승인의 건	기타	194,853	0.04	194,853	-	-	-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제9호 의안에 찬성함. 26년 2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2항(26.03.06 공포 시행)에서 규정한 자기주식 소각의 예외 사유인 임직원 보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계획에 대한 승인을 구하는 건임. 26년 3월 6일 공포시행된 상법은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하도록 하고,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 중인 기존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내 소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임직원 보상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작성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음. 상법 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주총회 승인 대상이 되는 보유-처분계획의 핵심은 예외적으로 보유가 필요한 물량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범위, 보유기간 및 처분 구조를 주주가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데 있음. 카카오는 26년 3월 19일 기준 보통주 자기주식 2,427,46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보통주 1,006,741주를 내년 주주총회일까지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할 계획임. 나머지 잔여주식 1,420,723주에 대해서는 2026년 3월 26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 제7호 의안: 자기주식 소각의 건으로 부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후 소각 예정임.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고 남은 모든 주식은 개정 상법의 취지에 따라 모두 소각할 예정임을 명시하고 있음. 자기주식의 최종적인 활용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주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자의적 처분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것으로 판단에 찬성함.
유가증권	카카오뱅크	2026-03-26	결산 및 배당	1. 제10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기타	138,729	0.03	138,729	-	-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호 의안에 찬성함. 카카오뱅크의 2025년 배당성향은 45.6%로 업종 평균(36.2%)을 상회하며,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향은 각각 36.2%, 28.7%를 기록함. 영입현금흐름을 통한 현금창출력과 현 배당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행 배당 규모가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찬성함.

유가증권	카카오뱅크	2026-03-26	정관변경	2-1.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정관 제37조 제3항)	기타	138,729	0.03	138,729	-	-	-	<p>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제2-1호 의안에 찬성함.</p> <p>제37조 제3항 삭제안은 26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제542조의7 제3항)에 따라,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던 기존 조항을 삭제하는 건임. 기존 배제 조항을 유지할 경우 개정법 시행 이후 제도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주주와 회사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제도 시행 전 선제적인 정관 정비는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결의 효력 다툼 등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함.</p>
유가증권	카카오뱅크	2026-03-26	정관변경	2-2.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변경 (정관 제26조 제2항)	기타	138,729	0.03	138,729	-	-	-	<p>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변경의 건 제2-2호 의안에 찬성함.</p> <p>제26조 제2항 신설안은 개정 상법(25.07.22 공포)에 따라 27년 1월 1일부터 도입 시행되는 원상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비해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 법적 근거를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는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므로 주주 권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찬성함.</p>
유가증권	카카오뱅크	2026-03-26	정관변경	2-3. 의결권 대리행사 수단 확대 (정관 제31조 제2항)	기타	138,729	0.03	138,729	-	-	-	<p>의결권 대리행사 수단 확대의 건 제2-3호 의안에 찬성함.</p> <p>제31조 제2항 변경안은 개정 상법(2025.07.22. 공포 / 2027.01.01. 시행) 제368조 제2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제한하는 증명 문서의 범위에 기존의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정관상 근거를 마련하는 건임. 의결권 행사 과정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p>

유가증권	카카오뱅크	2026-03-26	정관변경	2-4. 사외이사 명칭 변경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기타	138,729	0.03	138,729	-	-	-	<p>사외이사 명칭 변경의 건 제2-4호 의안에 찬성함.</p> <p>제35조 제3항, 제36조 제2항 및 제3항,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5항, 제6항, 제40조 제2항, 제3항, 제42조, 제50조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변경안은 개정 상법(26.07.23. 시행예정)에 따라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건임.</p> <p>사외이사를 단순한 외부 인사가 아닌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 재정의함으로써 그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에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p>
유가증권	카카오뱅크	2026-03-26	정관변경	2-5. 독립이사 연임 시 임기 변경 (정관 제38조 제2항)	기타	138,729	0.03	138,729	-	-	-	<p>독립이사 연임 시 임기 변경의 건 제2-5호 의안에 찬성함.</p> <p>제38조 제2항 변경안은 카카오뱅크가 독립이사의 연임 시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건임. 기존 정관에서는 독립이사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연임 시에는 1년으로 제한하고 있음.</p> <p>상대적으로 짧은 임기는 이사로 하여금 잦은 연임 심사를 받게 함으로써 중장기 전략의 일관된 추진과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p> <p>반면 연임 시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는 것은 이사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이사회에 감시 기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p>
유가증권	카카오뱅크	2026-03-26	정관변경	2-6.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황 (정관 제50조 제4항)	기타	138,729	0.03	138,729	-	-	-	<p>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황의 건 제2-6호 의안에 찬성함.</p> <p>제50조 제4항 변경안은 개정 상법(25.09.09. 공포 / 26.09.10. 시행)에 따라 분리선임 방식으로 선임해야 할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건임. 감사위원회의 핵심 구성원(독립이사)을 선임하는 단계에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상법의 취지를 구현하여,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영향력이 감사위원 구성에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을 원회하고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p> <p>특히 분리선임 대상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이사회 내 통제·감독 기능을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예상되므로 찬성함.</p>

유가증권	카카오뱅크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사내이사 후보 김근수 선임의 건	기타	138,729	0.03	138,729	-	-	-	<p>사내이사 후보 김근수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에 찬성함.</p> <p>당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칭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p>
유가증권	카카오뱅크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 사외이사 후보 진용섭 선임의 건	기타	138,729	0.03	138,729	-	-	-	<p>사외이사 후보 진용섭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에 찬성함.</p> <p>당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칭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p>
유가증권	카카오뱅크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3. 사외이사 후보 남상일 선임의 건	기타	138,729	0.03	-	138,729	-	-	<p>사외이사 후보 남상일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에 반대함.</p> <p>당 후보자는 20년 12월부터 23년 12월까지 SGI서울보증보험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SGI서울보증보험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됨</p> <p>카카오뱅크는 SGI서울보증보험이 은행업 인가 이전 준비법인 단계부터 출자하여 25년 6월 30일 기준 약 3.1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야신(대출) 상품과 관련된 사업 모델에 대해 21년부터 24년까지 협업을 진행한 바 있음.</p> <p>카카오뱅크와 SGI서울보증보험 간 사업 협력 관계가 이루어진 기간 (2021~2024년)이 후보자의 SGI서울보증보험 재직 기간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점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해당 회사 및 그 계열회사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외이사로서의 감독 및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지 우려가 존재해 반대함.</p>

유가증권	카카오뱅크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4.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권대열 선임의 건	기타	138,729	0.03	138,729	-	-	-	<p>기타비상무이사 후보 권대열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에 찬성함.</p> <p>당 후보자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기타비상무이사로서의 자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p>
유가증권	카카오뱅크	2026-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김훈희 선임의 건	기타	138,729	0.03	138,729	-	-	-	<p>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김훈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에 찬성함.</p> <p>당 후보자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자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p>
유가증권	카카오뱅크	2026-03-26	임원 보수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138,729	0.03	138,729	-	-	-	<p>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에 찬성함.</p> <p>카카오뱅크는 이사회 규모를 9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으로 확대하고 보수한도를 당기 50억원에서 차기 80억원으로 증가시켰음.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이 전기 7.9억원에서 당기 8.1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기 6,069억원에서 당기 6,494억원으로 7.0% 증가하였음.</p> <p>카카오뱅크의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은 경영성과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성과와 일정 부분 연계되어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p> <p>【보수 현황】 - 자기 보수한도: 80억원 (전기 대비 증가) - 이사회 규모: 9명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으로 확대) - 비사외이사 1인당 실지금액: 전기 27.6억원 → 당기 44.9억원 (+62.7%) - 비사외이사 1인당 보수한도: 25.7억원 / 실지금액 대비 1.7배 - 영업이익: 전기 6,069억원 → 당기 6,494억원 (+7.0%) - TSR: 4.1% (전기 -26.1%) - 이사회 내 보수 관련 위원회 설치 확인</p>

유가증권	코스모화학	2026-03-26	결산 및 배당	1. 제58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결손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50,266	0.13	50,266	-	-	<p>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호 의안에 찬성함.</p> <p>코스모화학의 2025년 배당성향은 0.0%로 업종 평균을 하회하며,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향 또한 0.0%를 기록함.</p> <p>다만 코스모화학이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손실을 시현해 왔음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배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를 감안할 때 현행 배당규모가 재무 여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p>
유가증권	코스모화학	2026-03-26	정관변경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대리권 증명방법 확대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 변경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분리선임 방식 감사위원 수 확대 감사위원 선채임 시 3% 의결권 제한 강화	기타	50,266	0.13	50,266	-	-	<p>정관 일부 변경 제2호 의안에 찬성함.</p> <p>①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규정 (제17조 제2항 신설): 25.07.22. 공포된 개정 상법에 따라 27.01.01.부터 도입시행되는 현상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비하여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 법적 근거를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건임.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는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므로 주주 권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찬성함.</p> <p>② 대리권 증명방법 확대 (제23조 제2항 변경): 개정 상법(25.07.22. 공포 / 27.01.01. 시행) 제368조 제2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제출하는 증명 문서의 범위에서 서면본 아니라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정관상 근거를 마련하는 건임. 의결권 행사 과정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p> <p>③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 변경 건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2항, 제36조의2 제1항, 제38조의2 제3항, 제8항, 제9항, 제39조 제1항 변경): 개정 상법(25.07.22. 공포)에 따라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건으로 사외이사를 단순한 외부 인사가 아닌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 재정의함으로써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p> <p>④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근거 (제36조의3 신설):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건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설치됨.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는 독립이사의 독립성 확보와 선임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함.</p> <p>⑤ 분리선임 방식 선임 감사위원 수 확대(제38조의2 제5항 변경): 분리선임 방식으로 선임해야 할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건임. 감사위원회의 핵심 구성원(독립이사)을 선임하는 단계에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상법의 취지를 구현하여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영향력이 감사위원 구성에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을 완화하고, 감사 기능의 필요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분리선임 대상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이사회 내 통제·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찬성함.</p> <p>⑥ 감사위원 선채임 시 3% 의결권 제한(합산 3% 총) 강화(제38조의2 제4항 변경): 감사위원 선채임 시 3% 의결권 제한(합산 3% 총) 강화를 정관에 반영함으로써,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건임. 개정 상법은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시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특히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등 보유분을 합산하도록 규정. 감사 독립성 및 시장 신뢰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정관 반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찬성함.</p>
유가증권	코스모화학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김두영 사내이사 선임	기타	50,266	0.13	50,266	-	-	<p>김두영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에 찬성함.</p> <p>당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p>

유가증권	코스모화학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 최재용 사내이사 선임	기타	50,266	0.13	50,266	-	-	-	최재용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에 찬성함. - 당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칭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
유가증권	코스모화학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3. 신동구 사내이사 선임	기타	50,266	0.13	50,266	-	-	-	신동구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에 찬성함. - 당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칭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
유가증권	코스모화학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4. 강선구 사내이사 선임	기타	50,266	0.13	50,266	-	-	-	강선구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에 찬성함. - 당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칭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

유가증권	코스모화학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5. 김재혁 사외이사 선임	기타	50,266	0.13	50,266	-	-	-	김재혁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에 찬성함. 당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칭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
유가증권	코스모화학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1. 권영노 사외이사겸감사위원 선임	기타	50,266	0.13	50,266	-	-	-	권영노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에 찬성함. 당 후보자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칭 상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
유가증권	코스모화학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2. 김현수 사외이사겸감사위원 선임	기타	50,266	0.13	50,266	-	-	-	김현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에 찬성함. 당 후보자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칭 상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

유가증권	코스모화학	2026-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김재혁 감사위원 선임의 건	기타	50,266	0.13	50,266	-	-	-	김재혁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5호 의안에 찬성함. 당 후보자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칭 상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서의 격차유를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
유가증권	코스모화학	2026-03-26	임원 보수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50,266	0.13	-	50,266	-	-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전에 반대함. 코스모화학은 이사회 규모를 8명(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3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당기 20억원에서 차기 20억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였음.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은 전기 1.59억원에서 당기 1.58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전기 -20억원에서 당기 -162억원으로 악화함. 경영성과가 크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금액이 소폭 감소에 그친 것은 이사 보수 실지금액이 경영성과에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함. 【보수 현황】 - 자기 보수한도: 20억원 (전기 대비 동일 유지) - 이사회 규모: 8명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3명으로 유지) - 비사외이사 1인당 실지금액: 전기 7.9억원 → 당기 7.9억원 (유지) - 비사외이사 1인당 보수한도: 3.7억원 / 실지금액 대비 2.3배 - 영업이익: 전기 -20억원 → 당기 -162억원 (적자지속) - TSR: -6.2% (전기 -60.8%)
유가증권	현대차	2026-03-26	결산 및 배당	1. 제5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98,330	0.05	98,330	-	-	-	영업이익 및 영업활동현금 흐름의 추이, 최근 설비투자 규모, 현재 부채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배당 수준이 과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 또한 현대차는 2024.8월 중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발표하며 주당 최소배당금 10,000원 이상, 연 TSR 35% 이상 지속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또한 2024년 3월 발행주식 대비 약 1.0%의 자기주식을 소각한데 이어 2025년4월에도 발행주식 대비 2.2%의 자기주식을 소각한 바 있음.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현대차	2026-03-26	정관변경	2-1. 사업목적 추가 (자동차 대어 사업 추가)	기타	98,330	0.05	98,330	-	-	-	사업 목적으로 '자동차 대어사업'을 추가 예정. 정관에 추가되는 사업목적은 현대차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고, 현대차의 사업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현대차	2026-03-26	정관변경	2-2. 집중투표제 배제 문구 삭제	기타	98,330	0.05	98,330	-	-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상실될 조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회사의 내부 규범과 상위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찬성
유가증권	현대차	2026-03-26	정관변경	2-3.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기타	98,330	0.05	98,330	-	-	-	개정 상법의 강행 적 방향성과 정합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주권 보호 및 이사회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현대차	2026-03-26	정관변경	2-4.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확대	기타	98,330	0.05	98,330	-	-	-	분리선임 대상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이사회 내 통제감독 기능을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예상됨에 찬성
유가증권	현대차	2026-03-26	정관변경	2-5.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신설	기타	98,330	0.05	98,330	-	-	-	2025.07.22. 공포된 개정 상법에 따라 2027.01.01.부터 도입 시행되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비하여,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의 법적 근거를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현대차	2026-03-26	정관변경	2-6. 조문 정비	기타	98,330	0.05	-	98,330	-	-	개정 안은 선임 주체와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사회에서 정한다'는 포괄적 문언만을 남겨, 이사회 의장 선출의 시기·방식·임기 등 핵심 절차적 요건을 이사회의 재량에 일임하는 구조로 전환. 이는 주주 관점에서의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이사회 의장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존재. 특히 현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시, 선출 절차에 관한 정관상 명시적 기준이 약화될 경우 경영진 견제 기능을 수행해야 할 이사회 의장의 독립성에 관한 우려가 한 층 커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

유가증권	현대차	2026-03-26	정관변경	2-7.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기타	98,330	0.05	98,330	-	-	-	사외이사를 단순한 외부 인사가 아닌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 제정의함으로써 그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현대차	2026-03-26	정관변경	2-8. 부칙 (2006.03.26)	기타	98,330	0.05	98,330	-	-	-	정관 효력 개시일을 둘러싼 해석상 다름을 예방하고, 변경된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혼선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 찬성
유가증권	현대차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사외이사 최윤희 선임의 건	기타	98,330	0.05	98,330	-	-	-	후보자(최윤희)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현대자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1. 사내이사 무노스 바르셀로 호세 안토니오 선임의 건	기타	98,330	0.05	98,330	-	-	-	후보자(무노스 바르셀로 호세 안토니오)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잔성
유가증권	현대자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2. 사내이사 이승조 선임의 건	기타	98,330	0.05	98,330	-	-	-	후보자(이승조)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잔성
유가증권	현대자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3. 사내이사 최영일 선임의 건	기타	98,330	0.05	98,330	-	-	-	후보자(최영일)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잔성

유가증권	현대차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장승화 선임의 건	기타	98,330	0.05	98,330	-	-	-	후보자(장승화)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칭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현대차	2026-03-26	임원 보수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98,330	0.05	98,330	-	-	-	<p>현대차는 이사회 규모를 총 12명(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7명)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이사 보수한도를 전기 237억 원에서 차기 284억 원으로 조정.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전기 32.0억 원에서 당기 45.3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당기 실지급액 대비 차기 보수한도 비율은 1.2배 수준 기록.</p> <p>한편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전기 14조 2,396억 원에서 당기 11조 4,679억 원으로 감소하여 경영성과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경영성과 약화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이 증가한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당기 실지급액 대비 차기 보수한도 비율이 1.2배로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책정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또한 현대차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를 통해 성과보수 산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주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안건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p>
유가증권	현대차	2026-03-26	자본 구조	6.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기타	98,330	0.05	-	98,330	-	-	<p>현대차는 26년 3월 4일 기준 보통주 자기주식 2,006,508주/ 우선주 501,923주/ 2우선주 706,883주 / 3우선주 5,526주를 보유 중. 이 중 보통주 최대 1,100,884주를 2027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까지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할 계획. 다만, 나머지 잔여 주식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자의적 처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p>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결산 및 배당	1. 제25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20,246	0.03	20,246	-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호 의안에 찬성함.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임. 2025년 배당성향은 -7.8%이나, 지배주주순손실 상황에서도 배당을 실행(주당 2,000원)하였으며, 5년 평균 배당성향 46.2%로 업종 평균(21.7%)을 상회함.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기-5,632억원에서 당기 11,809억원으로 흑자 전환하였으며,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어 찬성함.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정관변경	2-1. (이사회안)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기타	20,246	0.03	20,246	-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제2-1호 의안에 찬성함. - 2026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제542조의7 제3항)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됨. 기존 정관 제20조 4항(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선제적으로 삭제함으로써 강행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영주권의 희박 다름 등 운영 리스크를 방지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함.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정관변경	2-2. (이사회안)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의 건	기타	20,246	0.03	20,246	-	-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의 건 제2-2호 의안에 찬성함. -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원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비하여 정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제14조의4 신설), 의결권 대리행사 시 전자문서 제출을 허용하는 내용(제17조 개정)으로 주주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정관변경	2-3. (이사회안)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의 건	기타	20,246	0.03	20,246	-	-	-	<p>독립이사로 명칭 변경의 건 제2-3호 의안에 찬성함.</p> <p>개정 상법(2025.7.22 공포)에 따라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제20조, 제22조, 제24조의1, 제29조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사회와 독립성과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p>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정관변경	2-4. (이사회안)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의 건	기타	20,246	0.03	20,246	-	-	-	<p>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의 건 제2-4호 의안에 찬성함.</p> <p>개정 상법(2026.9.10 시행)을 반영하여 분리선임 방식으로 선임해야 할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제29조 제3항 개정)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이사회 내 통제 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취지에 부합하여 찬성함.</p>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정관변경	2-5. (이사회안)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강화의 건	기타	20,246	0.03	20,246	-	-	-	<p>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강화의 건 제2-5호 의안에 찬성함.</p> <p>개정 상법(2026.7.23 시행)에 따라 감사위원 선·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주식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관에 반영하는 것으로(제29조 제4항 개정),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실질적 감독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p>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정관변경	2-6. (이사회안) 정관 정비의 건	기타	20,246	0.03	20,246	-	-	-	<p>정관 정비의 건 제2-6호 의안에 찬성함.</p> <p>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조문 신설로 기존 조문 번호 체계가 변경되는 것에 맞추어 관련 조항(제8조의1~2, 제10조의1~5, 제12조의1, 제14조의1~2, 제15조의1, 제29조의1~2, 제35조의1)의 번호를 순차 정비하는 것으로, 주주가치 침해 우려가 없어 찬성함.</p>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정관변경	2-7. (주주제안) 권고적 주주제안의 도입의 건	기타	20,246	0.03	-	20,246	-	-	<p>권고적 주주제안의 도입의 건 제2-7호 의안에 반대함.</p> <p>지배구조·지분배분·임원보상·주주환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주 권여 실질화라는 제안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p> <p>다만, 권고적 주주제안은 현행 상법상 명문의 근거 없이 정관만으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법적 허용성에 관한 해석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권고적 결의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사안을 경영진이 사실상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이사회 의 결의 판단 재량이 실질적으로 제약될 수 있으며, 손해 발생 시 책임 귀속도 현행 법령 하에서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제도적 법적 기반과 운영상 통제장치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반대함.</p>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정관변경	2-8. (주주제안) 선임독립이사 선임 ※ 주주제안자는 불리서캐피탈마스터펀드리미티드 외 1인임	기타	20,246	0.03	-	20,246	-	-	<p>선임독립이사 선임의 건 제2-8호 의안에 반대함.</p> <p>독립이사 중 1인을 선임독립이사로 지정하여 독립이사 의견 수렴이사회 운영 협의 주주와 경영진 간 소통 지원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사회 감독·견제 기능 강화 및 주주 권의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제안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함.</p> <p>다만, LG화학은 2026년 2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독립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바 있으며, 별도의 독립이사회도 운영되고 있어 제안 주주가 제기한 이사회 독립성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사회 의 임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권고하는 본 안건은 현행 상법 체계상 절차적 적법성과 법적 실효성 측면에서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반대함.</p>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기타	<p>※ 제 3호 의안은 제2-7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동 폐기됨</p> <p>※ 주주제안자는 벨리서캐피탈마스터펀드리미트드 외 1인임</p> <p>기업가치 제고계획에 NAV 할인율을 주요 재무지표로 공개하는 내용의 건</p>	기타	20,246	0.03	-	20,246	-	-	<p>기업가치 제고계획에 NAV 할인율을 주요 재무지표로 공개하는 내용의 건 제3-1호 의안에 반대함.</p> <p>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NAV 할인율을 주요 재무지표로 포함하고 매 분기마다 선정·공개하도록 권고하는 안건으로, 시장과의 정합성 및 경영진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음.</p> <p>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방식은 이사회의 업무집행 영역에 속하는 사항임. 현행 상법상 주주제안권은 주주총회 목적사항이 될 수 있는 안건을 전제로 하며,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권고하는 본 안건은 현행 상법 체계상 절차적 적법성과 법적 실효성이 모두 불명확함. 현행법상 권한 배분 구조와의 정합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반대함.</p>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자본 구조	<p>3-2. 기존 경영진 보상 계획에 주식연계보상을 도입하고 NAV 할인율 및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추가적인 핵심성과지표(KPI)로 연계하는 안에 대한 보상위원회 검토의 건</p>	기타	20,246	0.03	-	20,246	-	-	<p>기존 경영진 보상 계획에 주식연계보상을 도입하고 NAV 할인율 및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추가적인 핵심성과지표(KPI)로 연계하는 안에 대한 보상위원회 검토의 건 제3-2호 의안에 반대함.</p> <p>경영진 보상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주식연계보상을 도입하고, NAV 할인율 및 자기자본이익률(ROE)을 KPI로 반영하는 주주 친화적 보상체계 수립을 보상위원회에 검토 요청하는 안으로, 제안 취지에는 일정 부분 수긍할 여지가 있음.</p> <p>그러나 임원 보상 계획의 구체적 설계는 이사회 고유의 업무집행 영역에 속하는 사항임.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권고하는 본 안건은 현행 상법 체계상 절차적 적법성과 법적 실효성이 모두 불명확하므로 반대함.</p>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자본 구조	<p>3-3.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유동화 규모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추가 자금을 활용하여 자기 주식 매입 및 소각을 실행하는 내용의 주주환원 정책 보강의 건</p>	기타	20,246	0.03	-	20,246	-	-	<p>LG에너지솔루션 지분 유동화 규모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추가 자금을 활용하여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을 실행하는 내용의 주주 환원 정책 보강의 건 제3-3호 의안에 반대함.</p> <p>LG에너지솔루션 보유 지분을 기존 발표 수준인 70% 미만으로 낮추고, 확보된 추가 자금으로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을 진행하여 주주환원 정책을 보강하도록 권고하는 안으로,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이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는 공감함.</p> <p>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의 유동화 규모 결정은 이사회의 업무집행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임.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권고하는 본 안건은 현행 상법 체계상 절차적 적법성과 법적 실효성이 모두 불명확하므로 반대함.</p>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사내이사 김동준 선임의 건	기타	20,246	0.03	20,246	-	-	-	<p>사내이사 김동준 선임의 건 제4호 의안에 찬성함.</p> <p>후보자(김동준)는 LG화학 내 반도체소재-전자소재 사업부문에서 장기간 실무 경력을 축적한 내부 전문가로서, 현재CEO 겸 겸 단소재사업본부장(사장)으로 재직 중인, 과다 겸임 기업가지 훼손·법형 위반 징계 등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전경훈) ※ 제 5호 의안은 제2-4호 의안 부결 시 자동 폐기됨	기타	20,246	0.03	20,246	-	-	-	<p>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전경훈 선임의 건 제5호 의안에 찬성함.</p> <p>후보자(전경훈)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법률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전 임기(23~25년) 이사회 출석을 100%(27회/27회)를 유지함. 과다 겸임 기업가지 훼손·법형 위반 징계 등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임원 보수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20,246	0.03	20,246	-	-	-	<p>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에 찬성함.</p> <p>전체 보수한도를 당기와 동일한 70억원으로 유지하였음. 경영성과(영업이익)가 전기-5,632억원에서 당기 11,809억원으로 흑자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은 오히려 11.0억원에서 9.4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실지금액 대비 보수한도는 2.4배(3.3배 이하 기준 충족)로 과다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되어 찬성함.</p> <p>【보수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보수한도: 70억원 (전기 대비 동일 유지) - 이사회 규모: 7명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유지) - 비사외이사 1인당 실지금액: 전기 11.0억원 → 당기 9.4억원 - 비사외이사 1인당 보수한도: 22.7억원 / 실지금액 대비 2.4배 - 영업이익: 전기 -5,632억원 → 당기 11,809억원 (흑자전환) - TSR: 33.7% (전기 -49.9%)

Ⓜ 일임자산

시장구분	의결권 대상법인	주주총회 일시	의안 유형	의안명	관계	보유 의결권 주식수 등		의결권행사주식수(%) 및 내용				행사 및 불행사 사유
						보유주식수 (주)	지분비율 (%)	찬성 주식수	반대 주식수	불행사 주식수	중립행사 주식수	
유가증권	한국전력	2025-05-2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1. 상임이사 (정치교) 선임의 건 후보에 관한 사항 의안 : 제1호 후보자 : 정치교 임기 : 2년 주인 직업 : 배전계획처 전문위원 생년월일 : '65.11.15 주천인 : 사장	기타	11,971	0.00	11,971	-	-	-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등 지장 상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찬성
유가증권	현대모비스	2025-08-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1.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도형)	기타	1,646	0.00	1,646	-	-	-	동 후보는 사내이사로서 갖추어야 할 책임성, 윤리성, 충실한 의무수행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유로서 회사가지의 훼손이나 주주 권익의 침해를 특별히 우려할 만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함

유가증권	현대건설	2025-08-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1. 사내이사 이형석 선임의 건	기타	4,467	0.00	4,467	-	-	-	동 후보는 사내이사로서 갖추어야 할 책임성, 윤리성, 충실한 의무수행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유로서 회사가지의 훼손이나 주주 권익의 침해를 특별히 우려할 만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함
유가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2025-10-17	조직변경	1. 분할계회서 승인의 건 (분할존속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 분할신설회사: 삼성에피소플딩스 주식회사 분할비용: 존속회사: 0.6503913 / 신설회사: 0.3496087)	기타	683	0.00	683	-	-	-	분할존속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분할신설회사: 삼성에피소플딩스 주식회사 분할비용 존속회사: 0.6503913 신설회사: 0.3496087 분할대상사업부문 분리를 통해 영위 중인 사업 간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근원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역량을 집중하여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증대 해당 기업의 분할계회서 승인의 건은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의 훼손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건에 대해 찬성 의견
유가증권	HD현대미포	2025-10-23	조직변경	1.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 (합병비용(합병존속회사, HD현대중공업): 1 합병비용(합병소멸회사, HD현대미포): 0.4059146)	기타	442	0.00	442	-	-	-	합병비용(합병존속회사, HD현대중공업): 1 합병비용(합병소멸회사, HD현대미포): 0.4059146 글로벌 합병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 재편으로 판단. 본 합병은 단순한 기업규모 확대를 넘어, 국가 조선, 방산 산업의 전략적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 가능. 금번 합병을 통해 시장 대응 속도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경쟁력 있는 아드 개발과 수익성 제고를 동시에 실현하는 포괄적 사업 운영 체계 구축 전망 해당 기업의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은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의 훼손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건에 대해 찬성 의견

유가증권	HD현대중공업	2025-10-23	조직변경	1.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 (정관 변경 포함) (합병비율(합병준속회사, HD현대중공업): 1 합병비율(합병소멸회사, HD현대미포): 0.4059146)	기타	1,236	0.00	1,236	-	-	-	합병비율(합병준속회사, HD현대중공업): 1 합병비율(합병소멸회사, HD현대미포): 0.4059146 글로벌 합병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 재편으로 판단. 본 합병은 단순한 기업규모 확대를 넘어, 국가 조인, 방산 산업의 전략적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 가능. 글로벌 합병을 통해 시장 대응 속도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경쟁력 있는 애드 개별과 수익성 제고를 동시에 실현하는 포괄적 사업 운영 체계 구축 전망 해당 기업의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은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의 훼손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건에 대해 찬성 의견
유가증권	삼성생명	2025-11-2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1. 사외이사 박보영 선임의 건	기타	4,880	0.00	4,880	-	-	-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 가치 훼손 및 법원(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결격 사유 없음에 따라 찬성 2025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퇴직으로 취임심사 대상자로 외부평가기관 의뢰를 통한 25년 10월 2일 대법원 공적자율리위원회로부터 취임 승인 소명 확인하였음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2. 감사위원회 위원 박보영 선임의 건	기타	4,880	0.00	4,880	-	-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 가치 훼손 및 법원(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결격 사유 없음에 따라 찬성 2025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퇴직으로 취임심사 대상자로 외부평가기관 의뢰를 통한 25년 10월 2일 대법원 공적자율리위원회로부터 취임 승인 소명 확인하였음

유가증권	현대모비스	2026-03-17	결산 및 배당	1. 제4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승인의 건 (2025년 1월 1일~ 12월 31일)	기타	1,496	0.00	1,496	-	-	-	본 안전과 관련 기업가치 및 주주권의 훼손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발견하지 못 하여 찬성
유가증권	현대모비스	2026-03-17	결산 및 배당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결산 배당금(1주당): 보통주 5,000원, 우선주- 5,050원 (예정) ※ 기지급한 분기배당 (1주당 1,500원) 포함하여 연간 보통주 6,500원, 우선주 6,550원 지급	기타	1,496	0.00	1,496	-	-	-	1) 분석기업의 2025년 주당 현금배당금(DPS, 6,500원, 보통주)이 DPS 밴드의 적정 수준에 위치하는 점2) 2024년 중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에는 이행현황을 추가로 공시한 기준에 근거하여 배당했다는 점3)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 수시공시를 통한 3개년 주주환원정책 공시 등 주주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소배당 등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는 발견할 수 없음
유가증권	현대모비스	2026-03-17	정관변경	3-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의 건	기타	1,496	0.00	1,496	-	-	-	이사의 직무수행 기준을 "회사 및 주주"로 명확히 하고, 나아가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의무를 구체화하는 취지와 판단. 이는 개정 상법의 강행적 방향성과 정합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주권 보호 및 이사회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인식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현대모비스	2026-03-17	정관변경	3-2. 사외이사 명칭 변경의 건	기타	1,496	0.00	1,496	-	-	-	예상 업건 변경을 통해 사외이사를 단순한 외부 인사가 아닌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 재정 의함으로써 그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현대모비스	2026-03-17	정관변경	3-3.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의 건	기타	1,496	0.00	1,496	-	-	-	감사위원회의 핵심 구성원(독립이사)을 선임하는 단계에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상법의 취지를 구현하여,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영향력이 감사위원 구성에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을 완화하고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현대모비스	2026-03-17	정관변경	3-4.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기타	1,496	0.00	1,496	-	-	-	개정법이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설계된 만큼,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 선제적으로 정관을 정비하는 것은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결의 효력 다툼 등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매우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현대모비스	2026-03-17	정관변경	3-5.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변경의 건	기타	1,496	0.00	1,496	-	-	-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는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주 권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므로 찬성
유가증권	현대모비스	2026-03-17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1. 사외이사 선임의 건 (James Kim)	기타	1,496	0.00	1,496	-	-	-	후보자(James Kim)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현대모비스	2026-03-17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2.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정의선)	기타	1,496	0.00	1,496	-	-	-	후보자(정의선)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현대모비스	2026-03-17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3. 사외이사 선임의 건 (박현주)	기타	1,496	0.00	1,496	-	-	후보자는 현재 대한항공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나, 금년 3월 21일 임기가 만료될 예정. 2020년부터 6년간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하여 상법 시행령상 연임이 불가능함을 감안,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현대모비스	2026-03-17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4. 사내이사 선임의 건 (성낙섭)	기타	1,496	0.00	1,496	-	-	후보자(성낙섭)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현대모비스	2026-03-17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5-1.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James Kim) 권고의견 근거규정	기타	1,496	0.00	1,496	-	-	후보자(James Kim)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현대모비스	2026-03-17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5-2.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박현주)	기타	1,496	0.00	1,496	-	-	후보자는 현재 대한항공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나, 금년 3월 21일 임기가 만료될 예정. 후보자(박현주)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서의 자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현대모비스	2026-03-17	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박현주)	기타	1,496	0.00	1,496	-	-	후보자(박현주)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자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현대모비스	2026-03-17	임원 보수	7.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1,496	0.00	1,496	-	-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전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찬성. 이사회의 규모를 9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당기 120억 원에서 자기 120억 원으로 유지 시켰고,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은 전기 179억 원에서 당기 14.6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 대비 보수한도는 2.0배 기록. 25년 분석기업의 경영성과가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기업 가치의 훼손 우려가 없다고 판단

유가증권	현대모비스	2026-03-17	자본 구조	8.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	기타	1,496	0.00	-	1,496	-	-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약 32%에 해당하는 500,000주를 내년도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잔여 자기주식의 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 1) 처분 후 잔여 보유 자기주식이 전체 발행주식총수 대비 1.2% 수준이고 2) 분석기업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연속 자기주식을 소각해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잔여 자기주식에 대한 구체적인 소각 계획을 주주들에게 제시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이번 상법 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
유가증권	삼성SDI	2026-03-18	결산 및 배당	1. 제56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734	0.00	734	-	-	-	당사 의결권 행사 관련 자문업체인 한국ESG연구소는, 1) 2025년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장률 각각 6.7%, 5.2%를 기록한 점, 3) 2025년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점, 4)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영업현금흐름을 크게 상회하는 설비투자 등 단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배당 수준이 과도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본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 권고. 배당정책으로 인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의 훼손 우려는 발견되지 않음
유가증권	삼성SDI	2026-03-18	정관변경	2-1.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기타	734	0.00	734	-	-	-	분석기업의 정관 제22조, 제23조의 2 변경안은 개정 상법(제542조의7 제3항)이 2026년 9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임. 주요 골자는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던 기존 정관 조항(제22조 제6항, 제23조의 2 제2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 금번 개정 시행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상실될 조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회사의 내부 규범과 상위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됨. 개정법이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설계된 만큼,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 선제적으로 정관을 정비하는 것은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결의 효력 다툼 등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조치로 판단됨

유가증권	삼성SDI	2026-03-18	정관변경	2-2-1.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16조, 제19조)	기타	734	0.00	734	-	-	<p>분석기업의 정관 제16조 변경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도입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따른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비하여,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 법적 근거를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는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주 권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한편 분석기업의 정관 제19조 변경안은 개정 상법 제268조 제2항의 취지를 반영해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제출하는 증명 문서의 범위에 기존의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정관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의결권 행사 제출 증명 문서의 범위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은 의결권 행사 과정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p>
유가증권	삼성SDI	2026-03-18	정관변경	2-2-2. 독립이사 명칭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22조, 제23조, 제26조의2, 제26조의5)	기타	734	0.00	734	-	-	<p>분석기업의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 2, 제26조의 5 변경안은 개정 상법(2025년 7월 22일 공포)에 따라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하는 건임. 이는 사외이사를 단순한 외부 인사가 아닌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 재정의함으로써 그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정관 제3조 변경안은 가결 시 상기 개정 조문들이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도록 단서를 두어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임. 이는 정관 효력 개시일을 둘러싼 해석상 다툼을 예방하고, 변경된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혼선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됨</p>
유가증권	삼성SDI	2026-03-18	정관변경	2-2-3.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인원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26조의 4)	기타	734	0.00	734	-	-	<p>분리선출 감사위원회 위원을 2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p>

유가증권	삼성SDI	2026-03-18	정관변경	2-2-4. 주식의 소각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10조의 5)	기타	734	0.00	734	-	-	-	현행 법제와 실무 변화에 부합하는 정관 변경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유가증권	삼성SDI	2026-03-1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사외이사 윤종원 선임의 건	기타	734	0.00	734	-	-	-	당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유가증권	삼성SDI	2026-03-1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 사내이사 오재균 선임의 건	기타	734	0.00	734	-	-	-	당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유가증권	삼성SDI	2026-03-1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마경 선임의 건	기타	734	0.00	734	-	-	-	당 후보자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칭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유가증권	삼성SDI	2026-03-1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2.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유승원 선임의 건	기타	734	0.00	734	-	-	-	당 후보자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칭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유가증권	삼성SDI	2026-03-18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감사위원회 위원 윤종원 선임의 건	기타	734	0.00	734	-	-	-	당 후보자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법령 위반(징계) 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유가증권	삼성SDI	2026-03-18	임원 보수	6. 이사 보수제도 승인의 건	기타	734	0.00	734	-	-	<p>분석기업은 이사회 규모를 5인(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으로 축소하고 이사 보수한도를 전기 100억 원에서 당기 70억 원으로 감액함.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FY24 16.9억 원에서 FY25 15.5억 원으로 감소(-8.3%)하였으며, FY25 실지급액 대비 보수한도 배율은 2.2배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성과는 FY24 영업이익 2,734억 원에서 FY25 -1조 7,224억 원로 하락함.</p> <p>즉, 분석기업의 경영성과가 대폭 악화된 것에 비해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 감소 폭이 제한적임. 다만, FY23 호실적이 당기 장기성과급에 반영된 점과 사업보고서상 동기임원 보수 지급 기준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조정폭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됨. 보수 한도 역시 실지급액 대비 적정 수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p>
유가증권	삼성전기	2026-03-18	결산 및 배당	1. 제53기(2025.1.1 ~ 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1,168	0.00	1,168	-	-	<p>당사의 재무제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 현행 배당 수준은 분석기업의 실질적인 재무 여건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본 안건과 관련 기업가치 및 주주권의 훼손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찬성</p>
유가증권	삼성전기	2026-03-18	정관변경	2-1.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기타	1,168	0.00	1,168	-	-	<p>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던 기존 정관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안건. 기존 배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회사 내부 규범과 상위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게됨. 이는 주주와 회사 모두에게 운영 리스크를 축소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p>

유가증권	삼성전기	2026-03-18	정관변경	2-2. 그 외의 정관 변경의 건	기타	1,168	0.00	1,168	-	-	-	정관 제 26조 신설안은 분리선출 감사위원 위원을 2인으로 변경하는 안건. 이는 감사위원 독립성 확보를 통한 경영투명성 강화에 긍정적이라 판단되어 찬성. 그 외에 정관 제 16조, 20조는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에 찬성함.
유가증권	삼성전기	2026-03-1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최종구)	기타	1,168	0.00	1,168	-	-	-	후보자(최종구)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유가증권	삼성전기	2026-03-1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미영)	기타	1,168	0.00	1,168	-	-	-	후보자(김미영)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유가증권	삼성전기	2026-03-1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종훈)	기타	1,168	0.00	1,168	-	-	-	후보자(이종훈)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유가증권	삼성전기	2026-03-18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6.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종훈)	기타	1,168	0.00	1,168	-	-	-	후보자(이종훈)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유가증권	삼성전기	2026-03-18	임원 보수	7.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1,168	0.00	1,168	-	-	-	당사는 이사회 규정은 유지하되 보수한도를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림. 영업이익 증가분 감안 시 실질금액 증가 수준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 금번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 권고.

유가증권	삼성전자	2026-03-18	정관변경	1-1.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제24조, 제26조)	기타	85,670	0.00	85,670	-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상실될 조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안건으로 찬성
유가증권	삼성전자	2026-03-18	정관변경	1-2. 개정상법반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관련 조문 정비 (제27조의3)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 변경 관련 조문 정비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5)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상향 관련 조문 정비 (제28조의4) 전자 주주총회 도입 관련 조문 정비 (제18조)	기타	85,670	0.00	85,670	-	-	개정 상법의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안건으로 찬성
유가증권	삼성전자	2026-03-18	정관변경	1-3. 이사의 임기 조문 정비 (제25조)	기타	85,670	0.00	-	85,670	-	상법에서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를 3년으로 제한할 뿐이나, 회사의 정관에서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와 같이 범위로 규정할 경우, 임기 불확정 이사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사실상 자의적 해임이 가능해질 위험이 있음. 이에 따라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이사회 의사결정 기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반대

유가증권	삼성전자	2026-03-18	정관변경	1.4. 주식 소각 조문 정비 (제8조의3)	기타	85,670	0.00	85,670	-	-	-	이익소각을 위해 두었던 정관상 근거 조항(제8조의 3)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불필요해진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판단. 현행 법제와 실무 변화에 부합하는 정관 변경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주가지 훼손 우려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
유가증권	삼성전자	2026-03-18	결산 및 배당	2. 제57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85,670	0.00	85,670	-	-	-	2025년 배당성향은 22.1%로 업종 평균(24년 기준 14.6%)을 상회하며,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향은 각각 29.2%, 23.7%를 기록 중. 이를 감안할 때, 현행 배당 규모가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소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 아울러 영업이익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주이, 최근 설비투자 규모, 현재 부채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배당 수준이 과도하지 않음. 이에 따라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는 발견되지 않아 찬성
유가증권	삼성전자	2026-03-1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사내이사 김용관 선임의 건	기타	85,670	0.00	85,670	-	-	-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점상 결격사유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

유가증권	삼성전자	2026-03-1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허은영 선임의 건	기타	85,670	0.00	85,670	-	-	-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상 결격사유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
유가증권	삼성전자	2026-03-18	임원 보수	5.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기타	85,670	0.00	85,670	-	-	-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전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찬성
유가증권	삼성전자	2026-03-18	자본 구조	6.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기타	85,670	0.00	85,670	-	-	-	2026년 2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상법 제341조의4 제2항(공표·시행 전)에서 규정한 자기주식 소각의 예외 사유인 임직원 보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계획에 대한 승인을 구하는 것으로, 당사는 보유 또는 처분 대상 자기주식의 종류, 규모, 보유기간 및 처분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기주식 활용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의지를 보임. 특히 보유 개시시점과 예정된 처분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 주주가지 훼손 및 자의적 처분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찬성

유가증권	삼성생명	2026-03-19	결산 및 배당	1. 제70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의의 건 이익배당 예정내용 (1주당 배당금: 보통주 5,300원)	기타	2,570	0.00	2,570	-	-	<p>재무제표 승인 및 배당 수준과 관련하여 기업가치 및 주주권의 훼손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잔성함.</p> <p>2025년 배당성향은 41.3%로 업종 평균(11.1%)을 크게 상회하며,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향은 각각 38.4%, 37.4%를 기록함. 현행 배당 규모가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영업이익/영업활동현금흐름 주미, 설비투자 규모, 부채비율 등 제반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배당 수준은 실질적인 재무 여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p> <p>【배당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결산배당: 주당 5,300원 (전기 4,500원 대비 +800원) - 2025년 총 배당금: 9,517억원 (전기 8,081억원 대비 +17.8%) - 5년 평균 배당성향: 37.4% / 업종 평균(11.1%) 대비 현저히 상회 - 영업이익: 2025년 2조 5,805억원 (전기 2조 4,998억원, +3.2%) - 영업이익률: 2025년 6.9% (전기 7.4%) - 부채비율: 2025년 455.7% (전기 759.4%, 대폭 개선) - 설비투자/영업현금흐름: 3.2% (전기 2.3%), 투자 부담 미미한 수준
유가증권	삼성생명	2026-03-19	정관변경	2-1. 집중투표제 배제조항 삭제 및 부칙 신설의 건	기타	2,570	0.00	2,570	-	-	<p>정관 변경 제2-1호 의안에 대하여 잔성함.</p> <p>정관 제22조 제4항 및 제23조의2 제3항 변경안은 2026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제542조의7 제3항)에 따라,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던 기존 정관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건임. 자선종목 2조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원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상실될 조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회사의 내부 규범과 상위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내용임.</p> <p>기존 배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개정법 시행 이후 제도 적용 여부가 둘러싸고 주주와 회사 모두에게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개정법이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설계된 만큼, 제도 본격 시행 전 선제적으로 정관을 정비하는 것은 주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합리적인 조치로 검토됨.</p> <p>【정관 부칙 변경】</p> <p>가결 시 상법 시행일(2026.09.10.)을 기점으로 시행되도록 단서를 두어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해석상 다툼 예방 및 운영상 혼선 방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됨.</p>
유가증권	삼성생명	2026-03-19	정관변경	2-2. 상법개정에 따른 표준 정관 반영 및 부칙 신설의 건	기타	2,570	0.00	2,570	-	-	<p>정관 변경 제2-2호 의안에 대하여 잔성함.</p> <p>① 전자주주총회 개최 방식 추가 (제15조의2 제2항 신설) 2025.07.22. 공포된 개정 상법에 따라 2027.01.01.부터 도입 시행되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비하여,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 법적 근거를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임.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주주 권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됨.</p> <p>② 대리권 증명방법 변경 (제19조) 개정 상법(2027.01.01. 시행) 제368조 제2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 행사 시 제출하는 증명 문서의 범위에 기존 서면 외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정관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의결권 행사의 부담 완화 및 주주 참여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p> <p>③ 독립이사 명칭변경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34조 등) 개정 상법(2025.07.22. 공포)에 따라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건임. 사외이사를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 재정의함으로써 이사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검토됨.</p> <p>④ 감사위원 분리선출 안원 변경 (제26조 제7항) 반리선출 감사위원 위임을 기존 1명 이상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건임. 감사위원 독립성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됨.</p> <p>⑤ 정관 부칙 신설 독립이사 관련 조항: 2026.07.23. 시행 / 소집지 개최방식 및 대리행사 관련 조항(제15조의2, 제19조): 2027.01.01. 시행. 제도별 시행일을 명시하여 효력 개시일을 둘러싼 해석상 다툼을 예방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인정됨.</p>

유가증권	삼성생명	2026-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임채민 선임의 건 (임기3년)	기타	2,570	0.00	2,570	-	-	-	<p>주보자(임채민)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명 상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주보자 개요】 임기: 3년 (재선임) / 겸임: 2개사 (삼성생명, 장신INC) 주요 경력: 법무법인 광장 고문(2015.05~현재), 보건복지부 장관(2011.09~2013.03), 국무총리실 실장(2010.08~2011.08), 지식경제부 제1차관(2008.03~2010.03) 등기임원 이력: 대한항공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2018.03~2024.03), 삼성생명 사외이사(2024.03~현재) 이사회 출석률: 2024년 100.0%(11/11회), 2025년 100.0%(16/16회), 직전임기(2년) 평균 100.0%</p> <p>【독립성 관련 검토 사항】 주보자는 본석기업(삼성생명)의 주요주주(10.44%)이자 삼성물산(최대주주)의 최대주주(19.76%)인 이재용 부회장의 관련 사건 초기 변호인단에 참여하였던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으로 2015년부터 재직 중임. 다만, 주보자가 해당 사건의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사건을 수임하였던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p> <p>또한 해당 사건의 변호인은 2021년 8월 법무법인 광장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로 변경되어 첫 공판(2021.10.12.) 이전에 사건 관련 이해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됨. 이상의 사정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훼손할 정도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p>
유가증권	삼성생명	2026-03-19	임원 보수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2,570	0.00	2,570	-	-	-	<p>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전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찬성함.</p> <p>【보수 현황】 자기 보수한도: 120억원 (전기 대비 동일 유지) 이사회 규모: 전기 7명 → 당기 6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으로 축소 사내이사 1인당 실적금액: 전기 12.0억원 → 당기 15.4억원 (+28.7%) 비사외이사 1인당 보수한도: 59.0억원 / 실적금액 대비 3.8배 영업이익, 전기 2조 4,998억원 → 당기 2조 5,805억원 (+3.2%) TSR: 71.0% (전기 43.5%)</p> <p>【보수한도 초과 관련 회사 소명 사항 (R팀 확인 2026.02.23.)】 ① 해당 보수한도에는 사내이사 전원이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를 가정한 퇴직금 지급 가능액이 포함되어 있음 ② 2026년은 장기성과 인센티브가 중복 지급되는 연도에 해당함. 장기성과금은 3년간 성과를 평가한 후 4년에 걸쳐 이연 지급하는 구조로, 2026년은 이전 성과평가에 따른 이연지급 마지막 연도분과 이번 성과평가에 따른 1차연도 성과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시점임 ③ 보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련 보수정책을 수립·공시하고 이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p>
유가증권	한화오션	2026-03-19	결산 및 배당	1. 제26기(25.01.01~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2,660	0.00	2,660	-	-	-	<p>본 안전과 관련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여 찬성</p>

유가증권	한화오션	2026-03-19	정관변경	2-1. 목적사항 추가의 건	기타	2,660	0.00	2,660	-	-	정관에 추가되는 75) 신문업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 76)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77)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판매사업, 78)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판매사업, 79)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 지분 및 권리 등 양수도업, 80)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컨설팅 및 용역업 등의 사업목적은 한화오션 본업과 연관성이 있고, 분석기업의 사업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분석기업의 수익성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반하여 찬성
유가증권	한화오션	2026-03-19	정관변경	2-2. 개최방식 추가의 건 (전자주주총회 반영)	기타	2,660	0.00	2,660	-	-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는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주 권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한화오션	2026-03-19	정관변경	2-3. 의결권 대리행사 추가의 건 (대리권 증명방법 추가)	기타	2,660	0.00	2,660	-	-	제368조 제2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제출하는 증명 문서의 범위에 기존의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정관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이는 의결권 행사 과정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한화오션	2026-03-19	정관변경	2-4. 감사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분리선임 인원 변경 및 의결권 제한)	기타	2,660	0.00	2,660	-	-	-	<p>해당 안건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핵심 구성원(독립이사)을 선임하는 단계에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상법의 취지를 구현하여,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영향력이 감사위원 구성에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을 완화하고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특히 분리선임 대상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이사회 내 통제·감독 기능을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 기대. 따라서 본 변경안은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되므로 찬성</p>
유가증권	한화오션	2026-03-19	정관변경	2-5. 사외이사 명칭 변경의 건 (사외이사 → 독립이사)	기타	2,660	0.00	2,660	-	-	-	<p>해당 안건을 통해 사외이사를 단순한 외부 인사가 아닌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 재정의함으로써 그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평가되므로 찬성</p>
유가증권	한화오션	2026-03-19	정관변경	2-6. 이사의 임기 변경의 건 (2년 → 3년)	기타	2,660	0.00	2,660	-	-	-	<p>상법은 이사 임기의 최장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제383조 제3항) 이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짧은 임기는 이사로 하여금 짧은 연임 심사로 인해 중장기 전략의 일관된 추진과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제약줄 수 있다 판단되므로 찬성</p>

유가증권	한화오션	2026-03-19	정관변경	2-7. 부칙 변경 (시행일)	기타	2,660	0.00	2,660	-	-	-	정관 효력 개시일을 둘러싼 해석상 다름을 예방하고, 변경된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혼선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 찬성
유가증권	한화오션	2026-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사내이사 김희철 선임의 건	기타	2,660	0.00	2,660	-	-	-	후보자(김희철)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한화오션	2026-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 사외이사 김영삼 선임의 건	기타	2,660	0.00	2,660	-	-	-	후보자(김영삼)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한화오션	2026-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효진 선임의 건	기타	2,660	0.00	2,660	-	-	-	후보자(이효진)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경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정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한화오션	2026-03-19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감사위원회 위원 김영삼 선임의 건	기타	2,660	0.00	2,660	-	-	-	후보자(김영삼)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경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정 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한화오션	2026-03-19	임원 보수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2,660	0.00	2,660	-	-	-	사내이사 1인당 실질금액은 전기 7.3억 원에서 당기 9.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사내이사 1인당 실질금액 대비 보수한도는 1.8배 기록, 또한, 경영성과(전기대비 영암이믹)는 전기 2379억 원에서 당기 11676억 원으로 상승함. 한화오션의 당기 실질금액 대비 자기 보수한도는 3.3배 이하로 적정됨. 또한, 한화오션의 경영성과 개선과 함께 사내이사 1인당 실질금액이 증가함. 한화오션의 이사 보수 실질금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고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한화오션	2026-03-19	자본 구조	7. 자기 주식 보유/채분 계획 승인의 건	기타	2,660	0.00	2,660	-	-	개정 상법의 예외 허용 구조 내에서 목적, 규모 및 기간이 과도하지 않게 설정되어 있고, 주주가지 훼손 우려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찬성
유가증권	효성중공업	2026-03-19	결산 및 배당	1. 제8기 (2025.1.1 ~ 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예정액: 1주당 7,500원 (액면 기준 150%)	기타	159	0.00	159	-	-	2025년 배당성향은 13.4%로 업종평균을 소폭 하회하며,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향은 각각 6.3%, 15.1%를 기록함. 이를 감안 시, 현행 배당 규모가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이러한 재무적 맥락을 전제로, 영업이익 및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추이, 최근 설비투자 규모, 현재 부채비율 등 제반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배당 수준은 효성중공업의 실질적인 재무 여건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본 안건과 관련 기업가치 및 주주권의 훼손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여 찬성
유가증권	효성중공업	2026-03-19	정관변경	2-1. 집중투표제 배제 관련 정관 변경의 건	기타	159	0.00	159	-	-	개정법이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설계된 만큼,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 선제적으로 정관을 정비하는 것은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결의 효력 다툼 등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매우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효성중공업	2026-03-19	정관변경	2-2. 그 외의 정관 변경의 건	기타	159	0.00	159	-	-	-	최근 사업구조 간소화로 이사회 인원 축소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효성중공업	2026-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1. 사내이사 우태희 선임의 건 (임기 2년)	기타	159	0.00	159	-	-	-	후보자(우태희)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효성중공업	2026-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2. 사내이사 박남용 선임의 건 (임기 2년)	기타	159	0.00	159	-	-	-	후보자(박남용)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효성중공업	2026-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 사외이사 윤여선 선임의 건 (임기 2년)	기타	159	0.00	159	-	-	후보자(윤여선)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효성중공업	2026-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은향 선임의 건 (임기3년)	기타	159	0.00	159	-	-	후보자(이은향)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효성중공업	2026-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2.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종배 선임의 건 (임기3년)	기타	159	0.00	159	-	-	후보자(박종배)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효성중공업	2026-03-19	임원 보수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159	0.00	159	-	-	-	효성중공업의 당기 실지금액 대비 자기 보수한도는 1.7배 수준으로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은 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 개선 및 TSR 수준을 감안할 때 경영성과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LG에너지솔루션	2026-03-20	결산 및 배당	1. 제6기 재무제표승인의 건	기타	2,138	0.00	2,138	-	-	-	본 안전과 관련 기업가치 및 주주권의 훼손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여 찬성 해당기업은 최근 5년간 배당 미 실시. 2024년부터는 지배주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으로 인해, 현행 배당 규모가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음
유가증권	LG에너지솔루션	2026-03-20	정관변경	2-1.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	기타	2,138	0.00	2,138	-	-	-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기존 정관 조항(제27조 제4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상실된 조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회사 내부 규범과 상위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건. 이에 따라 본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LG에너지솔루션	2026-03-20	정관변경	2-2.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	기타	2,138	0.00	2,138	-	-	정관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안은 2025.07.22 공포된 개정 상법에 따라 2027.01.01 부터 도입 및 시행되는 현상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비하여,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 법적 근거를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 이에 따라 본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LG에너지솔루션	2026-03-20	정관변경	2-3. 사외이사 명칭 변경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	기타	2,138	0.00	2,138	-	-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건. 사외이사를 단순한 외부 인사가 아닌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 재정의함으로써 그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본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LG에너지솔루션	2026-03-20	정관변경	2-4. 분리 선출 감사위원 수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	기타	2,138	0.00	2,138	-	-	분리선출 감사위원 위원을 2인 이상으로 변경하는 건. 상법은 분리선출 감사위원 위원을 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예상하고 있음.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감사위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크고,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가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이에 따라 본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LG에너지솔루션	2026-03-20	정관변경	2-5.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	기타	2,138	0.00	2,138	-	-	-	<p>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합산 3% 풀) 강화를 정관에 반영함으로써,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p> <p>개정 사항은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특히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등 보유분을 합산하도록 규정.</p> <p>이에 따라 본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p>
유가증권	LG에너지솔루션	2026-03-20	정관변경	2-6. 배당절차 개선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	기타	2,138	0.00	2,138	-	-	-	<p>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이 안내됨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이사의 결의로 정할 수 있고, 기준일을 정한 경우 기준일의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변경하는 것.</p> <p>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배당받을 주주가 주주총회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주주가 아닌 자가 배당 관련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p> <p>이에 따라 본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p>
유가증권	LG에너지솔루션	2026-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사외이사 이명규 선임의 건	기타	2,138	0.00	2,138	-	-	-	<p>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범형(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p>

유가증권	LG에너지솔루션	2026-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진규 선임의 건	기타	2,138	0.00	2,138	-	-	-	후보자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정 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LG에너지솔루션	2026-03-20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감사위원회 위원 이명규 선임의 건	기타	2,138	0.00	2,138	-	-	-	후보자의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정 상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LG에너지솔루션	2026-03-20	임원 보수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2,138	0.00	2,138	-	-	-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은 전기 15.7억원에서 당기 7.3억원으로 감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전기 5,754억원에서 당기 1조 3,461억원으로 증가. 해당 기업은 경영성과가 크게 개선된 가운데 사내이사 실지금액은 감소하였으나, 당기 실지금액 대비 보수한도는 3.3배 이하 수준으로 나타나 보수한도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설정된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해당 안건에 찬성.

유가증권	기타	2026-03-20	결산 및 배당	1. 제82기(2025.1.1 ~ 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5,908	0.00	5,908	-	-	영업이익 및 영업활동현금 흐름의 주이, 최근 설비투자 규모, 현재 부채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배당 수준이 과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기타	2026-03-20	정관변경	2-1. 전자 주주총회 도입 관련 변경의 건	기타	5,908	0.00	5,908	-	-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는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주 권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므로 당사는 해당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기타	2026-03-20	정관변경	2-2.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기타	5,908	0.00	5,908	-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상실될 조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회사의 내부 규범과 상위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찬성

유가증권	기타	2026-03-20	정관변경	2-3. 이사 중실의무 확대 관련 변경의 건	기타	5,908	0.00	5,908	-	-	개정 상법의 강행 적 방향성과 정합적으로 이사의 중실의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주권 보호 및 이사회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기타	2026-03-20	정관변경	2-4.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의 건	기타	5,908	0.00	5,908	-	-	분리선임 대상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이사회 내 통제·감독 기능을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예상됨에 찬성
유가증권	기타	2026-03-20	정관변경	2-5. 사외이사 명칭 변경의 건	기타	5,908	0.00	5,908	-	-	사외이사를 단순한 외부 인사가 아닌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 재정 의함으로써 그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기타	2026-03-20	정관변경	2-6. 부칙 (2026.03.20)	기타	5,908	0.00	5,908	-	-	정관 효력 개 시일을 둘러싼 해석상 다툼을 예방하고, 변경된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혼선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 찬성
유가증권	기타	2026-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승준)	기타	5,908	0.00	5,908	-	-	후보자(김승준)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기타	2026-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전찬혁)	기타	5,908	0.00	5,908	-	-	후보자(전찬혁)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기타	2026-03-20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전잔액)	기타	5,908	0.00	5,908	-	-	-	후보자(전잔액)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정 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기타	2026-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신채용)	기타	5,908	0.00	5,908	-	-	-	후보자(신채용)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정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기타	2026-03-20	임원 보수	6.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기타	5,908	0.00	-	5,908	-	-	경영성과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은 크게 증가하였음. 따라서 기타의 이사 보수 실지금액이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과도하다는 판단에 반대

유가증권	기타	2026-03-20	자본 구조	7. 자기 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기타	5,908	0.00	-	5,908	-	<p>제시한 계획은 기존 보유 자기주식 1,810,273주 중 일부를 2027년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점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해당 율방의 산정방식이나 예상 범위,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는 단순히 확정 수량이 없다는 문제를 넘어, 예외적 보유의 필요성과 규모를 주주가 실질적으로 심사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p>
유가증권	삼성물산	2026-03-20	결산 및 배당	1. 제62기(2025.1.1 ~ 2025.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3,018	0.00	3,018	-	-	<p>2025년 배당성향은 18.6%로 업종 평균을 상회하며,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향은 각각 18.7%, 22.2%를 기록 중. 이를 감안할 때, 현행 배당 규모가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소극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 아울러 영업이익 및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주위, 최근 설비투자 규모, 현재 부채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배당 수준이 과도하지 않음. 이에 따라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는 발견되지 않아 찬성</p>
유가증권	삼성물산	2026-03-20	정관변경	2. 자기주식 소각의 건	기타	3,018	0.00	3,018	-	-	<p>합병 과정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발생한 자기주식을 자본시정법 상 처분 기한 내 처분을 위해 소각.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은 지짐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찬성</p>

유가증권	삼성물산	2026-03-20	정관변경	3-1.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기타	3,018	0.00	3,018	-	-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강행 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상실될 조항을 정비, 제도의 본격 시행전 선제적으로 정관을 정비하는 것은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회사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합리적 조치라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삼성물산	2026-03-20	정관변경	3-2. 그 외 정관 변경	기타	3,018	0.00	3,018	-	-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건,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의결권 제한, 분리 선임 방식으로 선임해야 할 감사위원의 수를 확대, 원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비해 법적 근거를 정관에 규정하는 등의 개정, 주주권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므로 찬성.
유가증권	삼성물산	2026-03-20	정관변경	3-3. 이사회 내 위원회 명칭 변경	기타	3,018	0.00	3,018	-	-	-	기존 ESG위원회의 명칭을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변경하는 안건, 위원회의 기능 및 감독 범위에 중대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삼성물산	2026-03-20	정관변경	3-4. 부칙	기타	3,018	0.00	3,018	-	-	-	가결 시 주주총회일로부터 시행되도록 단서를 두어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운영상 혼신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필요성 인정되어 찬성
유가증권	삼성물산	2026-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1. 사외이사 이장식 선임의 건	기타	3,018	0.00	3,018	-	-	-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참상 결격사유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
유가증권	삼성물산	2026-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2. 사내이사 송규종 선임의 건	기타	3,018	0.00	3,018	-	-	-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참상 결격사유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

유가증권	삼성물산	2026-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5-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경수 선임의 건	기타	3,018	0.00	3,018	-	-	-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상 결격사유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
유가증권	삼성물산	2026-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5-2.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민영 선임의 건	기타	3,018	0.00	3,018	-	-	-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상 결격사유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
유가증권	삼성물산	2026-03-20	임원 보수	6.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기타	3,018	0.00	3,018	-	-	-	이사 보수 실시금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고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2026-03-20	결산 및 배당	1. 제15기(2025.1.1~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173	0.00	-	173	-	-	해당기업은 최근 5년간 배당 미실시. 2025년 약 1조 7,84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며, 설비투자 소요에 비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편차에 부족하여 주주환원이 불가피하게 제약되는 상황에 해당되지 않음.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과소배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에 반대
유가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2026-03-20	정관변경	2-1. 집중투표제 배제 정비 건	기타	173	0.00	173	-	-	-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던 기존 정관 조항(제29조 제2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상실된 조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회사 내부 규범과 상위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건. 이에 따라 본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2026-03-20	정관변경	2-2. 상법 개정 반영 건	기타	173	0.00	173	-	-	-	제 22조 제2항 및 제29조 제2항 신설안은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비하여,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 법적 근거를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는 건.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변경안은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제출하는 증명 문서의 범위에 기존의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정관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등은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건.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안은 이사의 직무수행 기준을 '회사 및 주주'로 명확히 하고, 나아가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 제42조 제4항 및 제5항 변경안은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의결권 제인(합산 3% 총) 강화를 정관에 반영함으로써,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 제42조 제8항 변경안은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된 결의요건을 정비하는 내용. 이에 따라 본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2026-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사내이사 존림(Rim Jonh Chongbo) 선임의 건 (재선임)	기타	173	0.00	173	-	-	-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2026-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 사내이사 노균 선임의 건 (재선임)	기타	173	0.00	173	-	-	-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2026-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정연 선임의 건 (신규 선임)	기타	173	0.00	173	-	-	-	후보자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2026-03-20	임원 보수	5. 이사 보수연도 승인의 건	기타	173	0.00	173	-	-	-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은 전기 43.0억원에서 당기 28.4억원으로 감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전기 1조 3,201억원에서 당기 2조 692억원으로 증가. 해당 기업은 경영성과가 크게 개선된 가운데 사내이사 실지금액은 감소하였으나, 당기 실지금액 대비 보수연도는 2.3배 수준으로 나타나 보수연도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설정된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해당 안전에 찬성.
유가증권	삼성중공업	2026-03-20	결산 및 배당	1. 제52기(2025.1.1~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12,974	0.00	12,974	-	-	-	2025년 말 기준 분석기업의 이익잉여금은 약 △1.6조 원 규모이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또한 약 △3.0조 원 수준으로 계상되어 현금배당 실시가 제한되는 상황임 것으로 확인. 이는 삼성중공업이 최근 2024년부터 흑자 전환을 기록하며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 누적된 손실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전 시점에서 현금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단순하고소배당 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판단.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중공업의 현행 배당 정책이 기업가치 또는 주주권익을 훼손한다고 판단하지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시 현행 재무제표 승인 및 배당 수준을 검토한 결과,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찬성
유가증권	삼성중공업	2026-03-20	정관변경	2-1. 사업 목적 추가의 건	기타	12,974	0.00	12,974	-	-	-	정관에 추가되는 사업은 연수원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사업목적의 추가된 사항으로 사업목적은 분석기업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고, 분석기업의 사업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분석기업의 수익성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삼성중공업	2026-03-20	정관변경	2-2. 상법 개정 등에 따른 정관 정비의 건	기타	12,974	0.00	12,974	-	-	-	예당 정관 변경안이 현행 법제와 실무 변화에 부합하는 정관 변경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주가지 훼손 우려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
유가증권	삼성중공업	2026-03-20	정관변경	2-3. 집중투표제도 배제 조항 삭제의 건	기타	12,974	0.00	12,974	-	-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상실될 조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회사의 내부 규범과 상위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바라고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삼성중공업	2026-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사내이사 최성안 선임의 건	기타	12,974	0.00	12,974	-	-	-	후보자(최성안)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지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삼성중공업	2026-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연승 선임의 건	기타	12,974	0.00	12,974	-	-	-	주보자(이연승)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적(징계) 등 지칭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삼성중공업	2026-03-20	임원 보수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12,974	0.00	12,974	-	-	-	이사회 의결을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당기 70억 원에서 차기 70억 원으로 유지함. 경영성과가 개선되었음에도 사내이사 실지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분석기업의 보수한도는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삼성화재	2026-03-20	결산 및 배당	1. 제76기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안) 승인의 건 이익배당예정내용: 1주당 배당금 (보통주 19,500원, 우선주 19,505원)	기타	761	0.00	761	-	-	-	재무제표 승인 및 배당 수준과 관련하여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 삼성화재의 2025년 배당성향은 38.5%로 업종 평균(11.1%)을 크게 상회하며,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향은 각각 36.7%, 38.5%를 기록함. 현행 배당 규모가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영업이익·영업활동현금흐름 주이, 설비투자 규모, 부채비율 등 제반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배당 수준은 실질적인 재무 여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한편, 삼성화재는 2025년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여 주주환원 정책을 대외적으로 표명하였으며, 자기주식 소각 및 매입을 실시하는 등 주주환원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음. 【배당 현황】 - 2025년 결산배당: 주당 19,500원 (전기 19,000원 대비 +500원) - 2025년 중 배당금: 7,767억 원 (전기 7,567억 원 대비 +2.6%) - 5년 평균 배당성향: 38.5% / 업종 평균(11.1%) 대비 현저히 상회 - 영업이익: 2025년 2조 6,591억 원 (전기 2조 6,496억 원, +0.4%) - 영업이익률: 2025년 10.7% (전기 11.7%) - 부채비율: 2025년 353.6% (전기 460.4%, 대폭 개선) - 설비투자/영업현금흐름: 1.9% (전기 2.3%), 투자 부담 미미한 수준

유가증권	삼성화재	2026-03-20	정관변경	2-1.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정비	기타	761	0.00	761	-	-	-	<p>재무제표 승인 및 배당 수준과 관련하여 기업가치 및 주주권의 훼손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음.</p> <p>삼성화재의 2025년 배당성장률은 38.5%로 업종 평균(11.1%)을 크게 상회하며,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장률은 각각 36.7%, 38.5%를 기록함. 현행 배당 규모가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영업이익,영업활동현금흐름 중의, 설비투자 규모, 부채비율 등 제반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배당 수준은 실질적인 재무 여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한편 삼성화재는 2025년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여 주주환원 정책을 대외적으로 표명하였으며, 자기주식 소각 및 매입을 실시하는 등 주주환원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음.</p> <p>【배당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결산배당: 주당 19,500원 (전기 19,000원 대비 +500원) - 2025년 총 배당금: 7,767억원 (전기 7,567억원 대비 +2.6%) - 5년 평균 배당성장률: 38.5% / 업종 평균(11.1%) 대비 현저히 상회 - 영업이익: 2025년 2조 6,591억원 (전기 2조 6,496억원, +0.4%) - 영업이익률: 2025년 10.7% (전기 11.7%) - 부채비율: 2025년 353.6% (전기 460.4%, 대폭 개선) - 설비투자/영업현금흐름: 1.9% (전기 2.3%), 투자 부담 미미한 수준
유가증권	삼성화재	2026-03-20	정관변경	2-2. 상법 개정 관련 정관 정비	기타	761	0.00	761	-	-	-	<p>정관 변경 제2-2호 의안에 대하여 찬성함.</p> <p>① 전자주주총회 개최 방식 추가 (제16조 제2항 신설) 2025.07.22. 공포된 개정 상법에 따라 2027.01.01.부터 도입 시행되는 현행법령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비하여,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 법적 근거를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임.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주주 권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됨. 현행법령 전자주주총회 의무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는 향후 개정될 상법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p> <p>② 대리권 증명방법 확대 (제20조) 개정 상법(2027.01.01. 시행) 제368조 제2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 행사 시 제출하는 증명 문서의 범위에 기존 서면 외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정관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의결권 행사의 부담 완화 및 주주 참여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p> <p>③ 독립이사 명칭변경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등) 개정 상법(2025.07.22. 공포)에 따라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건임. 사외이사를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 재정의함으로써 이사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검토됨.</p> <p>④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변경 (제33조) 분리선출 감사위원 위원을 기존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건임. 감사위원 독립성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됨.</p> <p>⑤ 정관 부칙 신설 - 소집지·개최방식 및 대리행사 관련 조항(제16조 제2항, 제20조 제1항): 2027.01.01. 시행 - 독립이사 관련 조항(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3조 등): 2026.07.23. 시행 - 여타 조항: 2026.03.25. 시행</p> <p>제도별 시행일을 명시하여 효력 개시일을 둘러싼 해석상 차이를 예방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인정됨.</p>
유가증권	삼성화재	2026-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1. 사외이사 김재선 선임의 건 (임기 3년)	기타	761	0.00	761	-	-	-	<p>후보자(김재선)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점 상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후보자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 3년 (신규선임) / 결임: 1개사 - 주요 경력: 김영정 법률사무소 고문(2025.06~현재), 성균관대 산학중점교수(2023.09~2025.02),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2020.08~2022.06),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처장(2020.01~2020.08),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2019.02~2020.0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2018.01~2019.02), 행정고시 합격(제34회, 1990.12) <p>【이해관계 관련 검토 사항】</p> <p>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 당시, 입찰에서 삼성화재 등 8개 순해보형사가 둘러러리 참가 또는 입찰 불참과 같은 방법으로 입찰한 행위에 대해 시장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 구조상 개별 사건은 담당 심사관 조사와 진술회의 또는 소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바,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의결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p> <p>회사의 소명(2026.03.10, 02-758-4026)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공정거래위원회 및 당사자와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이상의 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훼손할 정도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p>

유가증권	삼성화재	2026-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1.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진희 선임의 건 (임기 3년)	기타	761	0.00	761	-	-	-	<p>후보자(박진희)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칭 상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후보자 개요】 임기: 3년 (재선임) / 겸임: 2개사 (삼성화재, SK이노베이션) 주요 경력: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2022.03~현재), 중앙대 2030 탄소중립 ESG 공유포럼 공동 부위원장(2021.08~현재), 토스뱅크 사외이사(2021.07~2022.03), 한국씨티은행 은행장(2014.10~2020.10), 한국씨티은행 수석부행장(2004.11~2014.10) 이사회 출석률: 2023년 100.0%(11/11회), 2024년 100.0%(9/9회), 2025년 100.0%(13/13회), 직전임기(3년) 평균 100.0%</p>
유가증권	삼성화재	2026-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2.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성연 선임의 건 (임기 2년)	기타	761	0.00	761	-	-	-	<p>후보자(박성연)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칭 상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후보자 개요】 임기: 2년 (재선임) / 겸임: 2개사 (삼성화재, 대흥기획) 주요 경력: 한국마케팅학회 회장(2025.04~현재), 이화여대 학사 부총장 및 연구윤리센터장(2025.02~현재), 대흥기획 사외이사(2024.03~현재),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1994.09~현재), 이화여대 경영대학장 및 경영전문대학원장(2024.02~2025.01) 이사회 출석률: 2023년 100.0%(13/13회), 2024년 100.0%(9/9회), 2025년 100.0%(13/13회), 직전임기(3년) 평균 100.0%</p> <p>【검직 관련 참고 사항】 후보자(박성연)는 삼성화재와 대흥기획(사외이사) 등 2개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겸직 중이며, 대흥기획 사외이사의 경우 2026년 3월 임기만료를 공시하였으나 재선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현재 기준 겸직수에 포함하여 검토함.</p>
유가증권	삼성화재	2026-03-20	임원 보수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761	0.00	761	-	-	-	<p>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전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찬성함.</p> <p>【보수 현황】 자기 보수한도: 120억원 (전기 대비 동일 유지) 이사회 규모: 전기 7명 → 당기 6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으로 축소 -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 전기 11.5억원 → 당기 13.9억원 (+20.7%) - 비사외이사 1인당 보수한도: 59.0억원 / 실지금액 대비 3.4배 - 영업이익: 전기 2조 6,496억원 → 당기 2조 6,591억원 (+0.4%) - TSR: 45.7% (전기 43.2%) 당기 실지금액 대비 자기 보수한도는 약 3.3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보수한도가 다소 높은 수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삼성화재는 이사 보수정책을 수립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해당 보수정책은 중장기 성과를 기반으로 보수가 산정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보수한도가 합리적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 [회사 소명 사항 (매입 확인: 2026.03.10.)] 전기 이사 보수 실지금액(사외이사 보수 제외) 55.6억원에는 사내이사의 퇴직소득 9.8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검토함. ※ 실지금액 대비 보수한도: 자기 59.0억원 / 당기 13.9억원 = 3.4배 (기준 3.3배 초과)</p>

유가증권	NAVER	2026-03-23	결산 및 배당	1. 제27기(2025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개산서 포함) 승인의 건	기타	2,207	0.00	2,207	-	-	-	2025년 배당성향은 20.1%로 업종 평균을 상회하며,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향은 각각 15.2%, 4.3% 기록. 이를 감안할 때, 현행 배당 규모가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음
유가증권	NAVER	2026-03-23	정관변경	2-1.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기타	2,207	0.00	2,207	-	-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상실될 조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회사의 내부 규범과 상위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 기존 배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개정법 시행 이후 제도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주주와 회사 모두에게 불필요한 혼선 초래 가능성 존재. 개정법이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설계된 만큼,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 선제적으로 정관을 정비하는 것은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결의 효력 다툼 등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
유가증권	NAVER	2026-03-23	정관변경	2-2. 기타 상법 개정 반영의 건	기타	2,207	0.00	2,207	-	-	-	정관 제25조, 제38조, 제48조 제2항 변경안은 개정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하는 건. 사외 이사를 단순한 외부 인사가 아닌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주제로 재정의함으로써 그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 정관 제26조 변경안은 2025.07.22 공포된 개정 상법에 따라 2027.01.01.부터 도입 시행되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비하여,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 법적 근거를 정관에 명확히 규정.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는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주 권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정관 제32조 변경안은 의결권 행사 과정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정관 제41조 변경안은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의 문언과 취지를 정관에 반영하여, 이사의 직무수행 기준을 "회사 및 주주"로 명확히 하고, 나아가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 이는 개정 상법의 강행적 방향성과 정합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주권 보호 및 이사회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판단

유가증권	NAVER	2026-03-23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사내이사 김희철 선임의 건	기타	2,207	0.00	2,207	-	-	-	후보자(김희철)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유가증권	NAVER	2026-03-23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이배 선임의 건	기타	2,207	0.00	2,207	-	-	-	후보자(김이배)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NAVER	2026-03-23	임원 보수	5.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기타	2,207	0.00	2,207	-	-	-	당기 실지금액 대비 자기 보수한도는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경영성과 개선과 함께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 증가, 이사 보수 실지금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고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유가증권	우리금융지주	2026-03-23	결산 및 배당	1. 제7기(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12,577	0.00	12,577	-	-	-	<p>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우리금융지주의 2025년 배당성향은 32.0%로 업종 평균(36.2%) 대비 소폭 하회하나,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향이 각각 30.3%, 28.5%로 일정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총현금배당 규모는 최근 5년간 6,544억원에서 9,989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주당배당금 역시 900원에서 1,360원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배당 정책이 주주환원 측면에서 과도하게 소극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훼손의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배당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연간 총 배당금: 9,989억원 (주당 1,360원) - 중간/분기배당: 4,410억원 (주당 600원) - 결산배당: 5,579억원 (주당 760원) <p>2025년 배당성향: 32.0% / 업종 평균 36.2%</p> <p>5년 평균 배당성향: 28.5%</p> <p>영업이익: 2025년 3조 6,748억원 (전기 4조 2,552억원, -13.6%)</p> <p>영업이익률: 2025년 8.8% (5년 평균 9.8%)</p> <p>부채비율: 2025년 156.48% (지배지분자본 기준)</p> <p>설비투자/영업원금흐름: 3.7% (5년 평균 7.3%)</p>
유가증권	우리금융지주	2026-03-23	정관변경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기타	12,577	0.00	12,577	-	-	-	<p>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일괄 상정된 정관 변경 5건 모두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정관 변경 주요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도입 (제26조 제2항 신설): 상법 제542조의14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근거 규정 마련. 2027년 1월 1일 시행.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활성화 및 주주권 행사 용이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됨 대리권 증명방법 확대 (제31조 제2항): 의결권 대리 행사 시 제출 서류 범위에 전자문서 포함. 2027년 1월 1일 시행. 의결권 행사 부담 완화 및 주주 참여 활성화 목적으로 타당성 인정됨 사외이사 = 독립이사 반영 (제35조 제2항): 개정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독립이사 포함 내용 명시. 2026년 7월 23일 시행 대표이사 선임절차 명시 (제40조):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 결의로 전환. 2회 이상 연임 시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 요건 추가. 2026년 7월 23일 시행. 대표이사 선임의 합리성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주주가지 훼손 우려 없음 이사 중실의무 기준 확대 (제42조): 개정 상법 제382조의3 반영. '회사' → '회사 및 주주'로 확대 및 총주주 이익 보호 공평 대응 의무 신설. 이사회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됨 분리선임 감사위원 수 확대 (제51조 제4항 신설):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반영. 분리선임 감사위원 1명 → 2명으로 확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목적으로 지배구조 개선 효과 예상됨
유가증권	우리금융지주	2026-03-23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임종룡)	기타	12,577	0.00	12,577	-	-	-	<p>후보자(임종룡)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후보자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 3년 (재선임) / 겸임: 1개사 - 주요 경력: 우리금융그룹 회장(2023~현재), 금융위원회 위원장(2015~2017), NH농협금융지주 회장(2013~2015), 국무총리실 실장(2011~2013), 기획재정부 제1차관(2010~2011),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2009~2010) - 이사회 출석률: 2025년 92.9%(13/14회), 2024년 100.0%(17/17회), 2023년 100.0%(10/10회), 직전임기(3년) 평균 97.6%

유가증권	우리금융지주	2026-03-23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윤인섭)	기타	12,577	0.00	12,577	-	-	-	<p>후보자(윤인섭)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후보자 개요】</p> <p>임기: 1년 (재선임) / 겸임: 1개사</p> <p>주요 경력: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2022~현재), 푸본현대생명 이사회 의장(2018~2021), 한국기업평가 총괄 대표이사(2010~2017), 하나·HSBC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2008~2010), 하나생명 대표이사 사장(2007~2008)</p> <p>이사회 출석률: 2025년 100.0%(14/14회), 직전임기(1년) 평균 100.0%</p> <p>【이해관계 관련 검토 사항】</p> <p>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전년도 의안분석 시 후보자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감사·감독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보수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후 금융당국 감사 및 사법당국 수사 과정을 거쳐 본 사안은 자회사 내부의 왜곡된 인사권 행사, 폐쇄적 보고 체계, 내부통제 장치의 비실용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내부통제 실패로 성격이 보다 명확해졌음. 반면, 후보자가 위법 거래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방조하였거나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음.</p> <p>또한, 해당 사안은 지주사 리스크 감시 체계를 우회한 구조적 기망 행위의 성격이 강한 바, 후보자 개인에게 사전 적법 책임을 직접 귀속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사안 발생 이후 우리금융지주는 이사회와 대표이사 중심의 컨트롤타워 재정립 및 사외이사로 구성된 윤리·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을 통한 그룹 내부통제 조직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지배구조 개선 작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의 계속 직무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p>
유가증권	우리금융지주	2026-03-23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3.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류정혜)	기타	12,577	0.00	12,577	-	-	-	<p>후보자(류정혜)의 사외이사 신규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후보자 개요】</p> <p>임기: 2년 (신규선임) / 겸임: 1개사</p> <p>주요 경력: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산업AX-생태계) 위원(2025~현재),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위한 국민연합 AI 미래포럼 공동의장(2024~현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미래전략 담당 부사장(2021~2025), 카카오페이지 CMO(2016~2021), 토스랩 마케팅 총괄(2015~2016), NHN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인사이드 담당(2013~2015), 네이버 마케팅 및 시장/사용자 인사이드 Lead(2003~2013)</p>
유가증권	우리금융지주	2026-03-23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정용건)	기타	12,577	0.00	12,577	-	-	-	<p>후보자(정용건)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신규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후보자 개요】</p> <p>임기: 2년 (신규선임) / 겸임: 1개사</p> <p>주요 경력: 케이카페탈 상무 겸 준법감시인(2022~현재, 주총일 이전 사임 예정), 국민연금 나눔재단 이사(2021~현재, 무보수 비상근), 금융감시센터 대표(2020~2021),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2009~2012), 신한투자증권(1990~2017)</p> <p>【경력 관련 참고 사항】</p> <p>케이카페탈 상무 겸 준법감시인 직은 주주총회일(2026.03.23) 이전에 사임 예정임. 국민연금 나눔재단 이사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 복지재단의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독립성 훼손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p>

유가증권	우리금융지주	2026-03-23	임원 보수	5. 이사 보수현도 승인 의 건	기타	12,577	0.00	12,577	-	-	-	<p>이사 보수현도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금융지주회사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는 영업이익이 아닌 당기순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배당성향, ROE, EPS 등 주주환원 정책과 직결되는 성과지표가 모두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산정되며, 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의 성과 평가 체계(ROA, RORWA, 보통주자본비율 등) 역시 당기순이익과 직접 연계되어 있음.</p> <p>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5년 지배기업소유주지분 귀속 당기순이익은 3조 1,243억원으로 전기(3조 860억원) 대비 증가하였으며, 역대 최고 수준에 해당함. 2025년 중 동양생명 ABL생명 원입 과정에서 발생한 참가대출자익이 영업이익외적으로 반영된 점이 주요 요인으로, 이는 M&A 전략의 성공적 실행에 따른 정당한 경제적 성과임. 영업이익 하락은 해당 성과가 영업순익 구조 밖에서 회계처리된 결과일 뿐, 실질적 경영 역파로 해석하기 어려움.</p> <p>보수체계 측면에서도 경영성과 연계 구조가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함. 단기 성과급은 수익성·건전성 지표에 연동되고, 장기 성과급은 추가 연계 이연지급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 2025년에는 비과세 배당 실시, 차사주 소각 1,500억원 등을 포함한 총주주환원율이 약 40%(비과세 배당 감안 시) 달성.</p> <p>영식적 기준 역시 충족함. 자기 보수현도는 30억원으로 전기와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비사외이사 1인당 보수현도 대비 실질급여 비율은 2.2배로 검토 기준(3.3배 이하)을 충족함.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가 설치되어 보수의 적정성 검토 체계도 갖추어진 것으로 확인됨. 이상을 종합하면, 당기순이익 기준 경영성과 개선, 성과 연계 보수체계 구비, 영식 기준 충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이사 보수현도 승인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함.</p>
유가증권	POSCO홀딩스	2026-03-24	결산 및 배당	1. 제58기(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1,791	0.00	1,791	-	-	-	<p>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POSCO홀딩스의 2025년 배당성향은 114.6%로 지배주주순이익 금액(6,600억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100%를 초과하였으나,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향은 각각 65.8%, 33.8%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연간 총배당금은 7,562억원(주당 10,000원)으로 3년 연속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및 자기주식 소각·매입 등 주주환원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한 바 있음. 부채비율(76.8%)이 안정적이며, 기업가치 및 주주권의 훼손의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배당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연간 총 배당금: 7,562억원 (주당 10,000원) - 중간/분기배당: 5,672억원 (주당 7,500원) - 결산배당: 1,891억원 (주당 2,500원) <p>2025년 배당성향: 114.6% / 업종 평균 21.7% (지배주주순이익 금액에 따른 일시적 초과)</p> <p>5년 평균 배당성향: 33.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이익: 2025년 1조 8,300억원 (전기 2조 1,736억원, -15.8%) - 영업이익률: 2025년 2.6% (5년 평균 5.7%) - 부채비율: 2025년 76.8% (5년 평균 75.6%) - 설비투자/영업현금흐름: 136.1% (5년 평균 102.3%) - 자기주식 소각 및 매입 등 배당 외 주주환원 정책 병행 추진 확인
유가증권	POSCO홀딩스	2026-03-24	정경변경	2-1.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	기타	1,791	0.00	1,791	-	-	-	<p>정경 변경 제2-1호 의안에 대하여 찬성함.</p> <p>개정 상법(2025.07.22. 공포)에 따라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건임. 정관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48조에 걸쳐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알괄 변경하는 내용임. 이는 사외이사를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 재정의함으로써 이사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됨.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어 찬성함.</p>

유가증권	POSCO홀딩스	2026-03-24	정관변경	2-2.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증원의 건	기타	1,791	0.00	1,791	-	-	-	정관 변경 제2-2호 의안에 대하여 찬성함. 개정 상법(2025.09.09. 공포 / 2026.09.10. 시행)에 따라 분리선출 방식으로 선임해야 할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정관 제48조에 반영하는 건임.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로,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영향력이 감사위원 구성에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을 완화하고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유가증권	POSCO홀딩스	2026-03-24	정관변경	2-3. 감사위원 선제임 시 의결권 제한범위 확대의 건	기타	1,791	0.00	1,791	-	-	-	정관 변경 제2-3호 의안에 대하여 찬성함. 개정 상법(2025.07.22. 공포 / 2026.07.23. 시행)에 따라 감사위원 선제임 시 3% 의결권 제한(합산 3% 룰) 강화를 정관 제48조에 반영하는 건임.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등 보유분을 합산한 3%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감사위원 선제임 과정에서 지배주주 측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소수주주의 감시권을 보장하는 취지임. 감사 독립성 및 시장 신뢰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됨.
유가증권	POSCO홀딩스	2026-03-24	정관변경	2-4.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건	기타	1,791	0.00	1,791	-	-	-	정관 변경 제2-4호 의안에 대하여 찬성함. ① 전자주주총회 도입 (제19조 제5항 신설): 개정 상법(2025.07.22. 공포)에 따라 2027.01.01.부터 도입·시행되는 현행병행형 전자주주총회의 법적 근거를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는 건임.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활성화 및 주주권 행사 용이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됨 ② 대리권 증명방법 확대 (제23조 제2항): 의결권 대리 행사 시 제출 서류 범위에 전자문서 포함, 2027.01.01. 시행. 의결권 행사 부담 완화 및 주주 참여 활성화 목적으로 타당성 인정됨

유가증권	POSCO홀딩스	2026-03-24	정관변경	2-5. 분리형 집중투표제 조항 삭제의 건	기타	1,791	0.00	1,791	-	-	<p>정관 변경 제2-5호 의안에 대하여 찬성함. 개정 상법제542조의7 제3항, 2026.09.10. 시행)에 따라, 집중투표 적용 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별개의 조로 구분하여 각 조별 집중투표를 적용하던 기존 정관 제28조 제3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건임. 상법은 집중투표 적용 대상에 선임할 이사·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사 종류별로 분리 적용하는 현행 정관 조항은 집중투표의 본래 취지를 제한할 소지가 있음. 법무부 유권해석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집중투표의 실효성을 회복하는 방향의 정비로 평가됨.</p> <p>【부칙】 · 부칙 제1조: 본 개정 정관은 제58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일부터 시행 · 부칙 제2조: 제19조 및 제23조 제2항 개정규정은 2027.01.01.부터 시행 · 부칙 제3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40조 및 제48조 개정규정은 2026.07.23.부터 시행, 단 제48조 제1항 제2문은 제58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일부터 시행</p>
유가증권	POSCO홀딩스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이주태)	기타	1,791	0.00	1,791	-	-	<p>후보자(이주태)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후보자 개요】 임기: 1년 (재선임) / 겸임: 2개사 (POSCO홀딩스, 포스코인더피터셀) 주요 경력: 포스코홀딩스 미래전략본부장 대표이사 사장(2025.03-현재), 포스코홀딩스 경영전략팀장 부사장(2024.04), 포스코 경영기획본부장/사내이사 부사장(2023.03), 포스코 구매투자본부장 부사장(2021.01), POSCO-Asia(중국)법인 법인장/전무(2018.02), 前 POSCO-America(미국)법인 법인장 상무(2014.07) 이사회 출석률: 2025년 100.0%(7/7회), 직전임기(1년) 평균 100.0%</p>
유가증권	POSCO홀딩스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김기수)	기타	1,791	0.00	1,791	-	-	<p>후보자(김기수)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후보자 개요】 임기: 1년 (재선임) / 겸임: 1개사 주요 경력: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 그룹CTO 겸임 사내이사 부사장(2024.03-현재), 포스코 기술연구원장 부사장(2024.01), 포스코 저탄소공정연구소장/전무(2020.01), 포스코 엔지니어링솔루션실장 상무(2017.02), 포스코 포항연구원프라그림장 상무보(2014.06) 이사회 출석률: 2025년 100.0%(9/9회), 직전임기(1년) 평균 100.0%</p>

유가증권	POSCO홀딩스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3.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정석모)	기타	1,791	0.00	1,791	-	-	-	<p>후보자(정석모)의 사내이사 신규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후보자 개요】</p> <p>임기: 1년 (신규선임) / 겸임: 3개사 (POSCO홀딩스 사내이사, 포스코퓨처엠 기타비상무이사, 포스코중타이어에어솔루션 대표이사)</p> <p>주요 경력: 포스코홀딩스 사업시내지분부장-부사장(2025.12-현재), 포스코 산업가스사업부장-전무(2025.01), 포스코중타이어에어솔루션 사장(2025.01), 포스코 산업가스사업추진반장-전무(2022.02), 포스코 이차전지소재사업실장-상무(2020.01), 엔투비 대표이사-사장(2018.01)</p> <p>【검직 관련 참고 사항】</p> <p>후보자는 본 주주총회에서 POSCO홀딩스 신규 사내이사 및 포스코퓨처엠 신규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각각 선정되어 있으며, 포스코중타이어에어솔루션 대표이사를 현직으로 겸직하고 있어 총 겸임 수는 3개임. 지침상 과다 겸임 기준(5개 이하)을 초과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p>
유가증권	POSCO홀딩스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후보: 이회근)	기타	1,791	0.00	1,791	-	-	-	<p>후보자(이회근)의 기타비상무이사 신규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후보자 개요】</p> <p>임기: 1년 (신규선임) / 겸임: 2개사</p> <p>주요 경력: 포스코 대표이사-사장(2025.03-현재), 포스코 설비강건화TF팀장-부사장(2024.11), 포스코 안전환경본부장-사내이사-부사장(2023.03), 포스코엠텍 대표이사-사장(2021.03), 포스코 포항제철소 선강담당-부소장-상무(2018.01)</p>
유가증권	POSCO홀딩스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김주연)	기타	1,791	0.00	1,791	-	-	-	<p>후보자(김주연)의 사외이사 신규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후보자 개요】</p> <p>임기: 3년 (신규선임) / 겸임: 2개사</p> <p>주요 경력: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2023-현재), P&G 일본/한국지역 부회장(2019~2022), P&G Grooming 글로벌 최고마케팅책임자(2019~2022), P&G 릴레트 아시아 총괄대표 부회장(2018~2019), P&G 한국 대표이사-사장(2016~2018), P&G 아시아태평양인도지역 마케팅 전무(2012~2015), P&G 한국 마케팅총괄 상무(2005~2010)</p>

유가증권	POSCO홀딩스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김준기)	기타	1,791	0.00	1,791	-	-	-	<p>후보자(김준기)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후보자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 3년 (재선임) / 겸임: 1개사 - 주요 경력: 세계연호사협회(IBA) 아태중재그룹 공동의장(2024-현재),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 위원(2021-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위원(2018-현재), 세계은행 산하 (CSID 중재재판관(2013-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6-현재), Foley & Lardner 로펌 변호사(1992-1995) - 이사회 총석출: 2025년 100.0%(9/9회), 2024년 100.0%(10/10회), 직전임기(3년) 평균 100.0% - 이해관계 관련 검토 사항 <p>2023년 8월 캐나다 판지 이사회 개최 비용을 자회사에서 나눠 부담하게 한 혐의로 당시 사외이사 전임이 청탁금지법 등의 혐의로 경찰 입건되었으나, 2025년 4월 15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됨 (출처: 연합뉴스, 2025.04.15). 해당 사안은 법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 시험에서 후보자의 독립성 또는 자격을 실질적으로 훼손할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p>
유가증권	POSCO홀딩스	2026-03-24	임원 보수	7.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1,791	0.00	-	1,791	-	-	<p>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함.</p> <p>POSCO홀딩스는 이사회 규모를 12명(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7명)으로 확대하면서도 보수한도를 당기 100억원에서 자기 100억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였음.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이 전기 13.6억원에서 당기 13.1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5년 영업이익은 전기 2조 1,736억원에서 당기 1조 8,300억원으로 15.8% 하락하였음. 경영성과가 크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금액이 소폭 감소에 그친 것은 이사 보수 실지금액이 경영성과에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함.</p> <p>【보수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보수한도: 100억원 (전기 대비 동일 유지) - 이사회 규모: 12명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7명으로 확대) - 비사외이사 1인당 실지금액: 전기 13.6억원 → 당기 13.1억원 (-3.5%) - 비사외이사 1인당 보수한도: 19.3억원 / 실지금액 대비 1.5배 - 영업이익: 전기 2조 1,736억원 → 당기 1조 8,300억원 (-15.8%) - TSR: 24.7% (전기 -48.0%) - 이사회 내 보수 관련 위원회 설치 확인 <p>※ 실지금액 대비 보수한도 배율(1.5배)은 검토 기준(3.3배 이하)을 충족하나, 영업이익 15.8% 급감에도 실지금액이 소폭 감소(-3.5%)에 그쳐 경영성과와 미연계로 반대함</p>
유가증권	셀트리온	2026-03-24	결산 및 배당	1. 제35기(연결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1,039	0.00	1,039	-	-	-	<p>해당기업의 2025년 배당성향은 15.9%로 업종 평균을 소폭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 5년 평균 배당성향은 18.5%를 기록하고 있음. 이를 감안할 때 현행 배당 규모가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p> <p>해당기업의 배당 정책과 관련하여 기업가지 또는 주주권익을 훼손할 우려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p>

유가증권	셀트리온	2026-03-24	정관변경	2-1.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기타	1,039	0.00	1,039				<p>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던 기존 정관 조항(제33조 제3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상실된 조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회사 내부 규범과 상위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건.</p> <p>이에 따라 본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p>
유가증권	셀트리온	2026-03-24	정관변경	2-2. 이사회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기타	1,039	0.00	-	1,039			<p>정관 제32조 제1항 변경안은 이사 수를 현행 3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3인 이상 9인 이내로 축소하는 건. 이사 수의 상한을 축소하는 경우 향후 선임 가능한 이사 수 자체가 감소하게 되어 주주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집중투표제나 주주제안 등을 통한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축소될 수 있음.</p> <p>이에 따라 본 정관 변경안은 이사회 구성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주주권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에 대해 반대.</p>
유가증권	셀트리온	2026-03-24	정관변경	2-3. 자기주식 처분 계획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기타	1,039	0.00	1,039				<p>2026년 3월 6일 공표 및 즉시 시행된 개정 상법에 대응하여, 일정한 경영상 목적 아래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신설하는 내용.</p> <p>본 신설안은 전략적 제휴·외국자본 도입·자금조달·연구개발·신규사업 추진·사업다각화 등 활용 목적을 정관에 명시적으로 열거. 개정 상법이 '경영상 목적'이라는 포괄 개념을 전제로 정관상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이상, 회사가 이를 세분화하여 명시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주식 활용 범위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주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음.</p> <p>이에 따라 본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p>

유가증권	셀트리온	2026-03-24	정관변경	2-4. 기타 정관 정비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기타	1,039	0.00	1,039				<p>정관 제3조 제2항 변경안은 지점의 설치에 관한 정관 조문을 상정회사 표준정관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건. 정관 제22조 제2항 신설안은 2027.01.01.부터 도입 및 시행되는 원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비하여,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 법적 근거를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건.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주 권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정관 제20조 제2항 변경안은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제출하는 증명 문서의 범위에 기존의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정관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이에 따라 본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p>
유가증권	셀트리온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사내이사 기우성 선임의 건	기타	1,039	0.00	-	1,039			<p>후보자는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셀트리온의 사내이사로 재직할 당시, 분식기업인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케어의 합리적인 사유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함.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부의 이전을 시키고 있는 점에서 중대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이에 따라 후보자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p>
유가증권	셀트리온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 사내이사 신민철 선임의 건	기타	1,039	0.00	-	1,039			<p>셀트리온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회계처리 위반 행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는 회사 및 대표이사 등에 대해 과징금 부여, 감사인지정 2년, 내부통제 개선권고 및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부과한 바 있음. 후보자는 해당 기간 동안 셀트리온의 재무부서에서 담당자 및 본부장 등 관리직으로 근무. 특히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할 것으로 확인.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간 중 일부가 후보자의 사내이사 재직기간과 중첩된다는 점은 재무보고의 신뢰성 및 내부통제 관리 측면에서 일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 이에 따라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p>

유가증권	셀트리온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3. 사외이사 고령에 선임의 건	기타	1,039	0.00	1,039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셀트리온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4. 사외이사 최원경 선임의 건	기타	1,039	0.00	1,039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셀트리온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5. 사외이사 최종문 선임의 건	기타	1,039	0.00	1,039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셀트리온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종재 선임의 건	기타	1,039	0.00	1,039				후보자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정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셀트리온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2.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윤태화 선임의 건	기타	1,039	0.00	1,039				후보자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정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셀트리온	2026-03-24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5-1. 감사위원회 위원 고영혜 선임의 건	기타	1,039	0.00	1,039				후보자의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정 상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셀트리온	2026-03-24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5-2. 감사위원회 위원 최종명 선임의 건	기타	1,039	0.00	1,039				후보자의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잔성.
유가증권	셀트리온	2026-03-24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5-3. 감사위원회 위원 최종명 선임의 건	기타	1,039	0.00	1,039				후보자의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잔성.
유가증권	셀트리온	2026-03-24	임원 보수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1,039	0.00	1,039				해당기업은 이사회 의 규모를 9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으로 축소하고 보수한도를 당기 150억원에서 자기 150억원으로 동일하게 유지,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은 전기 26.6억원에서 당기 14.6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사내이사 1인당 보수한도는 약 36.9억원으로 나타나 실지금액 대비 2.5배 수준으로 확인. 경영성과가 크게 개선된 가운데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은 감소하였으며, 사내이사 1인당 보수한도 또한 실지금액 대비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해 잔성.

유가증권	셀트리온	2026-03-24	자본 구조	7.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및 자기주식 소각의 건	기타	1,039	0.00	1,039				<p>2026년 3월 6일 공표·시행된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 소각하여야 하며,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내 소각 의무가 부과.</p> <p>해당기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총 12,336,466주(발행주식총수 대비 5.34%) 중 9,110,000주를 전량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 나머지 3,226,466주는 경영상 목적을 위해 처분(유동화)하여 단기 투자자금에 우선 충당 예정.</p> <p>해당기업은 처분 대상 자기주식의 종류, 규모, 보유기간 및 처분시기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기주식 활용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안전에 대해 찬성.</p>
유가증권	하나금융지주	2026-03-24	결산 및 배당	1. 제21기(2025년 1월1일~2025년12월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7,264	0.00	7,264				<p>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하나금융지주의 2025년 배당성향은 28.0%로 업종 평균(36.2%) 대비 소폭 하회하나,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향이 각각 27.9%, 27.4%로 일정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총현금배당 규모는 최근 5년간 9,038억원에서 1조 1,191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주당배당금 역시 3,100원에서 4,105원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배당 정책이 주주환원 측면에서 과도하게 소극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훼손의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배당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연간 총 배당금: 1조 1,191억원 (주당 4,105원) - 중간/분기배당: 7,502억원 (주당 2,739원) - 결산배당: 3,689억원 (주당 1,366원) <p>2025년 배당성향: 28.0% / 업종 평균 36.2%</p> <p>5년 평균 배당성향: 27.4%</p> <p>영업이익: 2025년 5조 3,509억원 (전기 4조 8,552억원, +10.2%)</p> <p>영업이익률: 2025년 7.8% (5년 평균 7.3%)</p> <p>부채비율: 2025년 1,410.8% (지배지분자본 기준)</p> <p>자기주식 매입소각 등 배당 외 주주환원 정책 병행 추진 확인</p>
유가증권	하나금융지주	2026-03-24	자본 구조	2.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기타	7,264	0.00	7,264				<p>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9조 6,857억원)가 자본금(1조 5,012억원)의 1.5배를 초과하므로, 초과 금액 범위(7조 4,339억원) 내에서 자본준비금 7조 4,0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임. 배당재원 확보 목적의 적법한 절차로,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자본준비금 감액 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A): 9조 6,857억원 - 자본금(B): 1조 5,012억원 - 최소 필요준비금 (B×150%): 2조 2,518억원 - 감액가능 자본준비금 (A-B×150%): 7조 4,339억원 - 자본준비금 감액: 7조 4,000억원 → 이익잉여금 전환

유가증권	하나금융지주	2026-03-24	정관변경	3. 정관 개정의 건	기타	7,264	0.00	7,264	-	-	-	<p>정관 개정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 일괄 상정된 정관 변경 4건 모두 주주가지지를 훼손할 우려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 【정관 변경 주요 내용】 ① 본업 소재지 변경 (제3조):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2026년 9월 30일 시행 ② 현업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도입 (제24조의5 신설): 상법 제542조의4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근거 규정 마련, 2027년 1월 1일 시행.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활성화 및 주주권 행사 용이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됨 ③ 이사회 내 위원회 개편 (제35조):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 소비자보호위원회로 명칭 변경. 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기능 강화 목적으로 주주가지지 훼손 우려 없음 ④ 부칙 신설: 정관 변경 효력 발생 시점 명확화, 법적 불확실성 해소</p>
유가증권	하나금융지주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1. 사외이사 (원숙연) 선임의 건	기타	7,264	0.00	7,264	-	-	-	<p>후보자(원숙연)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 【후보자 개요】 임기: 1년 (재선임) / 겸임: 1개사 주요 경력: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2004.03~현재),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단장(2023.06~2025.12), 기획재정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민간위원(2022.07~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2021.04~현재), 한국거래소 공익대표 비상임이사(2021.10~2023.03), 대법원 감사위원(2019.08~2024.07) 이사회 출석률: 2025년 100.0%(10/10회), 직전임기(1년) 평균 100.0%</p>
유가증권	하나금융지주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2. 사외이사 (주영섭) 선임의 건	기타	7,264	0.00	7,264	-	-	-	<p>후보자(주영섭)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 【후보자 개요】 임기: 1년 (재선임) / 겸임: 1개사 주요 경력: 관세청 청장(2011.07~2013.03), 기획재정부 세제실장(2010.04~2011.07),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국장(2008.09~2010.04), 빌모이트 안진회계법인 안진세무법인 전문위원(2013~2023) 이사회 출석률: 2024년 100.0%(9/9회), 2025년 100.0%(10/10회), 직전임기(2년) 평균 100.0%</p>

유가증권	하나금융지주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3. 사외이사 (이재술) 선임의 건	기타	7,264	0.00	7,264	-	-	-	<p>후보자(이재술)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후보자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기: 1년 (재선임) / 겸임: 1개사 주요 경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2009~2014),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2015~2017),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2011~2013), BNK투자증권 사외이사(2022~2024) 이사회 출석률: 2024년 88.9%(8/9회), 2025년 100.0%(10/10회), 직전임기(2년) 평균 94.7%
유가증권	하나금융지주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4. 사외이사 (윤심) 선임의 건	기타	7,264	0.00	7,264	-	-	-	<p>후보자(윤 심)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후보자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기: 1년 (재선임) / 겸임: 1개사 주요 경력: 삼성SDS 클라우드사업부장 겸 연구소장(2018~2020), 삼성SDS 연구소장(2013~2018), 미래콤아이앤씨 대표이사(2020~2022),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2023.01~현재) 이사회 출석률: 2024년 100.0%(9/9회), 2025년 100.0%(10/10회), 직전임기(2년) 평균 100.0%
유가증권	하나금융지주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5. 사외이사 (이재민) 선임의 건	기타	7,264	0.00	7,264	-	-	-	<p>후보자(이재민)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후보자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기: 1년 (재선임) / 겸임: 1개사 주요 경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3.09~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2024.06~현재), 무역위원회 위원장(2022.11~2024.08), 대한항공 사외이사(2021.03~2024.03),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학회장(2020~2021) 이사회 출석률: 2025년 100.0%(10/10회), 직전임기(1년) 평균 100.0%

유가증권	하나금융지주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6. 사외이사 (최현자) 선임의 건	기타	7,264	0.00	7,264	-	-	-	<p>후보자(최현자)의 사외이사 신규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후보자 개요】</p> <p>임기: 1년 (신규선임) / 겸임: 1개사</p> <p>주요 경력: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1997.03~현재), 하나은행 사외이사(2021.07~2026.03),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2025.11~현재), 금융산업공익재단 비상임이사(2022.10~현재), 삼성전기 사외이사(2014.03~2020.03),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서민금융·금융소비자분과위원장(2013~2017)</p>
유가증권	하나금융지주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7. 사내이사 (이승열) 선임의 건	기타	7,264	0.00	7,264	-	-	-	<p>후보자(이승열)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후보자 개요】</p> <p>임기: 1년 (재선임) / 겸임: 1개사</p> <p>주요 경력: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겸 사내이사(2024.03~현재), 하나은행 대표이사 은행장(2023.01~2024.12), 하나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2022.03~2022.12), 하나금융지주 그룹재무총괄 부사장(2019.01~2020.06)</p> <p>이사회 출석률: 2025년 100.0%(4/4회), 직전임기(1년) 평균 100.0%</p>
유가증권	하나금융지주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8. 사내이사 (강성욱) 선임의 건	기타	7,264	0.00	7,264	-	-	-	<p>후보자(강성욱)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후보자 개요】</p> <p>임기: 1년 (재선임) / 겸임: 2개사</p> <p>주요 경력: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겸 사내이사(2024.03~현재), 하나증권 대표이사 사장(2023.01~현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2022.03~2022.12), 하나은행 중앙영업2그룹장 부행장(2020.01~2020.12)</p> <p>이사회 출석률: 2025년 100.0%(4/4회), 직전임기(1년) 평균 100.0%</p>

유가증권	하나금융지주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5-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동문) 선임의 건	기타	7,264	0.00	7,264	-	-	-	<p>후보자(박동문)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후보자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기: 1년 (재선임) / 겸임: 1개사 주요 경력: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2021.03~현재),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사장(2012.01~2017.12),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아이넷 대표이사 사장(2010~2011), 한국품질경영학회 명예회장(2012~2015) 이사회 출석률: 2025년 100.0%(10/10회), 직전임기(1년) 평균 100.0%
유가증권	하나금융지주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5-2.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준서) 선임의 건	기타	7,264	0.00	7,264	-	-	-	<p>후보자(이준서)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신규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후보자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기: 1년 (신규선임) / 겸임: 1개사 주요 경력: 동국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2005.09~현재), 한국거래소 자선운용위원장(2023.06~현재),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장(2025.02~현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2019~2022),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2020~2023) 이사회 출석률: 2025년 100.0%(10/10회), 직전임기(1년) 평균 100.0%
유가증권	하나금융지주	2026-03-24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6-1.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주영섭) 선임의 건	기타	7,264	0.00	7,264	-	-	-	<p>후보자(주영섭)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신규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후보자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기: 1년 (신규선임) / 겸임: 1개사 주요 경력: 관세청 청장(2011.07~2013.03), 기획재정부 세제실장(2010.04~2011.07),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국장(2008.09~2010.04), 빌로이트 안전회계법인 안전세무법인 전문위원(2013~2023) 이사회 출석률: 2024년 100.0%(9/9회), 2025년 100.0%(10/10회), 직전임기(2년) 평균 100.0%

유가증권	하나금융지주	2026-03-24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6-2.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윤심) 선임의 건	기타	7,264	0.00	7,264	-	-	-	<p>후보자(윤 심)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신규선임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후보자 개요】</p> <p>- 임기: 1년 (신규선임) / 겸임: 1개사</p> <p>- 주요 경력: 삼성SDS 클라우드사업부장 겸 연구소장(2018~2020), 삼성SDS 연구소장(2013~2018), 미라클아이엔씨 대표이사(2020~2022),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2023.01~현재)</p> <p>- 이사회 출석률: 2024년 100.0%(9/9회), 2025년 100.0%(10/10회), 직전임기(2년) 평균 100.0%</p>
유가증권	하나금융지주	2026-03-24	임원 보수	7.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7,264	0.00	7,264	-	-	-	<p>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전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찬성함.</p> <p>【보수 현황】</p> <p>- 자기 보수한도: 40억원 (전기 대비 동일 유지)</p> <p>- 이사회 규모: 12명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9명)</p> <p>- 비사외이사 1인당 실지금액: 전기 5.1억원 → 당기 6.8억원 (+33.0%)</p> <p>- 비사외이사 1인당 보수한도: 11.8억원 / 실지금액 대비 1.8배</p> <p>- 영업이익: 전기 4조 8,552억원 → 당기 5조 3,509억원 (+10.2%)</p> <p>- TSR: 76.5% (전기 38.8%)</p> <p>- 이사회 내 보수 관련 위원회 설치 확인</p> <p>- 실지금액 대비 보수한도 배율이 1.8배로 검토 기준(3.3배 이하)을 충족하며, 경영성과 개선과 연동하여 보수가 조정된 것으로 확인됨. 보수한도가 실지금액 대비 과도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찬성함.</p>
유가증권	한화에너지스페이스	2026-03-24	결산 및 배당	1. 제4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주당 7,000원	기타	592	0.00	592	-	-	-	<p>해당기업의 2025년 배당성향은 25.6%로 업종 평균을 상회하며,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향은 각각 13.5%, 14.0%인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배당 규모가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또한, 해당기업의 재무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행 배당 수준은 실질적인 재무 여건에 대체로 부합함. 배당 수준과 관련하여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는 발견되지 않기에 찬성함.</p>

유가증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6-03-24	정관변경	2-1. 사업목적 추가의 건	기타	592	0.00	592	-	-	-	에너지, 전력, 항공기 및 우주선 발사, 기계설비 등 추가되는 사업목적은 기존 영위하는 사업과 연관성이 있고, 분석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통해 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분석기업의 수익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변경임. 또한, 추가된 사업목적에서 회사의 수익성에 훼손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특이점을 찾을 수 없었음. 따라서, 해당 사업목적 추가에 따른 직접적인 주주가지 훼손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함.
유가증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6-03-24	정관변경	2-2. 주주총회 개최방식 변경의 건	기타	592	0.00	592	-	-	-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 법적 근거를 정관에 규정하는 건.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는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주 권익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되고 있기에 찬성함
유가증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6-03-24	정관변경	2-3. 의결권 대리행사 방식 변경의 건	기타	592	0.00	592	-	-	-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제출하는 증명 문서의 범위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건. 기존 서면 제출만 가능했던 상황에서 전자문서를 포함하게 된다면 의결권 행사 과정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유가증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6-03-24	정관변경	2-4. 사외이사 명칭 변경의 건	기타	592	0.00	592	-	-	<p>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건.</p> <p>사외이사를 단순한 외부 인사기 아닌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 재정의함으로써 그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와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p>
유가증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6-03-24	정관변경	2-5. 이사의 임기 변경의 건	기타	592	0.00	592	-	-	<p>상법 제383조 제 3항에 따르면 이사 임기의 최장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법에 저촉되지 않음. 또한, 상대적으로 짧은 임기는 잦은 연임 심사로 인해 중장기 전략의 추진과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제약을 줄 수 있어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이사회 감시 기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p> <p>따라서 해당 정관 변경안이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찬성함.</p>
유가증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6-03-24	정관변경	2-6.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변경의 건	기타	592	0.00	592	-	-	<p>분리선임 방식으로 선임해야 할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건.</p> <p>감사위원회의 핵심 구성원인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단계에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상법의 취지와 부합하며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영향력이 감사위원 구성에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을 완화하고 감사 기능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p> <p>특히, 분리선임 대상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통제 감독 기능을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예상되어 찬성함.</p>

유가증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6-03-24	정관변경	2-7. 배당절차 개선 반영의 건	기타	592	0.00	592	-	-	-	<p>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이 이루어짐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고, 기준일을 정한 경우 기준일의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변경하는 건.</p> <p>해당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도입되어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일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은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또한, 주주가 주주총회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주주가 아닌 자가 배당 관련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p> <p>따라서 해당 정관 변경안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주가지 훼손의 우려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함</p>
유가증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6-03-24	정관변경	2-8. 집중투표 배제조항 삭제의 건	기타	592	0.00	592	-	-	-	<p>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던 기존 정관 조항(제23조 제6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건.</p> <p>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상실될 조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회사의 내부 규범과 상위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건.</p> <p>이에 따라 본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함.</p>
유가증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6-03-24	정관변경	2-9. 기타 부칙 변경	기타	592	0.00	592	-	-	-	<p>정관 부칙 변경안은 가결 시 주주총회일로부터 시행되도록 단서를 두어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는 건. 이는 정관 효력 개시일을 둘러싼 해석상 다름을 예방하고, 변경된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됨.</p> <p>따라서 본 정관 부칙 변경안에 대해 찬성함.</p>

유가증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사내이사 손재일 선임의 건	기타	592	0.00	592	-	-	-	후보자(손재일)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칭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유가증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 사내이사 김승모 선임의 건	기타	592	0.00	592	-	-	-	후보자(김승모)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칭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유가증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3. 사외이사 전휴재 선임의 건	기타	592	0.00	592	-	-	-	후보자(전휴재)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유가증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6-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전우홍 선임의 건	기타	592	0.00	592	-	-	-	후보자(전우홍)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정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유가증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6-03-24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감사위원회 위원 전후재 선임의 건	기타	592	0.00	592	-	-	-	후보자(전후재)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정 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6-03-24	임원 보수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592	0.00	592	-	-	-	이사회 의 규모를 9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당기 110억 원에서 차기 110억 원으로 유지시켰음.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전기 16.0억 원에서 당기 10.9억 원으로 감소하여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 대비 보수한도는 2.5배 수준임. 또한, 경영성과(전기 대비 영업이익)는 전기 17,319억 원에서 당기 30,893억 원으로 상승하였음. 분석기업의 경영성과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이 감소하였음. 따라서 분석기업의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찬성함.

유가증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6-03-24	자본 구조	7. 자기 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기타	592	0.00	-	592	-	-	<p>자기주식 소각의 예외 사유인 임직원 보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계획에 대한 승인을 구하는 건.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기주식 보유는 법이 예정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예외보유가 소각원칙의 예외로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보상제도의 설계, 지급대상, 성과조건, 예상 활용 규모 및 처분 일정 등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함. 보통주 자기주식 114,613주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보유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 중 45,000주는 2027년 정기주주총회 이전 보상 목적으로 처분하며, 나머지 69,613주는 2027년 정기주주총회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보유할 향후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국 전체 계획의 상당 부분이 장래의 추상적 활용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주주로서는 해당 물량의 예외보유 필요성과 범위의 상당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함.</p>
유가증권	SK스퀘어	2026-03-25	결산 및 배당	1. 제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2,549	0.00	-	2,549	-	-	<p>2025년 동사의 배당성향은 0%로 업종 평균을 대폭 하회하며,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향 역시 각각 0%, 0%로 지속적으로 저조한 수준. 동사는 최근 수 년간 안정적인 순이익을 실현해 왔으며, 설비투자 소요에 비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현저히 부족하지 않음. 이에 현재 배당 수준은 주주환원 여력 대비 과소하다는 판단하며 배당성향의 상승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안전에 반대</p>
유가증권	SK스퀘어	2026-03-25	정관변경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기타	2,549	0.00	2,549	-	-	-	<p>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상실될 조항을 선 제적으로 정비하는 안건으로 찬성</p>

유가증권	SK스퀘어	2026-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김정규)	기타	2,549	0.00	2,549	-	-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상 결격사유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
유가증권	SK스퀘어	2026-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후보: 유영상)	기타	2,549	0.00	2,549	-	-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상 결격사유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
유가증권	SK스퀘어	2026-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서영호)	기타	2,549	0.00	-	2,549	-	후보자는 KB금융지주에서 CFO 로 2022~23년 까지 재직했으며, 이 기간 동안 SK스퀘어의 자회사인 티엠오빌리티에 SI 로 참여하여 2,000여원을 투자한 바 있음. 해당 투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계열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금융그룹의 임원으로 재직할 이력이 있는 바, 후보자의 독립성 훼손 우려로 반대

유가증권	SK스퀘어	2026-03-25	임원 보수	5. 이사 보수제도 승인의 건	기타	2,549	0.00	2,549	-	-	-	이사 보수제도 승인 안전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찬성
유가증권	SK스퀘어	2026-03-25	자본 구조	6.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기타	2,549	0.00	2,549	-	-	-	배당재원 확보를 위해 감액가능 자본준비금 내에서 감액하는 것은 결격사유 없음으로 찬성
유가증권	SK스퀘어	2026-03-25	자본 구조	7. 자기 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기타	2,549	0.00	-	2,549	-	-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계획에 대한 승인을 구하는 건임. 당사는 현재 보유 중인 자기주식 총 394,701주 중 265,972주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보유/처분하고 나머지는 소각할 예정으로 발표.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보유 예정인 자기주식에 대한 보유기간 및 처분 시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물량의 구체적인 소각 시점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해당 보유 규모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주주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반대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결산 및 배당	1. 제78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9,527	0.00	9,527	-	-	-	2025년 동사의 배당성향은 4.9%로 업종 평균을 대폭 하회하며,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향 역시 각각 8.3%, 9.7%에 그쳐 지속적으로 저조한 수준. 동사는 최근 2년간 안정적인 순이익을 실현해 왔으며, 설비투자 소요에 비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현저히 부족하지 않음. 이에 현재 배당수준은 주주환원 여력 대비 과소하다는 판단이나, 26년도 2월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결의한 바 있고, 향후 배당성향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잔성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정관변경	2-1.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기타	9,527	0.00	9,527	-	-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상실될 조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안건으로 잔성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정관변경	2-2. 그 외 개정 상법 반영	기타	9,527	0.00	9,527	-	-	-	개정 상법의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안건으로 잔성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차선용)	기타	9,527	0.00	9,527	-	-	-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상 결격사유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전성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1.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정택균)	기타	9,527	0.00	9,527	-	-	-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상 결격사유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전성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2.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김정원)	기타	9,527	0.00	9,527	-	-	-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상 결격사유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전성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3.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최강국)	기타	9,527	0.00	9,527	-	-	-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상 결격사유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전성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후보: 김정규)	기타	9,527	0.00	9,527	-	-	-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상 결격사유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전성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고승범)	기타	9,527	0.00	9,527	-	-	-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상 결격사유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전성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7-1.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김정원)	기타	9,527	0.00	9,527	-	-	-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상 결격사유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7-2.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최강국)	기타	9,527	0.00	9,527	-	-	-	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상 결격사유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임원 보수	8.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9,527	0.00	9,527	-	-	-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전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찬성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자본구조	9.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기타	9,527	0.00	9,527	-	-	-	배당재원 확보를 위해 감액가능 자본준비금 내에서 감액하는 것은 결격사유 없음으로 찬성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정관변경	10.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기타	9,527	0.00	9,527	-	-	-	동사의 고유 임원제도인 '연구위원' 및 '자재임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가치 훼손 우려는 없으므로 찬성
유가증권	SK하이닉스	2026-03-25	자본구조	11. 2026년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	기타	9,527	0.00	9,527	-	-	-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은 최대 300,000주를 내년도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또한 전체 발행주식수의 약 0.19%에 해당하는 잔여 자기주식은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추후 사용할 것이며, 그 구체적 계획은 20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할 예정. 1) 처분 후 잔여 보유 자기주식의 비중이 높지 않고, 2) 분석기업이 2026년 2월 이미 1,530만주의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기주식과 관련한 시장의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이며, 3) 미소각 보유 자기주식의 목적을 임직원 보상으로 명시하였기에 본 안건과 관련한 기업가치 훼손 우려 낮으며, 이에 찬성

유가증권	한국전력	2026-03-25	결산 및 배당	1. 2025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안) 승인의 건	기타	13,274	0.00	13,274	-	-	-	2025년 배당성장은 11.6%로 업종 평균 20.5%를 하회하지만,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장은 각각 15.6%, -5.0%를 기록하고 있음. 이를 감안할 때, 현행 배당 규모가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이러한 재무적 맥락을 전제로, 영업이익 및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주이, 최근 설비투자 규모, 현재 부채비율 등 제반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배당 수준은 분석기업의 실질적인 재무 여건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분석기업의 배당 수준과 관련하여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는 발견되지 않아 찬성.
유가증권	한국전력	2026-03-25	임원 보수	2. 2026년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13,274	0.00	13,274	-	-	-	이사회회의 규모를 15명(사내이사 7명, 사외이사 8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당기 21.73억 원에서 차기 22.08억 원으로 증가시킨 건. 사내에서 1인당 실지금액은 전기 1.4억 원에서 당기 2.1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 대비 보수한도는 12배를 보였으며 당기 실지금액 대비 차기 보수한도는 3.3배 이하로 책정되었음. 또한, 경영성과(전기대비 영업이익)는 전기 8조3,647억 원에서 당기 13조 4,906억 원으로 상승하는 등 기업의 경영성과 개선과 함께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이 증가했었음. 이를 바탕으로 이사 보수 실지금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고 있으며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한국전력	2026-03-25	정관변경	3. 정관 변경의 건	기타	13,274	0.00	13,274	-	-	-	정관 제4조, 제26조의2, 제28조의3, 제32조, 제35조, 제37조의2 변경안은 2025년 10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각 해당 부서 명칭을, 산업동성장비류장관은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관 변경은 주주가지 보호 및 제고 측면에서 중립적 내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26년부터 개정 상법의 본격 시행과 더불어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강조되는 흐름에서, 이러한 변경은 기업이 경영 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수용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서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찬성. 정관 제15조 변경안은 주주명부의 폐쇄절차 및 기준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건. 배당기준일을 배당금확정일 의결 이후로 지정하여 주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와 배당을 수령할 권리를 분리하여 배당기준일을 배당확정일 이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건으로 주주가지 보호 및 주주권 행사 측면에서 적절한 변경이라고 할 수 있어 찬성. 정관 제51조 변경안은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이 안내됨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고, 기준일을 정한 경우 기준일의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변경하는 건. 금번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도입되어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일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은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배당받을 주주가 주주총회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주주가 아닌 자가 배당 관련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KB금융	2026-03-26	결산 및 배당	1. 2025 회계연도(2025.1.1~2025.12.31)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및 이익배당 (안) 승인의 건	기타	7,980	0.00	7,980	-	-	-	<p>재무제표 승인 및 배당 수준에 관해 기업가치 및 주주권의 훼손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p> <p>KB금융의 2025년 배당성향은 27.0%로 업종평균(36.2%)을 하회하나,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향은 각각 25.4%, 25.6%를 기록함. 현행 배당 규모가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소극적이라 판단하기 어려움.</p> <p>KB금융은 2025년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이행현황을 공시(2025.04.25)하여 주주환원 정책을 대외적으로 표명하였으며, 2024년과 2025년 꾸준히 자기주식 소각 및 매입을 실시함.</p> <p>【배당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연간 총 배당금: 15,778억원 (전기 12,003억원 대비 +31.5%) 2025년 주당배당금: 4,367원 (중간 2,762원 + 결산 1,605원) 2025년 배당성향: 27.0% / 5년 평균 25.6% 영업이익: 2025년 8조 5,177억원 (전기 8조 453억원 대비 +5.9%) 영업이익률: 10.5% (전기 9.4%) 지배주주순이익: 5조 8,332억원 (전기 5조 782억원 대비 +14.8%) 부채비율: 1,248.3% 설비투자/영업현금흐름: 13.1% (전기 15.6%)
유가증권	KB금융	2026-03-26	정관변경	2. 정관 변경의 건	기타	7,980	0.00	7,980	-	-	-	<p>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법 제461조의2에 의거 배당제한 확보를 위해 감액 가능한 자본준비금 내에서 감액하는 것임.</p> <p>【자본준비금 감액 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A): 16조 1,884억원 자본금(B): 2조 906억원 최소 법정준비금(B×150%): 3조 1,359억원 감액 가능 자본준비금(A-B×150%): 13조 526억원 감액 가능 자본준비금 감액 규모: 7조 5,000억원 (감액 가능 한도 대비 57.5%) <p>감액 규모가 상법상 허용 한도 내에 있으며, 이익잉여금 전환을 통한 향후 배당제한 확충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p>
유가증권	KB금융	2026-03-26	자본 구조	3.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기타	7,980	0.00	7,980	-	-	-	<p>개정 상법 취지에 부합하는 정관 정비 사항으로 주주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음.</p> <p>정관 제26조 제2항 신설(2027.01.01. 시행)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 법적 근거 마련 (상법 제542조의14) — 일반주주 참여 활성화 및 주주권 행사 용이화 측면에서 긍정적</p> <p>정관 제31조 제2항 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시 증명 문서 범위에 전자문서 포함 (상법 제368조) — 주주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p> <p>정관 제42조 제1항 제3항 변경: 이사 총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총주주 이익 보호 및 공평 대우 의무 구체화 (상법 제382조의3) — 이사회 책임성 강화</p> <p>부칙, 제26조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27.01.01.부터 시행</p>

유가증권	KB금융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1. 사외이사 최재홍 선임의 건	기타	7,980	0.00	7,980	-	-	-	<p>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법령 위반(징계) 등 사외이사 선임 상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음.</p> <p>【후보자 주요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직: 가천대학교 스타트업칼리지 교수 (2023.9~현재) 전직: (재)강원강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2022.5~2025.2) 전직: 강릉원주대학교 멀티미디어융합과 교수 (1992.9~2023.8) 전직: (주)카카오 사외이사 (2014.10~2020.2) KB금융 사외이사 재직: 2022.03~현재 (재선임, 임기 1년) 이사회 출석률: 2025년 13/13(100%) IT 디지털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며 이사회 참석률이 양호함.
유가증권	KB금융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2. 사외이사 이명활 선임의 건	기타	7,980	0.00	7,980	-	-	-	<p>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법령 위반(징계) 등 사외이사 선임 상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음.</p> <p>【후보자 주요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8.4~현재) 전직: 한국금융연구원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장 (2023.3~2024.7) 전직: 우리금융캐피탈 사외이사 (2021.9~2024.3) 전직: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2019.11~2022.11) 전직: 저축은행중앙회 전문이사,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 등 KB금융 사외이사 재직: 2024.03~현재 (재선임, 임기 1년) 이사회 출석률: 2024년 8/8(100%), 2025년 13/13(100%) 금융 정책 및 감독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며 이사회 참석률이 양호함.
유가증권	KB금융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3. 사외이사 서정호 선임의 건	기타	7,980	0.00	7,980	-	-	-	<p>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법령 위반(징계) 등 사외이사 선임 상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음.</p> <p>【후보자 주요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직: 법무법인 더위즈 대표변호사 (2025.12~현재) 현직: 서울지방국세청 법률고문 (2025.5~현재) 현직: 기획재정부 국제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23.2~현재) 전직: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21.2~2025.1) 전직: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2022.3~2024.2) 전직: (주)현대캐피탈 사외이사, (주)한화솔루션 사외이사 등 KB금융 신규선임 (임기 2년) 결임 수: 1개 (한화솔루션 사외이사는 2026년 3월 임기만료로 검칙수 제외), 법률·세무 분야 전문성과 금융감독 관련 위원회 경력률 보유함.

유가증권	KB금융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화준 선임의 건	기타	7,980	0.00	7,980	-	-	-	<p>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법령 위반(징계) 등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상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음.</p> <p>【후보자 주요 이력】</p> <p>전직: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감사 (2017.4~2023.3)</p> <p>전직: (주)풀무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2016.6~2022.3)</p> <p>전직: KT Capital 대표이사 (2014.2~2015.9)</p> <p>KB금융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재직: 2023.03~현재 (재선임, 임기 1년)</p> <p>이사회 출석률: 2025년 13/13(100%)</p> <p>금융 및 경영 감사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며 이사회 참석률이 양호함.</p>
유가증권	KB금융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성용 선임의 건	기타	7,980	0.00	7,980	-	-	-	<p>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법령 위반(징계) 등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상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음.</p> <p>【후보자 주요 이력】</p> <p>현직: 상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6.6~현재)</p> <p>전직: 한국ESG기준원 기업지배구조연구위원회 위원 (2019.9~2022.9)</p> <p>전직: 서울보증보험 사외이사 (2017.1~2019.12)</p> <p>전직: 우리은행 사외이사 (2016.3~2016.12)</p> <p>전직: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2012.11~2015.11)</p> <p>KB금융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재직: 2023.03~현재 (재선임, 임기 1년)</p> <p>이사회 출석률: 2025년 13/13(100%)</p> <p>법률 지배구조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며 이사회 참석률이 양호함.</p>
유가증권	KB금융	2026-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7-1.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의원 김선엽 선임의 건	기타	7,980	0.00	7,980	-	-	-	<p>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법령 위반(징계) 등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상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음.</p> <p>【후보자 주요 이력】</p> <p>현직: 이청회계법인 대표 (2022.9~현재)</p> <p>전직: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2018.1~2025)</p> <p>전직: (주)범스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2021.3~2025.2)</p> <p>전직: 안진회계법인 금융사업/전략본부장 (2016.1~2018.12)</p> <p>KB금융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재직: 2025.03~현재 (재선임, 임기 1년)</p> <p>이사회 출석률: 2025년 9/9(100%)</p> <p>회계 감사 분야 전문성과 금융기관 대상 감사 경험을 보유함.</p>

유가증권	KB금융	2026-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7-2.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서정호 선임의 건	기타	7,980	0.00	7,980	-	-	-	<p>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법령 위반(징계) 등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상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음.</p> <p>【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직: 법무법인 더위즈 대표변호사 (2025.12~현재) - 현직: 서울지방국세청 법률고문 (2025.5~현재) - 현직: 기획재정부 국제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 (2023.2~현재) - 전직: 금융위원회의 법령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 (2021.2~2025.1) - 전직: 금융감독원 재정심의위원회 위원 (2022.3~2024.2) - 전직: (주)판다캐피탈 사외이사; (주)한화솔루션 사외이사 등 - KB금융 신규선임 (임기 1년) <p>검임 수: 1개 (한화솔루션 사외이사는 2026년 3월 임기만료로 검직수 제외). 법률·세무 분야 전문성과 금융 관련 감독기관 위원 경력을 보유함.</p>
유가증권	KB금융	2026-03-26	임원 보수	8.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기타	7,980	0.00	7,980	-	-	-	<p>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p> <p>KB금융은 이사회 규모를 9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7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전기와 동일한 30억원으로 동결함. 사내이사 1인당 실질금액은 전기 9.2억원에서 당기 6.4억원으로 -31.2% 감소하였으며, 실질금액 대비 보수한도는 2.1배 수준임.</p> <p>【보수한도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보수한도(FY26): 30억원 (FY25 30억원과 동일) - 비사외이사 수: 2명 - 비사외이사 1인당 보수한도: 13.3억원 - 비사외이사 1인당 실질금액(FY25): 6.4억원 (전기 9.2억원 대비 -31.2%) - 실질금액 대비 보수한도: 2.1배 (기준치 3.3배 이하 충족) - 영업이익(FY25): 8조 5,177억원 (전기 8조 453억원 대비 +5.9%) - TSR(FY25): 55.7% <p>경영성과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 1인당 실질금액이 감소하였으며,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함</p>
유가증권	KT&G	2026-03-26	결산 및 배당	1. 제39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기타	4,244	0.00	4,244	-	-	-	<p>2025년 배당성향은 57.5%로 업종 평균을 상회하며,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향은 각각 57.2%, 57.5%를 기록하고 있음.</p> <p>이를 감안할 때, 현행 배당 규모가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영업이익 및 영업활동현금 흐름의 주이, 최근 설비투자 규모, 부채비율 등 제반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배당 수준은 분석기업의 실질적인 재무 여건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5년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2025.09.23)하여 주주환원 정책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바 있으며, 자기주식 소각 및 매입을 실시하는 등 주주환원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하는 등 당 수준과 관련하여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는 발견되지 않아 전성.</p>

유가증권	KT&G	2026-03-26	정관변경	2-1. 정관 일부 변경의 건_목적사업 추가	기타	4,244	0.00	4,244	-	-	<p>사업 목적으로 '인쇄 및 인쇄관련 사업, 제1호부터 제51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연구사업'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세종공정 상업생산 추진을 위한 목적사업 추가라고 적시하고 있음.</p> <p>추가되는 사업목적은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고, 사업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분석기업의 수익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변경으로 보이며 추가된 사업목적에서 주주가지 훼손 가능성이 있는 특이점을 찾을 수 없어 찬성.</p>
유가증권	KT&G	2026-03-26	정관변경	2-2.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건	기타	4,244	0.00	4,244	-	-	<p>정관 제17조 제4항 변경안은 개정 상법에 따라 2027.01.01.부터 시행되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비하여,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 법적 근거를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는 건.</p> <p>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는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주 권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므로 해당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p> <p>정관 제17조 제5항 신설 변경안은 조항 신설에 따른 순번 변경과 함께 "주주총회는 대표이사인 사장이 소집한다. 다만, 사장이 유고한 때에는 제28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것으로 이는 대표이사 유고시 주주총회 의장 선임 절차를 명확화하기 위함으로 해당 정관 변경에 따른 주주가지 훼손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p> <p>정관 제21조 변경안은 개정 상법 제368조 제2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제출하는 증명 문서의 범위에 기존의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정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결권 행사 과정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p>
유가증권	KT&G	2026-03-26	정관변경	2-3. 사외이사 명칭 변경의 건	기타	4,244	0.00	4,244	-	-	<p>정관 제25조, 제26조, 27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4조의5, 제35조, 제36조 변경안은 개정 상법(2025.07.22.공포)에 따라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하는 건.</p> <p>이는 사외이사를 단순한 외부 인사가 아닌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 재정의함으로써 그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p>

유가증권	KT&G	2026-03-26	정관변경	2-4. 집중투표 규정 정비의 건	기타	4,244	0.00	4,244	-	-	-	정관 제26조 제4항 변경안은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사장과 그 외의 이사를 별개의 조로 구분"하던 기존 정관 조항(제26조 제6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되므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상실될 조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회사의 내부 규범과 상위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 선제적으로 정관을 정비하는 것은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결의 효력 다툼 등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매우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KT&G	2026-03-26	정관변경	2-5.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의 건	기타	4,244	0.00	4,244	-	-	-	정관 제26조 제7항 변경안은 분리선출 감사위원 위원을 2인 이상으로 변경하는 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의 입법 취지는 선임 단계에서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능을 충실히 하고,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임. 상법은 분리선출 감사위원 위원을 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감사위원의 독립성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크고,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가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당 연구소는 해당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KT&G	2026-03-26	정관변경	2-6. 사내이사 및 경영임원 퇴직금지금규정 정비의 건	기타	4,244	0.00	4,244	-	-	-	정관 제31조, 제28조 제3항 변경안은 사내이사 및 경영임원 퇴직금 규정 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임원퇴직금지금규정으로 정관 해당 조항 문구를 변경 정비하는 내용의 건. 사내이사와 경영임원의 퇴직금지금규정이 통합됨에 따른 변경은 정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조치로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KT&G	2026-03-26	정관변경	2-7.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에 관한 규정 신설 (기업에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6966)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상정. 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지 않는 경우 자동 폐기)	기타	4,244	0.00	4,244	-	-	-	<p>정관 제10조 신설 변경안은 2026년 3월 6일 공포·즉시 시행된 개정 상법에 대응하여, 일정한 경영상 목적 아래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신설하는 내용의 건.</p> <p>개정 상법 제341조의4는 자기주식의 원칙적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규정하되, 이사회가 수립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보유처분을 허용하고 있음.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에 따른 활용은 정관상 근거를 전제로 하며, 자기주식 처분 시에는 신주발행 관련 규정이 준용되어 절차적 통제가 병행됨. 해당 변경안으로 자기주식의 독자적 임의적 보유처분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행은 목적수행기간이 특정된 개별 계획에 대한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전제로 하게 되기에 주주가지 훼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p> <p>정관 부칙 제1조~제3조 신설 변경안은 가결 시 총회의 소집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제17조 및 제21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제25조 내지 제27조(제26조 제6, 7항 개정 제외한다.),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4조의5, 제35조, 제36조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여타 조항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의 건으로 이는 정관 효력 개시일을 둘러싼 해석상 차이를 예방하고, 변경된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혼선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 찬성.</p>
유가증권	KT&G	2026-03-26	정관변경	3. 사내이사의 퇴직금지규정 개정의 건 (제2-6호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자동 폐기)	기타	4,244	0.00	4,244	-	-	-	<p>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의 건의 요지는 경영성과금 퇴직연금 적립제도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이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임원의 퇴직금이 매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계좌에 연간 월 기본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에 300%를 공한 금액임을 명시하였음.</p> <p>연간 월기본연봉의 12분의 1 합계금액 × 300%은 퇴직금 지급률 3배에 해당하므로 분석기업이 제시한 제임 중의 직 변경 및 부치는 향후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찬성.</p>
유가증권	KT&G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사외이사 노환용 선임의 건	기타	4,244	0.00	4,244	-	-	-	<p>후보자(노환용)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p>

유가증권	KT&G	2026-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감사위원회 위원 노환용 선임의 건	기타	4,244	0.00	4,244	-	-	-	후보자(노환용)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정 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KT&G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한승수 선임의 건 (제2-5호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자동 폐기)	기타	4,244	0.00	-	4,244	-	-	후보자(한승수)는 KT&G(분식기업) 외 LG에너지솔루션(25 사업보고서), 넬름(25 9월 분기보고서) 등, 분식기업을 포함해 총 3개 회사의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음. 이는 과도한 겸임으로 분식기업에서 중실의무 수행이 어려울 우려가 있으며,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반대.
유가증권	KT&G	2026-03-26	임원 보수	7. 이사 보수한도 승인 의 건	기타	4,244	0.00	4,244	-	-	-	이사회는 규모를 8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6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당기 50억 원에서 차기 60억 원으로 증가시킨 건.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은 전기 22.0억 원에서 당기 9.1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 대비 보수한도는 3.1배를 보였음. 당기 실지금액 대비 차기 보수한도는 3.3배 이하로 책정되었고 전기 대비 당기의 경영성과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이 감소하였기에 분식기업의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KT&G	2026-03-26	자본 구조	8. 자기주식보유저분계획서 승인의 건 (기업에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6966)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상정. 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주총회 전에 시행되지않는 경우 자동 폐기)	기타	4,244	0.00	4,244	-	-	-	2026년 3월 6일 공포·시행된 상법은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하도록 하고,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 중인 기존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내 소각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임직원 보상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작성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음. 기 보유 자기주식수 10,866,189주 전량을 소각할 예정이며, 임직원 성과보상 목적으로 보통주 최대 30,000주를 장내 신규 취득하여 처분할 예정이며,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신규취득 예정인 자기주식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성과평가 완료 후 보상규모가 확정되는 시점에 처분할 예정으로 처분물량 및 처분 시점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이를 종합할 때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의 투명성과 주주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LS ELECTRIC	2026-03-26	결산 및 배당	1. 제52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843	0.00	843	-	-	-	2025년 배당성향은 31.6%로 업종 평균(18.1%)을 상회하며,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향은 각각 35.4%, 35.4%를 기록 중. 이는 LS ELECTRIC이 일정 수준의 주주환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행 배당 수준이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재무적 맥락을 전제로 LS ELECTRIC의 영업이익 및 영업활동금흐름의 추이, 설비투자 규모,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근 매출 및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부채비율은 136.0% 수준으로 재무구조가 과도하게 취약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LS ELECTRIC의 배당 수준은 기업의 재무적 여건 및 주주환원 정책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배당 수준 과 관련하여 기업가치 또는 주주권의 훼손의 우려는 발견되지 않아 찬성
유가증권	LS ELECTRIC	2026-03-26	정관변경	2-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목적사업 추가)	기타	843	0.00	843	-	-	-	LS ELECTRIC이 사업 목적으로 '데이터센터업' 등을 추가하고자 함. 정관에 추가되는 사업목적은 LS ELECTRIC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고 LS ELECTRIC의 사업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LS ELECTRIC의 수익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변경이라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LS ELECTRIC	2026-03-26	정관변경	2-2. 주식분할 (액면분할)의 건	기타	843	0.00	843	-	-	-	본 건은 발행가능주식수의 상한을 조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 신주 발행은 향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별도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정관 변경 자체로 즉각적인 주주권 희석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회사 표준정관 권고사항과 향후 액면분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발행 가능주식 수를 10억주 수준으로 조정할 것으로 파악. 본 정관 변경이 주주권의 또는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한적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LS ELECTRIC	2026-03-26	정관변경	2-3. 전자주주총회 근거 등의 마련의 건	기타	843	0.00	843	-	-	-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제출하는 증명 문서의 범위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건. 기존 서면 제출만 가능했던 상황에서 전자문서를 포함하게 된다면 의결권 행사 과정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유가증권	LS ELECTRIC	2026-03-26	정관변경	2-4.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의 건	기타	843	0.00	-	843	-	-	본 안건은 이사 수를 현행 "3인 이상 9인 이내"에서 "3인 이상 5인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임. 일반적으로 이사회 규모가 지나치게 클 경우 의사결정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규모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사 수의 상한을 축소하는 경우 향후 선임 가능한 이사 수 자체가 감소하게 되어 주주가 이사 선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집중투표제나 주주제안 등을 통한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유가증권	LS ELECTRIC	2026-03-26	정관변경	2-5. 집중투표제 배제금지 조항 삭제의 건	기타	843	0.00	843	-	-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상실될 조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회사의 내부 규범과 상위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찬성
유가증권	LS ELECTRIC	2026-03-26	정관변경	2-6.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	기타	843	0.00	843	-	-	-	사외이사를 단순한 외부 인사가 아닌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 재정의함으로써 그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LS ELECTRIC	2026-03-26	정관변경	2-7.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상향의 건	기타	843	0.00	843	-	-	-	감사위원회의 핵심 구성원(독립이사)을 선임하는 단계에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상법의 취지를 구현하여,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영향력이 감사위원 구성에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을 완화하고 감사 기능의 필요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특히 분리선임 대상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이사회 내 통제·감독 기능을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LS ELECTRIC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구자균)	기타	843	0.00	843	-	-	-	후보자(구자균)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정계) 등 지칭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LS ELECTRIC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장길수)	기타	843	0.00	843	-	-	-	후보자(장길수)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정계) 등 지칭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LS ELECTRIC	2026-03-26	임원 보수	5. 이사 보수현도 승인의 건	기타	843	0.00	843	-	-	-	경영상과거 전기 대비 개선된 가운데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은 전기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사 보수가 경영성과 변화와 일정 부분 연계되어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LS ELECTRIC	2026-03-26	자본 구조	6. 자기 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기타	843	0.00	-	843	-	<p>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에 대한 처분기간 및 처분 시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처분 후 나머지 물량의 구체적인 처분 시점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 자기주식 보유가 소각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유 종량의 필요성과 활용 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나, 본 계획은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기주식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급 구조 및 처분 일정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해당 보유 규모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주주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이에 본 안건이 자기주식 보유의 필요성 및 활용 계획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주주가 지혜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p>
유가증권	신한지주	2026-03-26	결산 및 배당	1. 제25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10,659	0.00	10,659	-	-	<p>재무제표 승인 및 배당 수준에 관해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신한지주의 2025년 배당성향은 25.1%로 업종 평균을 상회하며,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향은 각각 24.7%, 24.4%를 기록함. 현행 배당 규모가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소극적이라 판단하기 어려움. 신한지주는 2024년 7월과 2025년 4월 연이어 기업가치제고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주환원을 42% 이상 목표 설정 및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하는 환원 계획을 표명하였으며, '24년 이래 6차례의 자기주식 소각을 진행함. 【배당 현황】 - 2025년 연간 총 배당금: 12,465억원 (전기 10,880억원 대비 +14.6%) - 2025년 주당배당금: 2,590원 (중간 1,710원 + 결산 880원) - 2025년 배당성향: 25.1% / 5년 평균 24.4% - 영업이익: 2025년 7조 234억원 (전기 6조 4,587억원 대비 +8.7%) - 영업이익률: 10.9% (전기 8.7%) - 지배주주순이익: 4조 9,716억원 (전기 4조 4,502억원 대비 +11.7%) - 부채비율: 1,252.0% - 설비투자/영업편모음: 6.5% (전기 16.8%)</p>
유가증권	신한지주	2026-03-26	결산 및 배당	2.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기타	10,659	0.00	10,659	-	-	<p>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법 제461조의2에 의거 배당제한 확보를 위해 감액 가능한 자본준비금 내에서 감액하는 것임 【자본준비금 감액 내역】 -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A): 14조 3,203억원 - 자본금(B): 2조 9,696억원 - 최소 법정준비금(B×150%): 4조 4,544억원 - 감액 가능 자본준비금(A-B×150%): 9조 8,659억원 - 금년 자본준비금 감액 규모: 9조 8,659억원 (감액 가능 한도 전액 활용) - 감액 가능 한도 전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구조로, 향후 배당제한 완화 및 주주환원 여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p>

유가증권	신한지주	2026-03-26	정관변경	3.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기타	10,659	0.00	10,659	-	-	-	<p>개정 상법 취지에 부합하는 정관 정비 사항으로 주주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음.</p> <p>정관 제26조 변경: 2027.01.01. 시행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관련 소임특지 내용 추가 (상법 제542조의14)</p> <p>정관 제27조 변경: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 법적 근거 마련 — 주주 참여 활성화 및 주주권 행사 용이화 측면에서 긍정적</p> <p>정관 제32조 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시 증명 문서 범위에서 전자문서 포함 (상법 제368조)</p> <p>정관 제36조 변경: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상법 제542조의8) — 이사회 독립적 감독 기능 강화 취지</p> <p>정관 제43조 변경: 이사 중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총주주 이익 보호 및 공명 대응 의무 구체화 (상법 제382조의3)</p> <p>정관 제51조 제5항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1명→2명으로 상향 (상법 제542조의12, 2026.09.10. 시행) —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감시 기능 실질화</p> <p>부칙: 제26조·제27조·제32조는 2027.01.01., 제36조 제1항은 2026.07.23., 여타 조항은 2026.03.26.부터 시행</p>
유가증권	신한지주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1. 이사후보(사내이사) 진옥동 선임의 건	기타	10,659	0.00	10,659	-	-	-	<p>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법령 위반(징계) 등 사내이사 선임 상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음.</p> <p>【후보자 주요 이력】</p> <p>· 현직: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2023.03-현재)</p> <p>· 전직: 신한은행 은행장 (2019.03-2022.12)</p> <p>· 전직: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 (2017.03-2018.12)</p> <p>· 전직: SBI은행 법인장 (2015.06-2016.12)</p> <p>· 이사회 출석률: 2023~2025년 각 14/14(100%) — 직전 3년 평균 100%</p> <p>【참고사항】</p> <p>①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주의적 경고' 처분. 해당 펀드 판매는 후보자 취임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직접적 관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임원 자격에 제한이 없는 경정계임</p> <p>② 2024년 8월 자회사 신한투자증권 ETF LP 금융사고.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자회사 실무 부서 직원 일탈에 기인한 측면이 강함</p> <p>후보자는 금융지주 최초의 소비자보호부문 신설 및 그룹 소비자보호위원회 제도화, 금융권 최초의 책무구조도 선제적 도입 등 내부통제 거버넌스 재설계를 주도함.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홍콩 H지수 ELS 관련 과징금 사전 통보와 관련하여, 신한은행이 최종 처분 확정 이전 임에도 예상 과징금 상당의 50%를 선제적으로 중당금에 반영하고 자율배상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점에서 법적 해석도 미확정 상황임. 이상을 종합할 때 재선임을 지지할 만한 중대한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p>
유가증권	신한지주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2. 이사후보(사외이사) 김조설 선임의 건	기타	10,659	0.00	10,659	-	-	-	<p>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법령 위반(징계) 등 사외이사 선임 상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음.</p> <p>【후보자 주요 이력】</p> <p>· 현직: 한국대통령자문 민주영화통일자문회의 위원 (2025.11-현재)</p> <p>· 현직: 동북아시아학회 상임이사 겸 회장 (2023.10-현재)</p> <p>· 현직: 오사카상업대학 경제학부 교수 (2020.04-현재)</p> <p>· 전직: 나가노현 인권정책심의회 위원·위원장 (2007.12-2018.03)</p> <p>· 신한지주 사외이사 재직: 2022.03-현재 / 이사회 출석률 2025년 14/14(100%)</p> <p>【참고사항】</p> <p>자회사인 신한은행은 홍콩 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당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받은 바 있음. 자회사에서 발생한 제재를 지주사 임원에게 온전히 귀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점에서 법적 해석도 확정된 상황이 아님. 신한지주는 금융권 최초의 책무구조도 도입, 소비자보호부문 신설 등 내부통제 거버넌스 재설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온 점을 감안할 때 등 사안을 재선임의 중대한 결격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p>

유가증권	신한지주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3. 이사후보(사외이사) 배론 선임의 건	기타	10,659	0.00	10,659	-	-	-	<p>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법령 위반(징계) 등 사외이사 선임 상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음.</p> <p>【후보자 주요 이력】 현직: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2003~현재) 전직: 재일한국인변호사협회(LAZAK) 공동대표 (2002~2006) 일본 사법시험 합격 (1985), 일본 공인회계사보 등록 (1979) 신한지주 사외이사 재직: 2021.03~현재 / 감사위원: 2022.03~현재 이사회 출석률: 2025년 14/14(100%)</p> <p>【참고사항】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홍콩 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당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받은 바 있음. 자회사에서 발생한 제재를 지주사 임원에게 온전히 귀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점에서 법적 해석도 확정된 상황이 아님. 신한지주는 금융권 최초의 채무구조도 도입, 소비자보호부문 신설 등 내부통제 거버넌스 재설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온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안을 재선임의 중대한 결격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p>
유가증권	신한지주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4. 이사후보(사외이사) 송성주 선임의 건	기타	10,659	0.00	10,659	-	-	-	<p>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법령 위반(징계) 등 사외이사 선임 상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음.</p> <p>【후보자 주요 이력】 현직: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이사 (2022.04~현재) 현직: 한국보험학회 이사 (2019.06~현재) 현직: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2008.03~현재) 전직: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자문교수 (2018.06~2021.05) 신한지주 사외이사 재직: 2024.03~현재 이사회 출석률: 2024년 12/12(100%), 2025년 14/14(100%)</p> <p>【참고사항】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홍콩 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당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받은 바 있음. 자회사에서 발생한 제재를 지주사 임원에게 온전히 귀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점에서 법적 해석도 확정된 상황이 아님. 신한지주는 금융권 최초의 채무구조도 도입, 소비자보호부문 신설 등 내부통제 거버넌스 재설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온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안을 재선임의 중대한 결격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p>
유가증권	신한지주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5. 이사후보(사외이사) 최영권 선임의 건	기타	10,659	0.00	10,659	-	-	-	<p>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법령 위반(징계) 등 사외이사 선임 상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음.</p> <p>【후보자 주요 이력】 현직: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2022.09~현재) 전직: 우리자산운용 대표이사 (2019.08~2023.03) 전직: 하이자산운용 대표이사 (2017.03~2019.07) 전직: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 (2014.07~2017.03) 신한지주 사외이사 재직: 2024.03~현재 이사회 출석률: 2024년 12/12(100%), 2025년 14/14(100%)</p> <p>【참고사항】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홍콩 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당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받은 바 있음. 자회사에서 발생한 제재를 지주사 임원에게 온전히 귀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점에서 법적 해석도 확정된 상황이 아님. 신한지주는 금융권 최초의 채무구조도 도입, 소비자보호부문 신설 등 내부통제 거버넌스 재설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온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안을 재선임의 중대한 결격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p>

유가증권	신한지주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6. 이사후보(사외이사) 박종복 선임의 건	기타	10,659	0.00	10,659	-	-	-	<p>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법령 위반(징계) 등 사외이사 선임 상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음.</p> <p>【후보자 주요 이력】</p> <p>전직: SC그룹 Senior Adviser (2025.01~2026.01)</p> <p>전직: SC제일은행 은행장 (2015.01~2025.01, 약 10년)</p> <p>전직: SC제일은행 리테일금융총괄본부장 (2014.04~2015.09)</p> <p>전직: SC제일은행 소매채널사업본부장 (2011.10~2014.04)</p> <p>신한지주 신규선임 (임기 2년)</p> <p>10년간 SC제일은행 행정직 수행을 통해 금융기관 경영 및 리테일금융 분야 전문성을 보유함.</p>
유가증권	신한지주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5-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박승근 선임의 건	기타	10,659	0.00	10,659	-	-	-	<p>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법령 위반(징계) 등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상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음.</p> <p>【후보자 주요 이력】</p> <p>현직: 상정회사협의회 지배구조차문위 위원장 (2019.04~현재)</p> <p>현직: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2018.09~현재)</p> <p>전직: 제인법인 한국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2015.02~2026.01)</p> <p>전직: 롯데지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2017.10~2021.03)</p> <p>신한지주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재직: 2021.03~현재</p> <p>이사회 출석률 2025년 14/14(100%)</p> <p>【참고사항】</p> <p>자회사인 신한은행은 홍콩 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당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받은 바 있음.</p> <p>자회사에서 발생한 제재를 지주사 임원에게 온전히 귀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점에서 법적 해석도 확정된 상황 아님. 신한지주는 금융권 최초의 채무구조도 도입, 소비자보호부문 신설 등 내부통제 거버넌스 재설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온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안을 재선임의 중대한 결격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p>
유가증권	신한지주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5-2.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임승연 선임의 건	기타	10,659	0.00	10,659	-	-	-	<p>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법령 위반(징계) 등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상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음.</p> <p>【후보자 주요 이력】</p> <p>현직: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장 (2026.02~현재)</p> <p>현직: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11.09~현재)</p> <p>전직: (주)카카오게임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2023.03~2026.03)</p> <p>秉 공인회계사 (2002.09 등속)</p> <p>신한지주 신규선임 (임기 1년)</p> <p>회계·재무 분야 전문성(미국 CPA)과 상장사 감사위원 실무 경험을 보유함.</p>

유가증권	신한지주	2026-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6-1.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배분 선임의 건	기타	10,659	0.00	10,659	-	-	-	<p>과다 감입, 기업가치 훼손, 법령 위반(징계) 등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상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음.</p> <p>【후보자 주요 이력】</p> <p>현직: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2003~현재)</p> <p>전직: 재일한국인변호사협회(LAZAK) 공동대표 (2002~2006)</p> <p>일본 사법시험 합격 (1985), 일본 공인회계사보 등록 (1979)</p> <p>신한지주 감사위원 재직: 2022.03~현재</p> <p>이사회 출석률 2025년 14/14(100%)</p> <p>법률·회계 이중 전문성을 보유하며 감사위원회 기능 수행에 적합함.</p>
유가증권	신한지주	2026-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6-2.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최영권 선임의 건	기타	10,659	0.00	10,659	-	-	-	<p>과다 감입, 기업가치 훼손, 법령 위반(징계) 등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상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음.</p> <p>【후보자 주요 이력】</p> <p>현직: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2022.09~현재)</p> <p>전직: 울리자산운용 대표이사 (2019.08~2023.03)</p> <p>전직: 헤이자산운용 대표이사 (2017.03~2019.07)</p> <p>전직: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담당 (2014.07~2017.03)</p> <p>신한지주 사외이사 재직: 2024.03~현재</p> <p>이사회 출석률: 2024년 12/12(100%), 2025년 14/14(100%)</p> <p>자산운용업 대표이사 및 연기금 자금운용 경험을 보유하며, 금융 리스크 및 투자 분야 전문성이 감사위원회 기능 수행에 부합함.</p>
유가증권	신한지주	2026-03-26	임원 보수	7. 이사 보수제도 승인의 건	기타	10,659	0.00	10,659	-	-	-	<p>이사 보수제도 승인 안전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p> <p>신한지주는 이사회 규모를 11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9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전기와 동일한 30억원으로 동일함.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은 전기 7.6억원에서 당기 6.5억원으로 -14.7% 감소하였으며, 실지금액 대비 보수한도는 2.0배 수준임.</p> <p>【보수제도 검토 결과】</p> <p>- 전체 보수제도(FY26): 30억원 (FY25 30억원과 동일)</p> <p>- 비사외이사 수: 2명</p> <p>- 비사외이사 1인당 보수한도: 12.8억원</p> <p>- 비사외이사 1인당 실지금액(FY25): 6.5억원 (전기 7.6억원 대비 -14.7%)</p> <p>- 실지금액 대비 보수한도: 2.0배 (기준치 3.3배 미하 충족)</p> <p>- 영입이익(FY25): 7조 234억원 (전기 6조 4,587억원 대비 +8.7%)</p> <p>- TSR(FY25): 67.7%</p> <p>경영성과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이 감소하였으며,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함.</p>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결산 및 배당	1. 제31기(2025.1.1~2025.12.31)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현금배당: 주당 75원)	기타	4,954	0.00	-	4,954	-	-	2025년 배당성향은 6.6%로 업종 평균을 대폭 하회, 최근 5년 평균 배당성향은 6.1% 수준,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 상태에 있는 기업이 아니며, 설비투자 소요에 비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현저히 부족하여 주주환원이 불가피하게 제약되는 상황에도 미해당. 영업이익 및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주이, 최근 설비투자 규모, 현재 부채비율 등 재무적 제반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종업계 기업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행 배당 수준은 기업의 실질적인 주주환원 여력 대비 과소한 것으로 판단해 반대 의견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정관변경	2-1. 사업의 목적 변경의 건 (제2조)	기타	4,954	0.00	4,954	-	-	-	정관에 추가되는 사업목적은 분석기업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고, 분석기업의 사업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분석기업의 수익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변경으로 찬성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정관변경	2-2. 주주총회 기중일 변경의 건 (제13조)	기타	4,954	0.00	4,954	-	-	-	정관 제13조 제2항 신설안은 의결권 기준일 규정을 정비하여 주주총회를 결산기 직후 3월에 집중 개최하지 않고 다른 시기에 분산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 이러한 정관개정은 금융위원회가 2025년 11월 17일 발표한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의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주주총회 분산 개최 유도 방향과 부합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정관변경	2-3. 집중투표 배제 조항 변경의 건 (제24조, 부칙 제4조)	기타	4,954	0.00	4,954	-	-	-	정관 제24조 변경안은 2026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제542조의7 제3항)에 따라,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던 기존 정관 조항(제24조 제2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상실될 조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회사의 내부 규범과 상위 법령 간의 정합성 확보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정관변경	2-4. 의결권 대리행사의 증명 수단 변경의 건 (제20조, 부칙 제2조)	기타	4,954	0.00	4,954	-	-	-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제출하는 증명 문서의 범위에 기존의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정관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이는 의결권 행사 과정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정관변경	2-5.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 (제23조, 제27조 제3항, 제27조 제4항, 부칙 제3조)	기타	4,954	0.00	4,954	-	-	-	정관 부칙 변경안은 가결 시 제23조, 제27조 제3항, 제27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도록 단서를 두어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 정관 효력 개시일을 둘러싼 해석상 다름을 예방하고, 변경된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혼선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필요성 인정되므로 찬성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정관변경	2-6.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및 선.해임시 의결권 제한 강화의 건 (제27조 제7항, 제27조 제10항, 부칙 제5조)	기타	4,954	0.00	4,954	-	-	-	정관 제27조 제7항 변경안은 개정 상법에 따라 분리선임 방식으로 선임해야 할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것. 이는 감사위원회의 핵심 구성원(독립이사)을 선임하는 단계에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상법의 취지를 구현하여,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영향력이 감사위원 구성에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을 완화하고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특히 분리선임 대상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이사회 내 통제·감독 기능을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예상.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되므로 찬성 의견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정관변경	2-7.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의 건 (제23조 제1항)	기타	4,954	0.00	4,954	-	-	-	정관상 최대 이사 수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율에 속하므로 본 변경안이 법령에 직접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동사는 최근 10개년 평균 이사회 구성이 7인 내외였던 점을 감안할 때, 본 변경안은 실질적인 이사회 대폭 축소라기보다 실제 운영 실태를 정관에 반영하는 정비적 성격 강함. 또한 회사가 시·카카오등 중심의 핵심 사업 구조에 부합하는 기민한 의사결정 체계의 마련과 이사회 운영의 효율화를 개정 취지로 설명하는 점은, 현행 운영 규모와 정관상 상한 간의 괴리를 해소하여 이사회 구조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수긍 가능하므로 찬성 의견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정관변경	2-8. 기타 일부조항 변경의 건 (부칙 제1조)	기타	4,954	0.00	4,954	-	-	-	정관 부칙 제1조 변경안은 가결 시 제2조, 제13조, 제23조 제1항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도록 단서를 두어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정신아 사내이사 선임의 건 (2년)	기타	4,954	0.00	4,954	-	-	-	후보자(정신아)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정계) 등 지칭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 김영준 사외이사 선임의 건 (3년)	기타	4,954	0.00	4,954	-	-	-	후보자(김영준)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3. 차경진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년)	기타	4,954	0.00	4,954	-	-	-	후보자(차경진)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함준승, 3년)	기타	4,954	0.00	4,954	-	-	-	후보자(함준승)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김영준, 3년)	기타	4,954	0.00	4,954	-	-	-	후보자(김영준)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임원 보수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0억)	기타	4,954	0.00	4,954	-	-	-	이사회의 규모를 6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으로 축소하고 보수한도를 당기 60억 원에서 차기 60억 원으로 유지,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은 전기 11.5억 원에서 당기 11.6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 대비 보수한도는 2.5배 수준, 경영성과(전기 대비 영업이익)는 전기 4602억 원에서 당기 7320억 원으로 상승, 분석기업의 당기 실지금액 대비 자기 보수한도는 3.3배 이하로 책정, 분석기업의 경영성과 개선과 함께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 또한 소폭 증가, 따라서 분석기업의 이사 보수 실지금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고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자본 구조	7. 자기주식 소각의 건	기타	4,954	0.00	4,954	-	-	-	본 안건과 관련 지칭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발견할 수 없음. 분식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 중 일부인 1,420,723 주에 대해서만 임의/무상 소각할 예정임에 따라, 일반 주주의 소유주식에는 변동이 없음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자본 구조	8.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감액 승인의 건	기타	4,954	0.00	4,954	-	-	-	제8호 의안의 요지는 자본잉여금을 전입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자 함. 상법 제461조2에 의거, 배당제한 확보를 위해 감액가능 자본준비금 내에서 감액하는 것은 지칭상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유가증권	카카오	2026-03-26	자본 구조	9.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 승인의 건	기타	4,954	0.00	4,954	-	-	-	자기주식의 최종적인 활용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주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자의적 처분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찬성 의견

유가증권	현대글로벌비스	2026-03-26	결산 및 배당	1. 제25기(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1,236	0.00	1,236	-	-	-	2025년 배당성향은 25.1%로 업종 평균(12.1%)을 상회하며,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향은 각각 24.4%, 22.3%를 기록하고 있음. 이를 감안할 때, 현행 배당 규모가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이러한 재무적 맥락을 전제로, 영업이익 및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추이, 최근 설비투자 규모, 편제 부채비율 등 제반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성기업은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시현하고 있으며 영업활동현금흐름 역시 영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영업현금흐름 대비 과도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유가증권	현대글로벌비스	2026-03-26	정관변경	2-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의 건	기타	1,236	0.00	1,236	-	-	-	해당 정관 변경안은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의 문언과 취지를 정관에 반영하여, 이사의 직무수행 기준을 '회사 및 주주'로 명확히 하고, 나아가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임. 이는 개정 상법의 방향성과 정합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주권 보호 및 이사회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현대글로벌비스	2026-03-26	정관변경	2-2. 이사의 수 변경의 건	기타	1,236	0.00	1,236	-	-	-	해당 정관 변경안은 분성기업이 이사의 수를 3명 이상 9명 이하에서 3명 이상 10명 이하로 변경하는 건. 현행 법령에서 사외이사의 비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 이사회 규모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사회 규모의 탄력적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음. 다만, 이사의 수가 과소한 경우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과도한 경우 개별이사의 영향력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으나 해당 변경안의 이사회 규모는 과소하거나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현대글로벌비스	2026-03-26	정관변경	2-3. 현행 법률 반영 및 조문 정비의 건	기타	1,236	0.00	1,236	-	-	-	<p>현행 법률의 반영 및 정관 조문의 표현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1) 주주총회 소집통지 관련 규정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제15조 제2항), 2) 민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금지선, 한정자산' 용어를 '성년후견, 한정후견'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 용어를 현행화하는데 있음(제24조 제2,3항), 또한, 3)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에서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으로 구성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상법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였음(제39조 제1항), 4)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일 9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지, 해당 기준일로부터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로 금전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자본시장법상 절차를 반영하였으며(제44조 제2항), 5) 정관 시행일 또한 실제 개정 시점에 맞추어 정비하였음(부칙 제3조).</p> <p>이러한 변경은 주로 현행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문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술적 수정에 해당하며, 기업가치 또는 주주 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찬성.</p>
유가증권	현대글로벌비스	2026-03-26	정관변경	2-4.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기타	1,236	0.00	1,236	-	-	-	<p>해당 정관 변경안은 개정 상법(제542조의7 제3항)에 따라,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던 기존 정관 조항(제21조 제3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건.</p> <p>기존 배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개정법 시행 이후 제도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주주와 회사 모두에게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개정법이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설계된 만큼,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 선제적으로 정관을 정비하는 것은 주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결의 효력 다툼 등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매우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p>
유가증권	현대글로벌비스	2026-03-26	정관변경	2-5. 사외이사 명칭 변경의 건	기타	1,236	0.00	1,236	-	-	-	<p>정관 제21조 제1항, 제21조의2, 제22조 제1항,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39조 제1항 및 제4항 변경안은 개정 상법(2025.07.22 공포)에 따라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하는 건.</p> <p>이는 사외이사를 단순한 외부 인사가 아닌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 재정의함으로써 그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본 정관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p> <p>정관 부칙 변경안은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도록 단서를 두어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정관 효력 개시일을 둘러싼 해석상 다름을 예방하고, 변경된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혼신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관 부칙 변경안에 대해 찬성.</p>

유가증권	현대글로비스	2026-03-26	정관변경	2-6.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의 건	기타	1,236	0.00	1,236	-	-	-	<p>정관 제39조 제2항 변경안은 개정 상법에 따라 분리선임 방식으로 선임해야 할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건. 이는 감사위원회의 핵심 구성원(독립이사)을 선임하는 단계에서부터,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영향력이 감사위원 구성에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을 완화하고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특히, 분리선임 대상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사회 내 통제 감독 기능을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예상됨. 따라서 본 변경안은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되므로, 해당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p> <p>정관 제39조 제3항 변경안은 개정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의결권 제한(합산 3% 료) 강화를 정관에 반영함으로써,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건. 개정 상법은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특히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등 보유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감사기구가 감사 대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로 해당 정관 변경안은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완화하고 감사 독립성 및 시장 신뢰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정관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p> <p>정관 부칙 변경안은 가결 시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도록 단서를 두어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건. 이는 정관 효력 개시일을 둘러싼 해석상 다름을 예방하고, 변경된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혼선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정관 부칙 변경안에 대해 찬성.</p>
유가증권	현대글로비스	2026-03-26	정관변경	2-7.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변경의 건	기타	1,236	0.00	1,236	-	-	-	<p>정관 제17조 변경안은 개정 상법 제368조 제2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제출하는 증명 문서의 범위에 기존의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정관상 근거를 마련하는 건.</p> <p>이는 의결권 행사 과정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정관 변경안에 찬성.</p>
유가증권	현대글로비스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사내이사 이규복 선임의 건	기타	1,236	0.00	1,236	-	-	-	<p>후보자(이규복)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정제) 등 지칭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과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p>

유가증권	현대글로벌비스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 사내이사 유병각 선임의 건	기타	1,236	0.00	1,236	-	-	-	후보자(유병각)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칭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현대글로벌비스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3. 사외이사 채은미 선임의 건	기타	1,236	0.00	1,236	-	-	-	후보자(채은미)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현대글로벌비스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한송희 선임의 건	기타	1,236	0.00	1,236	-	-	-	후보자(한송희)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칭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현대글로비스	2026-03-26	임원 보수	5-1. 이사 퇴직금 지급규정 승인의 건	기타	1,236	0.00	1,236	-	-	-	<p>분석기업이 제시한 이사 퇴직금 지급규정은 이사의 퇴직금 산출 방법과 직위별 재임 기간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출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규정임.</p> <p>분석기업이 제시한 임원 구분에 따른 재임기간의 계산은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찬성.</p>
유가증권	현대글로비스	2026-03-26	임원 보수	5-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1,236	0.00	1,236	-	-	-	<p>이사회회의 규모를 10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보수한도를 당기 50억 원에서 자기 40억 원으로 조정함.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전기 4.3억 원에서 당기 5.7억 원으로 증가하여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 대비 보수한도는 약 1.6배 수준임. 당기 실지급액 대비 자기 보수한도는 3.3배 이하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됨.</p> <p>또한 경영성과는 전기 1조 7,529억 원에서 당기 2조 730억 원으로 증가한 상황 속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이사 보수는 경영성과 변화와 일정 부분 연계되어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현재 책정된 보수한도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p>
유가증권	현대차	2026-03-26	결산 및 배당	1. 제5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3,440	0.00	3,440	-	-	-	<p>영업이익 및 영업활동현금 흐름의 추이, 최근 설비투자 규모, 현재 부채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배당 수준이 과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 또한 현대차는 2024.8월 중 기업가치 재고계획을 발표하며 주당 최소배당금 10,000원 이상, 연 TSR 35% 이상 지속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또한 2024년 3월 발행주식 대비 약 1.0%의 자기주식을 소각한데 이어 2025년4월에도 발행주식 대비 2.2%의 자기주식을 소각한 바 있음.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찬성.</p>

유가증권	현대차	2026-03-26	정관변경	2-1. 사업목적 추가	기타	3,440	0.00	3,440	-	-	-	사업 목적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추가 예정. 정관에 추가되는 사업목적은 현대차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고, 현대차의 사업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현대차	2026-03-26	정관변경	2-2. 집중투표제 배제 문구 삭제	기타	3,440	0.00	3,440	-	-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상실될 조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회사의 내부 규범과 상위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찬성
유가증권	현대차	2026-03-26	정관변경	2-3.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기타	3,440	0.00	3,440	-	-	-	개정 상법의 강행 적 방향성과 정합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주권 보호 및 이사회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현대차	2026-03-26	정관변경	2-4.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확대	기타	3,440	0.00	3,440	-	-	-	분리선임 대상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이사회 내 통제감독 기능을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예상됨에 찬성
유가증권	현대차	2026-03-26	정관변경	2-5.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신설	기타	3,440	0.00	3,440	-	-	-	2025.07.22. 공포된 개정 상법에 따라 2027.01.01.부터 도입 시행되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비하여,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의 법적 근거를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현대차	2026-03-26	정관변경	2-6. 조문 정비	기타	3,440	0.00	-	3,440	-	-	개정 안은 선임 주체와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사회에서 정한다'는 포괄적 문언만을 남겨, 이사회 의장 선출의 시기·방식 임기 등 핵심 절차적 요건을 이사회의 재량에 일임하는 구조로 전환. 이는 주주 관점에서의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이사회 의장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존재, 특히 현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시, 선출 절차에 관한 정관상 명시적 기준이 약화될 경우 경영진 견제 기능을 수행해야 할 이사회 의장의 독립성에 관한 우려가 한 층 커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

유가증권	현대자	2026-03-26	정관변경	2-7.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기타	3,440	0.00	3,440	-	-	-	사외이사를 단순한 외부 인사가 아닌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 제정의함으로써 그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현대자	2026-03-26	정관변경	2-8. 부칙 (2006.03.26)	기타	3,440	0.00	3,440	-	-	-	정관 효력 개시일을 둘러싼 해석상 다름을 예방하고, 변경된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혼선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 찬성
유가증권	현대자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사외이사 최윤희 선임의 건	기타	3,440	0.00	3,440	-	-	-	후보자(최윤희)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현대자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1. 사내이사 무노스 바르셀로 호세 안토니오 선임의 건	기타	3,440	0.00	3,440	-	-	-	후보자(무노스 바르셀로 호세 안토니오)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잔성
유가증권	현대자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2. 사내이사 이승조 선임의 건	기타	3,440	0.00	3,440	-	-	-	후보자(이승조)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잔성
유가증권	현대자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3. 사내이사 최영일 선임의 건	기타	3,440	0.00	3,440	-	-	-	후보자(최영일)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잔성

유가증권	현대자	2026-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장승화 선임의 건	기타	3,440	0.00	3,440	-	-	-	후보자(장승화)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칭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현대자	2026-03-26	임원 보수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3,440	0.00	3,440	-	-	-	<p>현대자는 이사회 규모를 총 12명(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7명)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이사 보수한도를 전기 237억 원에서 차기 284억 원으로 조정.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전기 32.0억 원에서 당기 45.3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당기 실지급액 대비 차기 보수한도 비율은 1.2배 수준 기록.</p> <p>한편 현대자의 영업이익은 전기 14조 2,396억 원에서 당기 11조 4,679억 원으로 감소하여 경영성과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경영성과 악화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이 증가한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당기 실지급액 대비 차기 보수한도 비율이 1.2배로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책정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또한 현대자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를 통해 성과보수 산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주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안건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p>
유가증권	현대자	2026-03-26	자본 구조	6.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기타	3,440	0.00	-	3,440	-	-	<p>현대자는 26년 3월 4일 기준 보통주 자기주식 2,006,508주/ 우선주 501,923주/ 2우선주 706,883주 / 3우선주 5,526주를 보유 중. 이 중 보통주 최대 1,100,884주를 2027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까지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할 계획. 다만, 나머지 잔여 주식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자의적 처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p>

유가증권	한국금융지주	2026-03-27	정관변경	1-1.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변경의 건	기타	3,127	0.00	3,127	-	-	<p>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2026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제542조의7 제3항)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됨. 기존 정관 제32조 제3항(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선택적으로 삭제함으로써 강행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향후 결의 효력 다툼 등 운영 리스크를 방지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함.</p>
유가증권	한국금융지주	2026-03-27	정관변경	1-2. 상법 및 기타법령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	기타	3,127	0.00	3,127	-	-	<p>상법 및 기타법령 관련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일괄 상정된 정관 변경 사항이 모두 법령 정합성 확보 및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부합하며,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정관 변경 주요 내용】</p> <p>① 원장병행형 전자주총회 도입 근거 마련 (제22조 신설): 2027년 1월 1일 시행 ② 의결권 대리행사 증명방법에 전자문서 추가 (제27조): 2027년 1월 1일 시행 ③ 사외이사 명칭 → 독립이사로 변경 (제31-32-33-34-35-38-40조 등): 2026년 7월 23일 시행 ④ 이사 총실의무 대상율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제37조의3 신설): 2026년 3월 27일 시행 ⑤ 내부통제기준 리스크관리기준 제 개정 폐지를 해당 위원회에 위임 가능 (제41조): 2026년 3월 27일 시행 ⑥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 1명 → 2명 이상으로 확대 (제46조 제4항): 2026년 9월 10일 시행 ⑦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합산 3% 의결권 제한 강화 (제46조 제8항): 2026년 7월 23일 시행</p>
유가증권	한국금융지주	2026-03-27	이사의 선임 및 해임	2-1.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김남구	기타	3,127	0.00	3,127	-	-	<p>사내이사 김남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현직: 한국금융지주 대표이사(2004.05~현재), 한국투자증권 회장(2020.03~현재) 임기: 2년 (재선임) / 겸임: 2개 이사회 출석률: 2025년 95.2%, 2024년 100.0% (직전임기 평균 97.8%)</p>

유가증권	한국금융지주	2026-03-27	이사의 선임 및 해임	2-2.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오태균	기타	3,127	0.00	3,127	-	-	<p>사내이사 오태균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현직: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2022.01~현재), 한국투자증권 기타비상무이사(2022.03~현재) 임기: 2년 (재선임) / 겸임: 2개 이사회 출석률: 2025년 100.0%, 2024년 100.0% (직전임기 평균 100.0%)</p>
유가증권	한국금융지주	2026-03-27	이사의 선임 및 해임	2-3.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김희재	기타	3,127	0.00	3,127	-	-	<p>사외이사 김희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 전문성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현직: 추계예술대학교 콘텐츠스트리융합예술대학 교수-전공주임, 올댓스토리 대표이사 임기: 1년 (재선임) / 겸임: 2개 이사회 출석률: 2025년 100.0% (직전임기 평균 100.0%)</p>
유가증권	한국금융지주	2026-03-27	이사의 선임 및 해임	2-4. 사외이사 선임의 건- 지영조	기타	3,127	0.00	3,127	-	-	<p>사외이사 지영조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 전문성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현직: 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사외이사(2023.03~현재) 전직: 현대자동차 이노베이션담당 사장, 삼성전자 부서장 등 IT-산업 전문가 임기: 1년 (재선임) / 겸임: 2개 이사회 출석률: 2025년 100.0% (직전임기 평균 100.0%)</p>

유가증권	한국금융지주	2026-03-27	이사의 선임 및 해임	2-5.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김유리	기타	3,127	0.00	3,127	-	-	<p>사외이사 김유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전문성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현직: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부 조교수(2013.09~현재) 전직: 대통령 언론홍보차관(자치분권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임기: 2년 (신규선임) / 겸임: 1개</p>
유가증권	한국금융지주	2026-03-27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최수미	기타	3,127	0.00	3,127	-	-	<p>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최수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현직: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회계 전공), 한국철도공사 회계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사외이사 한국금융지주 감사위원 2022.03~현재 (재선임) 임기: 1년 / 겸임: 2개 이사회 출석률: 2025년 100.0% (직전임기 평균 100.0%)</p>
유가증권	한국금융지주	2026-03-27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이성규	기타	3,127	0.00	3,127	-	-	<p>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이성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현직: 베이스톤파트너스 경영자문 부문대표, 기간산업안정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사외이사 전직: 연합자산관리(UAMCO), 대표이사(2009~2019), PE금융업계 전문가 한국금융지주 감사위원 2025.03~현재 (재선임) 임기: 1년 / 겸임: 2개 이사회 출석률: 2025년 96.3% (직전임기 평균 96.3%)</p>

유가증권	한국금융지주	2026-03-27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지명조	기타	3,127	0.00	3,127	-	-	<p>감사위원회 위원 지명조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과다 감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원(징계), 독립성 전문성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 개정 상법(제46조 제4항)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 확대(1명→2명)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p> <p>한국금융지주 감사위원 2024.03-현재 (재선임) 임기: 1년 / 결임: 2개 이사회 출석률: 2025년 100.0% (직전임기 평균 100.0%)</p>
유가증권	한국금융지주	2026-03-27	임원 보수	5.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기타	3,127	0.00	3,127	-	-	<p>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보수한도가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었으며,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함.</p> <p>【보수한도 현황】 보수한도: FY25 50억원 → FY26 100억원 (이사회 규모 7명→8명 확대 반영) 비사외이사 1인당 보수한도: FY26 48.5억원 비사외이사 1인당 실지금액: FY25 16.2억원 (FY24 10.2억원) 자기 한도 / 당기 실지금액 배수: 3.0배 (기준 3.3배 이하 충족) 당기 실지금액 증가율: +58.9% (전기 대비)</p> <p>【경영성과】 영업이익: FY25 2조 3,453억원 (FY24 1조 1,997억원, +95.5% YoY) TSR: FY25 138.2% (FY24 16.3%) 이사회 내 보수 관련 위원회 설치: 설치</p>
유가증권	현대로템	2026-03-27	결산 및 배당	1. 제27기 (2025년 1월1일~12월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1,840	0.00	-	1,840	-	<p>2025년 배당성향은 8.5%로 업종 평균을 대폭 하회하며,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향은 각각 7.3%, 6.1%에 그쳐 지속적으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또한, 최근 안정적인 순이익을 시현해 왔으며, 설비투자 소요에 비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현저히 부족하여 주주환원이 불가피하게 제약되는 상황에도 해당하지 않음.</p> <p>영업이익 및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주이, 최근 설비투자 규모, 현재 부채비율 등 재무적 제반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배당수준은 기업의 실질적인 주주환원 여력 대비 과소한 것으로 판단됨. 이는 잉여현금흐름의 주주 귀속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자본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됨. 따라서 본 안건이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의 훼손 이력 등 직접 상결격 사유가 되는 사항을 발견함에 따라 반대.</p>

유가증권	현대로템	2026-03-27	정관변경	2-1.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개정의 건	기타	1,840	0.00	1,840	-	-	-	<p>2026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제542조의7 제3항)에 따라,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던 기존 정관 조항(제28조 제3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건.</p> <p>기존배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개정법 시행 이후 제도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주주와 회사 모두에게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개정법이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설계된 만큼,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 선제적으로 정관을 정비하는 것은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협의 노력 등을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매우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p> <p>정관 부칙 변경안은 가결 시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정관 효력 개시일을 둘러싼 해석상 다툼을 예방하고, 변경된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혼선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 찬성.</p>
유가증권	현대로템	2026-03-27	정관변경	2-2.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건	기타	1,840	0.00	1,840	-	-	-	<p>정관 제40조제2항 변경안은 개정 상법에 따라 분리선임 방식으로 선임해야 할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건.</p> <p>이는 감사위원회의 핵심 구성원(독립이사)을 선임하는 단계에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상법의 취지를 구현하여,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영향력이 감사위원 구성에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을 완화하고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높임 것으로 기대되며 분리선임 대상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이사회 내 통제·감독 기능을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예상되어 찬성.</p> <p>정관 제40조제4항 변경안은 개정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 선출임 시 3% 의결권 제한(합산 3% 룰) 강화를 정관에 반영함으로써,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건.</p> <p>개정 상법은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특히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등 보유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감사기구가 '감사 대상(경영진·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로, 감사위원 선·해임에서 지배주주 측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제한하여 소수주주의 감시권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취지임. 감사위원회는 회계 내부통제·위법행위 점검 등 회사의 신뢰 기반을 좌우하는 핵심 기구이므로, 선·해임 과정에서 특정 주주(특히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관철될 경우 감사의 실효성이 약화될 위험이 큼이다. 따라서 본 정관 변경안은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완화하고 감사 독립성 및 시장 신뢰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정관 반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p> <p>정관 부칙 변경안은 가결 시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의 건.</p> <p>이는 정관 효력 개시일을 둘러싼 해석상 다툼을 예방하고, 변경된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혼선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 찬성.</p>
유가증권	현대로템	2026-03-27	정관변경	2-3.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건	기타	1,840	0.00	1,840	-	-	-	<p>정관 제20조 변경안은 개정 상법에 따라 2027.01.01.부터 도입·시행되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비하여,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 법적 근거를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건.</p> <p>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는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주 권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므로 해당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p> <p>정관 부칙 변경안은 가결 시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의 건.</p> <p>이는 정관 효력 개시일을 둘러싼 해석상 다툼을 예방하고, 변경된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혼선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 찬성.</p>

유가증권	현대로템	2026-03-27	정관변경	2-4.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	기타	1,840	0.00	1,840	-	-	-	<p>정관 제27조, 제28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제40조 변경안은 개정 상법(2025.07.22. 공포)에 따라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 이사로 변경하는 건. 이는 사외이사를 단순한 외부 인사가 아닌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 재정의함으로써 그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에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 연구소는 본 정관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 정관 부칙 변경안은 가결 시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의 건. 이는 정관 효력 개시일을 둘러싼 해석상 다툼을 예방하고, 변경된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혼선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 찬성</p>
유가증권	현대로템	2026-03-27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사내이사 이용배 선임의 건	기타	1,840	0.00	1,840	-	-	-	<p>후보자(이용배)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p>
유가증권	현대로템	2026-03-27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 사내이사 조형준 선임의 건	기타	1,840	0.00	1,840	-	-	-	<p>후보자(조형준)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p>

유가증권	현대로템	2026-03-27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3. 사내이사 정재호 선임의 건	기타	1,840	0.00	1,840	-	-	후보자(정재호)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칭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현대로템	2026-03-27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곽세봉)	기타	1,840	0.00	1,840	-	-	후보자(곽세봉)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칭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현대로템	2026-03-27	임원 보수	5.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1,840	0.00	1,840	-	-	이사회 규모의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당기 50억 원에서 차기 50억 원으로 유지시킨 건,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은 전기 12.7억 원에서 당기 14.2억 원으로 증가,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 대비 보수한도는 1.1배를 보였으며, 당기 실지금액 대비 자기 보수한도는 3.3배 이하로 책정되었음. 영업이익은 전기 4,566억 원에서 당기 1조56억 원으로 상승하였음. 경영성과 개선과 함께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이 증가한 것을 통해 이사 보수 실지금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고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HD한국조선해양	2026-03-31	결산 및 배당	1. 제52기(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972	0.00	972	-	-	-	2025년 배당성향은 40.1%로 업종 평균을 상회하며,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향은 각각 34.5%, 5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현행 배당 규모가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재무적 목적을 전제로, 영업이익 및 영업활동중현금흐름의 주위, 최근 실적투자 규모, 현재 부채비율 등 제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배당 수준은 HD한국조선해양의 실질적인 재무 여건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HD한국조선해양은 2025년 중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하여 주주환원을 30% 이상 추진 및 자기주식 매입, 소각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주환원 정책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바 있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HD한국조선해양의 배당 수준과 관련하여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HD한국조선해양	2026-03-31	정관변경	2-1. 집중투표제가 배제된 정관 변경의 건	기타	972	0.00	972	-	-	-	정관 제27조 변경안은 2026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제542조의7 제3항)에 따라,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던 기존 정관을 완전히 삭제하는 건, 자산총액 2조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상실될 조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회사의 내부 규범과 상위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임. 기존 배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개정법 시행 이후 제도 적용 여부가 둘러싸고 주주와 회사 모두에게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개정법이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설계된 만큼,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 선제적으로 정관을 정비하는 것은 주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결의 효력 다툼 등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매우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HD한국조선해양	2026-03-31	정관변경	2-2. 그 밖의 정관 변경의 건	기타	972	0.00	-	972	-	-	정관 제28조 변경안은 이사 임기를 종전 1년 이상 3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 「상법」 제383조 제2항은 이사 임기의 최장기를 3년으로 제한할 뿐이므로, 회사는 정관으로 3년 범위 내에서 임기를 정할 수 있음. 다만 임기를 3년 이하와 같이 범위규정할 경우, 대법원 판례(2001다23928)에 따라 임기 불확정 이사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사실상 자의적 해임이 가능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 이는 특히 사외이사에겐 신분 불안정을 초래하여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 존재. 아울러 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운용할 여지를 남겨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설정 임기를 범위로 열거두더라도, 이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는 점에서 각 이사의 지위 안정성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선임 결의 단계에서 임기를 특정 명시로 확정하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 한편, 주식 소유가 광범위하게 분산된 상장기업의 경우 위와 같은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분산된 지분 구조에서는 자의적 이사 해임을 위한 특별결의가 용이하게 성립되기 어려우며,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에서 각 후보자의 임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된다는 점에서 실무상 임기 불확정의 위험이 상당 부분 통제될 여지도 존재. 명확한 절차적 통제 없이 이사 임기를 3년 이하로 규정하는 본 정관 변경안이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이사회 감시 기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

유가증권	HD한국조선해양	2026-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형관)	기타	972	0.00	972	-	-	-	후보자(김형관)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칭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HD한국조선해양	2026-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종기)	기타	972	0.00	972	-	-	-	후보자(김종기)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칭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HD한국조선해양	2026-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김세연)	기타	972	0.00	972	-	-	-	후보자(김세연)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칭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HD한국조선해양	2026-03-31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 김홍기)	기타	972	0.00	972	-	-	-	주보자(김홍기)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결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정 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HD한국조선해양	2026-03-31	임원 보수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972	0.00	972	-	-	-	HD한국조선해양은 이사회의 규모를 5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당기 40억 원에서 차기 45억 원으로 증가시킬.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은 전기 11.2억 원에서 당기 7.6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 대비 보수한도는 2.9배를 기록. 또한, 경영성과(전기대비 영업이익)는 전기 1조 4,341억 원에서 당기 3조 9,045억 원으로 상승함. HD한국조선해양의 당기 실지금액 대비 차기 보수한도는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고 판단됨. 또한, 분식기업의 경영성과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HD현대	2026-03-31	결산 및 배당	1. 제9기(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1,945	0.00	1,945	-	-	-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 재무제표 승인 및 배당 수준에 관해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 【배당 현황】 - 2025년 연간 총 배당금: 2,827억원 (주당 4,000원) - 중간/분기배당: 1,908억원 (주당 2,700원) - 결산배당: 919억원 (주당 1,300원) - 2025년 배당성장: 29.4% / 업종 평균 41.9% - 5년 평균 배당성장: 50.3% - 영업이익: 2025년 6조 996억원 (전기 2조 9,832억원, +104.5%) - 영업이익률: 2025년 8.6% (5년 평균 5.4%) - 부채비율: 2025년 477.9% (지배지분자본 기준) - 설비투자/영업현금흐름: 24.9% (2025년) 2025년 배당성장 29.4%로 업종 평균 대비 하회하나,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장 각각 46.0%, 50.3%를 기록하는 점, 기업가치 제고 계획(2025~2027년 배당성장 70% 이상 추진) 공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행 배당 수준이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찬성함.

유가증권	HD현대	2026-03-31	정관변경	2. 집중투표제가 배제된 정관 변경의 건	기타	1,945	0.00	1,945	-	-	<p>집중투표제가 배제된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2026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제542조의7 제3항)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됨. 정관 제34조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선제적으로 삭제함으로써 경영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향후 결의 효력 다름 등 운영 리스크를 방지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함.</p> <p>【주요 변경 내용】 제34조 제3항 삭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부칙 제4조 신설: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 이사 선임 주총 시부터 적용</p>
유가증권	HD현대	2026-03-31	정관변경	3. 그 외의 정관 변경의 건	기타	1,945	0.00	-	1,945	-	<p>그 외의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하여 반대함.</p> <p>정관 제35조 변경안(이사 임기를 '1년 이상 3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변경)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구조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함. 임기를 범위로만 규정할 경우 대법원 판례(2001다23928)에 따라 '임기 불확정 이사'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사실상 자의적 해임이 가능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사외이사의 신분 불안정 및 경영진 감시·견제 기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p> <p>나머지 정관 사항(전자주주총회 도입, 대리권 증명방법 확대, 독립이사 명칭 변경,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배당기준일 분리 등)은 법령 정합성 확보 및 지배구조 강화 방향에 부합하나, 일괄 상정 건으로 제35조 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에 따라 전체 반대함.</p> <p>【찬성 취지의 개별 변경 내용】 ① 제23조: 현상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도입 근거 마련 (2027.01.01 시행) ② 제30조: 의결권 대리행사 증명방법에 전자문서 추가 (2027.01.01 시행) ③ 제33-34-47-48-49-55조: 사외이사 명칭 → 독립이사 변경 (2026.07.23 시행) ④ 제49조 제4항: 감사위원 분리선임 1명 → 2명 이상으로 확대 (2026.09.10 시행) ⑤ 제49조 제8항: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합산 3% 의결권 제한 강화 (2026.07.23 시행) ⑥ 제61조: 분기배당 기준일 분리 설정 가능 (2026.03.31 시행)</p>
유가증권	HD현대	2026-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조영철)	기타	1,945	0.00	1,945	-	-	<p>사내이사 조영철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적(징계)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 원직: 에이치디현대(주) 부회장(2025-현재) - 전직: HD현대사이드솔루션 사장, HD현대인프라코어 사장, HD한국조선해양 경영지원실장, HD현대중공업 CFO 등 그룹 핵심 경영관리 이력 - 임기: 3년 (신규선임) / 겸임: 2개</p>

유가증권	HD현대	2026-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정경준)	기타	1,945	0.00	1,945	-	-	-	<p>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정경준)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과다 검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p>전직: 상임회계법인 대표(2008~2014), 공동부회장(2014~2015), 고문(2015~2020). 회계 감사 분야 전문성 보유 HD현대 감사위원 2023.03~현재 (재선임) 임기: 3년 / 결임: 1개 이사회 출석률: 2025년 100.0%, 2024년 100.0%, 2023년 100.0% (직전임기 평균 100.0%)</p>
유가증권	HD현대	2026-03-31	임원 보수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1,945	0.00	1,945	-	-	-	<p>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보수한도가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었으며,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함.</p> <p>【보수한도 현황】 보수한도: FY25 40억원 → FY26 55억원 비사외이사 1인당 보수한도: FY26 26.8억원 비사외이사 1인당 실지금액: FY25 15.8억원 (FY24 9.8억원) 자기 한도 / 당기 실지금액 배수: 1.7배 (기준 3.3배 이하 충족) 당기 실지금액 증가율: +61.3% (전기 대비)</p> <p>【경영성과】 영업이익: FY25 6조 996억원 (FY24 2조 9,832억원, +104.5% YoY) TSR: FY25 147.0% (FY24 29.8%) 이사회 내 보수 관련 위원회 설치: 설치</p>
유가증권	HD현대중공업	2026-03-31	결산 및 배당	1. 제7기(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952	0.00	952	-	-	-	<p>2025년 배당성향은 40.1%로 업종 평균을 상회하며,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향은 각각 36.5%, 84.0%를 기록 중. 이를 감안할 때, 현행 배당 규모가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이러한 재무적 맥락을 전제로, 영업이익 및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추이, 최근 설비투자 규모, 현재 부채비율 등 제반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배당 수준은 HD현대중공업의 실질적인 재무 여건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HD현대중공업의 배당 수준과 관련하여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찬성</p>

유가증권	HD현대중공업	2026-03-31	정관변경	2-1. 집중투표제가 배제된 정관의 변경	기타	952	0.00	952	-	-	-	<p>정관 제27조 변경안은 2026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제542조의7 제3항)에 따라,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던 기존 정관(제27조 제3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상실될 조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회사의 내부 규범과 상위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임.</p> <p>기존 배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개정법 시행 이후 제도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주주와 회사 모두에게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개정법이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설계된 만큼,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 선제적으로 정관을 정비하는 것은 주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결의 효력 다툼 등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매우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p>
유가증권	HD현대중공업	2026-03-31	정관변경	2-2. 그 밖의 정관 변경의 건	기타	952	0.00	-	952	-	-	<p>정관 제28조 변경안은 이사 임기를 종전 '1년 이상 3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 「상법」 제383조 제2항은 이사 임기의 최장기를 3년으로 제한할 뿐이므로, 회사는 정관으로 3년 범위 내에서 임기를 정할 수 있음. 다만 임기를 3년 이하로 같이 범위도 규정할 경우, 대법원 판례(2001다23928)에 따라 '임기 불확정 이사'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사실상 자의적 해임이 가능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 이는 특히 사외이사에겐 신분 불안정을 초래하여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경영권에 대한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 존재. 아울러 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운용할 여지를 남기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실형 임기를 범위 로 열어두더라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는 점에서 각 이사의 자위 안정성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선임 결의 단계에서 임기를 특정 연수로 확정하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p> <p>한편, 주식 소유가 광범위하게 분산된 상장기업의 경우 위와 같은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분산된 자본 구조에서는 자의적 이사 해임을 위한 특별결의가 용이하게 성립되기 어려우며,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에서 각 후보자의 임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된다는 점에서 실무상 임기 불확정의 위험이 상당 부분 통제될 여지도 존재. 명확한 절차적 통제 없이 이사 임기를 3년 이하로 규정하는 본 정관 변경안이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이사회 감시 기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p>
유가증권	HD현대중공업	2026-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상균)	기타	952	0.00	-	952	-	-	<p>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25년 11월 6일 업무상 과실지사 혐의로 기소된 후보자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이는 후보자가 HD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대표로 재직하던 2021년 2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 제재임.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경영진의 책임을 언정한 판결임.</p> <p>아울러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HD현대중공업 작업장에서 최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24년 2월에는 고용노동부가 HD현대중공업의 분록 관련 공정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바가 있음.</p> <p>이상을 종합할 때, 후보자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안전에 대해 반대함</p>

유가증권	HD현대중공업	2026-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 사내이사 선임의 건 (금액호)	기타	952	0.00	952	-	-	-	후보자(금액호)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칭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HD현대중공업	2026-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박광우)	기타	952	0.00	952	-	-	-	후보자(박광우)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칭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HD현대중공업	2026-03-31	임원 보수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952	0.00	952	-	-	-	이사회회의 규모를 5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당기 40억 원에서 차기 40억 원으로 유지,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은 전기 12.3억 원에서 당기 13.6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 대비 보수한도는 1.4배 수준 기록. 또한, 경영성과(전기대비 영업이익)는 전기 7052억 원에서 당기 20375억 원으로 상승함. HD현대중공업의 당기 실지금액 대비 자기 보수한도는 적절한 수준으로 적정됨. 또한, HD현대중공업의 경영성과 개선과 함께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이 증가함. 따라서 HD현대중공업의 이사 보수 실지금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고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유가증권	KT	2026-03-31	결산 및 배당	1. 제4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5,291	0.00	5,291	-	-	-	2025년 배당성향은 33.6%로 업종평균을 하회하나,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향은 각각 48.4%, 43.0%를 기록, 이를 감안할 때, 현행 배당 규모가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찬성 의견
유가증권	KT	2026-03-31	정관변경	2-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목적사업 조정의 건	기타	5,291	0.00	5,291	-	-	-	정관 제2조 변경안은 분석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36. 지적재산권의 관리, 라이선스 및 기타 처분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려고 함. 정관에 추가되는 사업목적은 분석기업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고, 분석기업의 사업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분석기업의 수익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변경이므로 찬성 의견
유가증권	KT	2026-03-31	정관변경	2-2. 공고방법 변경의 건	기타	5,291	0.00	5,291	-	-	-	해당 정관 변경에 따른 주주가지 훼손 우려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

유가증권	KT	2026-03-31	정관변경	2-3.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의 건	기타	5,291	0.00	5,291	-	-	-	정관 제30조 변경안은 2025. 07. 22. 공포된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의 문언과 취지를 정관에 반영하여, 이사의 직무 수행 기준을 "회사 및 주주"로 명확히 하고, 나아가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 이는 개정 상법의 강행적 병행성과 정합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주권 보호 및 이사회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찬성
유가증권	KT	2026-03-31	정관변경	2-4. 사외이사 명칭 변경의 건	기타	5,291	0.00	5,291	-	-	-	사외이사를 단순한 외부 인사가 아닌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 재정의함으로써 그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에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
유가증권	KT	2026-03-31	정관변경	2-5.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건	기타	5,291	0.00	5,291	-	-	-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는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주 권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므로 찬성 의견

유가증권	KT	2026-03-31	정관변경	2-6.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의 건	기타	5,291	0.00	5,291	-	-	-	<p>감사위원회의 핵심 구성원(독립이사)을 선임하는 단계에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상법의 취지를 구현하여,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영향력이 감사위원 구성에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을 완화하고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특히 분리선임 대상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이사회 내 통제감독 기능을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예상되므로 찬성</p>
유가증권	KT	2026-03-31	정관변경	2-7.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의무 반영의 건	기타	5,291	0.00	5,291	-	-	-	<p>본 변경안은 기존의 단순 보고 체계를 주주총회 승인 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자기주식 보유 처분에 대한 사전적 통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음. 특히 보유 목적, 수량, 기간 등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함으로써, 자기주식 활용에 대한 주주의 권여 수준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찬성</p>
유가증권	KT	2026-03-31	정관변경	2-8. 부칙 신설	기타	5,291	0.00	5,291	-	-	-	<p>정관 부칙 변경안은 가결 시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1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의2, 제42조,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제18조, 제21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여타 조항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시행되도록 단서를 두어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p>

유가증권	KT	2026-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김영환)	기타	5,291	0.00	5,291	-	-	-	후보자(김영환)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KT	2026-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권명숙)	기타	5,291	0.00	5,291	-	-	-	후보자(권명숙)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KT	2026-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2.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서진석)	기타	5,291	0.00	5,291	-	-	-	후보자(서진석)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KT	2026-03-31	임원 보수	5. 이사 보수현도 승인의 건	기타	5,291	0.00	5,291	-	-	-	<p>이사회회의 규모를 10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8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현도를 당기 58억 원에서 차기 58억 원으로 유지했음. 사내이사 1인당 실적금액은 전기 8.3억 원에서 당기 12.5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사내이사 1인당 실적금액 대비 보수현도는 2.2배, 경영성과(간기 대비 영업이익)는 전기 8,095억 원에서 당기 2조 4,691억 원으로 상승. 당기 실적금액 대비 차기 보수현도는 3.3배 이하로 책정. 또한, 경영성과 개선과 함께 사내이사 1인당 실적금액 증가. 따라서 분석기업의 이사 보수 실적금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고 보수현도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므로 찬성</p>
유가증권	KT	2026-03-31	자본 구조	6.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	기타	5,291	0.00	-	5,291	-	-	<p>2026년 3월 6일 공포·시행된 상법은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하도록 하고,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 중인 기존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내 소각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임직원 보상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작성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뒤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음. 상법 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주총회 승인 대상이 되는 보유·처분계획의 핵심은 예외적으로 보유가 필요한 물량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범위, 보유기간 및 처분 구조를 주주가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데 있음. 특히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기주식 보유는 법이 예정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예외보유가 소각의무의 예외로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보상제도의 설계, 지급 대상, 성과조건, 예상 활용 규모 및 처분 일정 등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 수반될 필요 해당 기업은 임직원 보상, 우ரி사주 제도 실시, 소각 등의 목적으로 '27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자기주식 4,980,517주를 처분할 예정. 다만 잔여 자기주식의 처분 계획을 명시한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자기주식의 자의적 처분 우려가 있다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반대 의견</p>
유가증권	KT	2026-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7. 대표이사 선임의 건 (주보자: 박윤영)	기타	5,291	0.00	5,291	-	-	-	<p>후보자(박윤영)의 대표자 선임에 있어 과다 검증,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p>

유가증권	KT	2026-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8.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박현진)	기타	5,291	0.00	5,291	-	-	-	후보자(박현진)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결원,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칭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
유가증권	KT	2026-03-31	기타	9. 경영계약서 승인의 건	기타	5,291	0.00	5,291	-	-	-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성과급은 이사회가 설정한 연도목표 평가결과에 연동하여 지급되며,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는 관련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 또한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사회가 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등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을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찬성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결산 및 배당	1. 제25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764	0.00	764	-	-	-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임. 2025년 배당성향은 -7.8%이나, 지배주주순손실 상황에서도 배당을 실행(주당 2,000원)하였으며, 5년 평균 배당성향 46.2%로 업종 평균(21.7%)을 상회함.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기 -5,632억원에서 당기 11,809억원으로 흑자전환하였으며,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어 찬성함.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정관변경	2-1. (이사회안)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기타	764	0.00	764	-	-	-	<p>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2026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제542조의7 제3항)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됨. 기존 정관 제20조 제4항(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선제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상법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향후 결의 효력 다툼 등 운영 리스크를 방지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함.</p>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정관변경	2-2. (이사회안)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의 건	기타	764	0.00	764	-	-	-	<p>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현행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비하여 정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제14조의4 신설), 의결권 대리행사 시 전자문서 제출을 허용하는 내용(제17조 개정)으로 주주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p>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정관변경	2-3. (이사회안)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의 건	기타	764	0.00	764	-	-	-	<p>독립이사로 명칭 변경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개정 상법(2025.7.22 공포)에 따라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제20조, 제22조, 제24조의1, 제29조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사회 독립성과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p>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정관변경	2-4. (이사회안)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의 건	기타	764	0.00	764	-	-	-	<p>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개정 상법(2026.9.10 시행)을 반영하여 분리선출 방식으로 선임해야 할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제29조 제3항 개정)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이사회 내 통제·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취지에 부합하여 찬성함.</p>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정관변경	2-5. (이사회안)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강화의 건	기타	764	0.00	764	-	-	-	<p>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강화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개정 상법(2026.7.23 시행)에 따라 감사위원 선·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주식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관에 반영하는 것으로(제29조 제4항 개정),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실질적 감독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p>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정관변경	2-6. (이사회안) 정관 정비의 건	기타	764	0.00	764	-	-	-	<p>정관 정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조문 신설로 기존 조문 번호 체계가 변경되는 것에 맞추어 관련 조항(제8조의1, 제10조의1~5, 제12조의1, 제14조의1~2, 제15조의1, 제29조의1~2, 제35조의1 등)의 번호를 순차 정비하는 것으로, 주주가지 침해 우려가 없어 찬성함.</p>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정관변경	2-7. (주주제안) 권고적 주주제안의 도입의 건	기타	764	0.00	-	764	-	<p>권고적 주주제안의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하여 반대함.</p> <p>지배구조·자본배분·임원보상·주주환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주 권여 실질화라는 제안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p> <p>다만, 권고적 주주제안은 현행 상법상 명문의 근거 없이 정관만으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법적 허용성에 관한 해석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권고적 결의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경영진이 사실상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이사회 의 경영 판단 재량이 실질적으로 제약될 수 있으며, 손해 발생 시 책임 귀속도 현행 법령 하에서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제도적 법적 기반과 운영상 통제장치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반대함.</p>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정관변경	2-8. (주주제안) 선임독립이사 선임 ※ 주주제안자는 밸리서캐피탈마스터펀드리미티드 외 1인임	기타	764	0.00	-	764	-	<p>선임독립이사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하여 반대함.</p> <p>독립이사 중 1인을 선임독립이사로 지정하여 독립이사 의견 수렴이사회 운영 협의·주주와 경영진 간 소통 지원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사회 감독·견제 기능 강화 및 주주 권의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제안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함.</p> <p>다만, LG화학은 2026년 2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독립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바 있으며, 별도의 독립이사회도 운영되고 있어 제안 주주가 제기한 이사회 독립성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사회 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권고하는 본 안건은 현행 상법 체계상 절차적 적법성과 법적 실용성 측면에서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반대함.</p>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기타	3. (주주제안) 주주 제안의 건 ※ 제 3호 의안은 제2-7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동 폐기됨. ※ 주주제안자는 밸리서캐피탈마스터펀드리미티드 외 1인임. 3-1.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NAV 할인율을 주요 재무지표로 공개하는 내용의 건	기타	764	0.00	-	764	-	<p>기업가치 제고계획에 NAV 할인율을 주요 재무지표로 공개하는 내용의 건에 대하여 반대함.</p> <p>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NAV 할인율을 주요 재무지표로 포함하고 매 분기마다 신청·공개하도록 권고하는 안건으로, 시장과의 정합성 및 경영진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음.</p> <p>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방식은 이사회 의 업무집행 영역에 속하는 사항임. 현행 상법상 주주제안권은 주주총회 목적사항이 될 수 있는 안건을 전제로 하며, 이사회 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권고하는 본 안건은 현행 상법 체계상 절차적 적법성과 법적 실용성이 모두 불명확함. 현행법상 권한 배분 구조와의 정합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반대함.</p>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자본 구조	3-2. 기존 경영진 보상 계획에 주식연계보상을 도입하고 NAV 할인을 및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추가적인 핵심성과지표(KPI)로 연계하는 안에 대한 보상위원회 검토의 건	기타	764	0.00	-	764	-	-	<p>경영진 보상에 주식연계보상 도입 및 NAV 할인을 ROE를 KPI로 연계하는 안에 대한 보상위원회 검토의 건에 대하여 반대함.</p> <p>경영진 보상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주식연계보상을 도입하고, NAV 할인을 및 자기자본이익률(ROE)을 KPI로 반영하는 주주 친화적 보상체계 수립을 보상위원회에 검토 요청하는 안으로, 제안 취지에는 일정 부분 수긍할 여지가 있음.</p> <p>그러나 임원 보상 계획의 구체적 설계는 이사회 고유의 업무집행 영역에 속하는 사항임.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권고하는 본 안건은 현행 상법 체계상 절차적 적법성과 법적 실효성이 모두 불명확하므로 반대함.</p>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자본 구조	3-3.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유통화 규모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추가 자금을 활용하여 자기 주식 매입 및 소각을 실행하는 내용의 주주환원 정책 보강의 건	기타	764	0.00	-	764	-	-	<p>LG에너지솔루션 지분 유통화 규모 확대 및 자기주식 매입소각 실행 권고의 건에 대하여 반대함.</p> <p>LG에너지솔루션 보유 지분을 기존 발표 수준인 70% 미만으로 낮추고, 확보한 추가 자금으로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을 진행하여 주주환원 정책을 보강하도록 권고하는 안으로,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이 주주가지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는 공감함.</p> <p>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의 유통화 규모 결정은 이사회의 업무집행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임.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권고하는 본 안건은 현행 상법 체계상 절차적 적법성과 법적 실효성이 모두 불명확하므로 반대함.</p>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사내이사 김동준 선임의 건	기타	764	0.00	764	-	-	-	<p>사내이사 김동준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후보자(김동준)는 LG화학 내 반도체소재-전소재-첨단소재 사업부문에서 장기간 실무 경력을 축적한 내부 전문가로서, 현재 CEO 겸 첨단소재사업본부장(사장)으로 재직 중임. 과다 검임 기입까지 훼손·법정 위반 정계 등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전경준) ※ 제 5호 의안은 제2-4호 의안 부결 시 자동 폐기됨	기타	764	0.00	764	-	-	<p>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전경준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함.</p> <p>후보자(전경준)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법률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전 임기(2023~2025년) 이사회 출석률 100%(27회/27회)를 유지함. 과다 겸임·기납까지 훼손·법형 위반 징계 등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찬성함.</p>
유가증권	LG화학	2026-03-31	임원 보수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764	0.00	764	-	-	<p>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70억원)에 대하여 찬성함.</p> <p>전체 보수한도를 당기와 동일한 70억원으로 유지하였음. 경영성과(영업이익)가 전기 -5,632억원에서 당기 11,809억원으로 흑자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오히려 11.0억원에서 9.4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실지급액 대비 보수한도는 2.4배(3.3배 이하 기준 충족)로 과다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되어 찬성함.</p>
유가증권	두산	2026-03-31	결산 및 배당	1. 제8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주당배당금보통주식 1주당 4,000원 (액면가의 80%) 종류주식(1우선주): 1주당 4,050원 (액면가의 81%) 종류주식(2우선주): 1주당 4,000원 (액면가의 80%)	기타	450	0.00	450	-	-	<p>동사의 25년 배당성향은 71.8%로 업종 평균을 상회하며,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성향은 각각 -20.2%, -15.9%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현행 배당 규모가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p> <p>이러한 재무적 맥락을 전제로, 영업이익 및 영업활동중현금흐름의 추이, 최근 설비투자 규모, 현재 부채비율 등 제반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배당 수준은 동사의 실질적인 재무 여건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p>한편, 동사는 2025년 중 약 2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소각을 실시하는 등 주주환원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사의 배당 수준과 관련하여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는 발견되지 않습니다.</p>

유가증권	두산	2026-03-31	정관변경	2-1.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건	기타	450	0.00	450	-	-	-	<p>정관 제20조 변경안은 25.07.22. 공포된 개정 상법에 따라 27.01.01.부터 도입 시행되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비하여,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 법적 근거를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제도입니다.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는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주 권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합니다.</p> <p>정관 제26조 변경안은 개정 상법(25.07.22. 공포 / 27.01.01. 시행) 제368조 제2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제출하는 증명 문서의 범위에 기존의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정관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의결권 행사 과정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변경안에 대해서도 찬성합니다.</p>
유가증권	두산	2026-03-31	정관변경	2-2.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기타	450	0.00	450	-	-	-	<p>정관 제30조 변경안은 26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제542조의7 제3항)에 따라,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던 기존 정관 조항(제30조 제3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건입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상실될 조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회사의 내부 규범과 상위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p> <p>개정법이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설계된 만큼,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 선제적으로 정관을 정비하는 것은 주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결의 효력 다툼 등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매우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합니다.</p>
유가증권	두산	2026-03-31	정관변경	2-3. 독립이사 제도 도입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의 건	기타	450	0.00	450	-	-	-	<p>정관 제29조, 제39조의2 및 제40조의2(제6항 신설 제외) 변경안은 개정 상법(25.07.22. 공포)에 따라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이는 사외이사를 단순한 외부 인사가 아닌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 제정의 함으로써 그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찬성합니다.</p> <p>정관 제40조의2 제6 변경안은 개정 상법(25.09.09. 공포 / 26.09.10. 시행)에 따라 분리선임 방식으로 선임해야 할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p> <p>이는 감사위원회의 핵심 구성원(독립이사)을 선임하는 단계에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상법의 취지를 구현하여,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영향력이 감사위원 구성에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을 완화하고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p> <p>해당 변경안은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합니다.</p>

유가증권	두산	2026-03-31	정관변경	2.4. 서면투표 폐지 및 전자투표 의무 시행의 건	기타	450	0.00	450	-	-	-	정관 제27조의2 변경안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건입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도모해 다양한 주주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경로를 축소하는 등 주주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정관 변경에 따른 주주가지 훼손 우려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합니다.
유가증권	두산	2026-03-31	정관변경	2.5. 분기배당 기준일 설정 변경의 건	기타	450	0.00	450	-	-	-	정관 제44조의3 변경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관계기관합동, 23. 1. 31자)」이 추진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에 대한 유권해석이 안내됨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고, 기준일을 정한 경우 기준일의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변경(중간 분기배당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배당절차 개선방안 도입 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일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배당받을 주주가 주주총회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주주가 아닌 자가 배당 관련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정관 변경안에서 주주가지 훼손 우려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합니다.
유가증권	두산	2026-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김혜성)	기타	450	0.00	450	-	-	-	후보자(김혜성)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지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유가증권	두산	2026-03-31	임원 보수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450	0.00	450	-	-	<p>동사는 이사회 의결로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당기 280억 원에서 차기 630억 원으로 증가시켰습니다.</p> <p>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은 전기 48.2억 원에서 당기 81.7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 대비 보수한도는 2.6배를 보였습니다.</p> <p>또한, 경영성과(전기대비 영업이익은 전기 1조 39억 원에서 당기 1조 627억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p> <p>당기 실지금액 대비 차기 보수한도는 3.3배 이하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이 경영성과의 상승폭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이사 보수 실지금액이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사는 임원별 보수 지급 기준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절차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임원 보수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임원 보수 정책에 근거하여 성과와 연동된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합니다.</p>
유가증권	두산	2026-03-31	자본 구조	5. 자기 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기타	450	0.00	-	450	-	<p>예당 안건은 26년 2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2항(26년 3월 6일 공포 시행)에서 규정한 자기주식 소각의 예외 사유인 임직원 보상 및 경영상 목적 등으로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계획에 대한 승인을 구하는 건입니다.</p> <p>26년 3월 6일 공포 시행된 상법은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하도록 하고,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 중인 기존 자기주식에 대해 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내 소각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p> <p>다만 임직원 보상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작성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p> <p>상법 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주총회 승인 대상이 되는 보유·처분계획의 핵심은 예외적으로 보유가 필요한 물량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범위, 보유기간 및 처분 구조를 주주가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p> <p>특히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기주식 보유는 법이 예정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예외보유가 소각원칙의 예외로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보상제도의 설계, 지급대상, 성과조건, 예상 활용 규모 및 처분 일정 등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 수반될 필요가 있습니다.</p> <p>동사는 현재 보통주 자기주식 3,201,028주(보통주 3,201,028주 / 1우선주 564,242 / 2우선주 47,86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보상, 소각 등의 목적으로 '27년 2월까지 보통주 1,956,424주를 소각 예정이며, 1우선주, 2우선주는 전량 소각 예정입니다.</p> <p>그리고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보통주 85,794주를 처분 예정입니다. 다만 잔여 보통주 자기주식 546,751주의 처분 계획을 공시한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자기주식의 자의적 처분 우려가 있다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합니다.</p>
유가증권	두산에너지빌리티	2026-03-31	결산 및 배당	1. 제63기(2025.1.1~2025.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개산서(안)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10,130	0.00	10,131	-	-	<p>수년간 무배당 기초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음. 2024년까지는 미처리결손금이 존재하여 배당 여력이 없었으며, 분석 시점 기준으로도 배당 재계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p> <p>또한, 최근 5년간 영업현금흐름의 81.7%를 설비투자 사용할 만큼 자본적 지출 부담이 높은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배당보다는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추후, 이익 창출이 지속될 경우 배당에 대한 검토가 요구될 것이나 현재로서는 배당에 대한 필요성이 높지 않아 찬성.</p>

유가증권	두산에너빌리티	2026-03-31	정관변경	2-1.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건	기타	10,130	0.00	10,131	-	-	<p>정관 제19조 변경안은 개정 상법에 따라 도입 시행되는 원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비하여,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 법적 근거를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건.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는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주 권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므로 해당 정관변경안에 대해 찬성.</p> <p>정관 제24조 변경안은 개정 상법 제368조 제2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제출하는 증명 문서의 범위에 기존의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정관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 이는 의결권 행사 과정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p> <p>정관 부칙 변경안은 가결 시 제19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단서를 두어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정관 효력 개시일을 둘러싼 해석상 차이를 예방하고, 변경된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혼선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 찬성.</p>
유가증권	두산에너빌리티	2026-03-31	정관변경	2-2. 사외이사 명칭변경 및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의 건	기타	10,130	0.00	10,131	-	-	<p>정관 제26조, 제36조, 제38조 변경안은 개정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건. 이는 사외이사를 단순한 외부 인사가 아닌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 재정의함으로써 그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p> <p>정관 제38조 제4항 변경안은 개정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 선출 시 3% 의결권 제한(합산 3% 룰) 강화 및 정관에 반영함으로써,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건. 개정 상법은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특히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등 보유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감사기구가 '감사 대상(경영진·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로, 감사위원 선출 단계에서 지배주주 측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제한하여 소수주주의 감사권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취지. 감사위원회는 회계 내부통제위법행위 정정 등 회사의 신뢰 기반을 좌우하는 핵심 기구임에 따라, 선출 및 과정에서 특정 주주(특히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관철될 경우 감사의 실효성이 의회될 위험이 큼. 따라서 본 정관 변경안은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완화하고 감사 독립성 및 시장 신뢰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정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찬성.</p> <p>정관 제38조 제8항 변경안은 개정 상법에 따라 분리선임 방식에 선임해야 할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건. 이는 감사위원회의 핵심 구성원(독립이사)을 선임하는 단계에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상법의 취지를 구현하여,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영향력이 감사위원 구성에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을 완화하고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분리선임 대상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이사회 내 통제·감독 기능을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예상되기에 찬성.</p> <p>정관 부칙 변경안은 가결 시 제26조, 제36조, 제38조(제8항은 제외)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여타 조항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도록 단서를 두어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정관 효력 개시일을 둘러싼 해석상 차이를 예방하고, 변경된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혼선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 찬성.</p>
유가증권	두산에너빌리티	2026-03-31	정관변경	2-3.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폐지 및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기타	10,130	0.00	10,131	-	-	<p>정관 제22조의 2 변경 및 제22조의 3 신설안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도모해 다양한 주주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경로를 축소하는 등 주주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음. 다만,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정관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여 주주의 참여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찬성.</p> <p>정관 부칙 변경안은 가결 시 제22조의 2, 제22조의 3은 2026년 3월 31일 이후 최초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시행되도록 단서를 두어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정관 효력 개시일을 둘러싼 해석상 차이를 예방하고, 변경된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혼선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 찬성.</p>

유가증권	두산에너빌리티	2026-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1. 사내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 박지원)	기타	10,130	0.00	-	10,130	-	-	<p>후보자는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두산에너빌리티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 중, 재직 기간 중인 2016년, 두산에너빌리티는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음.</p> <p>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021년부터 3년간 감리를 실시, 금융위원회는 2024년 정례회의에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중과실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판단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61억 4,1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재무제표 작성의 법적 책임을 지는 전 대표이사에게도 10억 1,070만 원의 과징금이 별도 부과되었음.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3년 제재 및 전 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감할 통보 조치가 함께 이루어졌음.</p> <p>후보자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가 발생한 2016년 당시 대표이사로서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분석 시점 기준 제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 이에 후보자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의 침해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p>
유가증권	두산에너빌리티	2026-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2.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후보: 민원기)	기타	10,130	0.00	10,131	-	-	-	<p>후보자(민원기)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정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견에 대해 찬성.</p>
유가증권	두산에너빌리티	2026-03-31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후보: 민원기)	기타	10,130	0.00	10,131	-	-	-	<p>후보자(민원기)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정 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견에 대해 찬성.</p>

유가증권	두산에너빌리티	2026-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은형)	기타	10,130	0.00	10,131	-	-	-	주보자(이은형)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결연,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정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유가증권	두산에너빌리티	2026-03-31	임원 보수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10,130	0.00	-	10,130	-	-	이사회회의 규모를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축소하고 보수한도를 당기 120억 원에서 차기 180억 원으로 증가시킨 건.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은 전기 32.4억 원에서 당기 34.9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 대비 보수한도는 1.7배 수준임 또한, 경영성과(전기대비 영업이익)는 전기 1조 176억 원에서 당기 7,627억 원으로 하락하였음. 당기 실지금액 대비 차기 보수한도는 적절한 수준이나, 경영성과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금액은 소폭 상승되었음. 기업의 이사 보수 실지금액이 경영성과에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
유가증권	두산에너빌리티	2026-03-31	자본 구조	7.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	기타	10,130	0.00	10,131	-	-	-	2026년 3월 6일 공포·시행된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법 시행 전 기준 보유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산점으로 1년 이내 소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임직원 보상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약정한 자기주식 보유 처분계획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 한하여 예외적인 보유 또는 처분이 허용되고 있음. 주주총회 승인 대상이 되는 보유 처분계획은 예외적 보유의 필요성과 범위가 주주에 의해 충분히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함. 특히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기주식 처분은 신주발행과 동일한 범형식은 아니나, 의결권이 없던 자기주식이 자유동회하면서 기존 주주의 의견과 비중 및 주당 가치에 희석 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처분 대상 물량의 산정 기준, 예상 범위 또는 상한, 보상 대상 및 지급 구조와의 연계성 등 주주가 스스로 감내하여야 할 희석 가능성의 범위와 상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회사는 2024년 및 2025년 임직원에 할 부여한 PSP(가상주식보상제)의 지급 시점이 각각 2027년 및 2028년에 도래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1,002,608주와 2026년 부여 예정인 PSP에 대응하기 위한 237,050주를 확보하기 위해, 기 보유 자사주 95,978주를 제외 한 잔여 수량을 주주총회 이후 장내매수로 취득하고 계획대로 임직원에 지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향후 3년간 필요한 자기주식 수량의 산정 기준, 연도별 지급 일정, 보유 물량의 상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주주가 희석 가능성의 범위와 상당성을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핵심은 임직원 보상이라는 예외 사유의 정당성 판단이 아니라, 기존 주주가 승인하여야 할 희석 가능성을 검증하기에 충분한 구체성을 갖춘 보유 처분계획이 제시되었는지의 여부임. 이러한 관점에서 회사가 제시한 계획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